365일 아동의 날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2023.12.1.**(금) 10:00 ~ 16:00

**페럼타워 페럼홀 (3F)**

주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2023
# 제2차
# 아동정책포럼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365일 아동의 날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2023.12.1.**(금) 10:00 ~ 16:00

**페럼타워 페럼홀 (3F)**

주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자료집**

**펴낸곳** 아동권리보장원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G타워 5,6,7층
**T** 02-6454-8500 **F** 02-6283-0697
www.ncrc.or.kr

# 오프닝 라운드 테이블

Opening Roundtable

## 1부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공유 및 확산

사회 : **김시아** 부연구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 | |
|---|---|---|
| 10:00~10:05 | **개회사** 민소영 센터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
| 10:05~10:10 | **아동권리보장원 홍보영상 시청** | |
| 10:10~10:40 | 아동 정책 영향 평가 전문 평가 |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전문평가 연구**<br>**-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br>전진아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
| 10:40~11:00 | | **[지정토론]**<br>**- (토론)** 박소연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br>서청희 센터장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
| 11:00~11:30 | |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전문평가 연구**<br>**- 아동 주거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br>임세희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 11:30~12:00 |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br>**- (좌장)** 민소영 센터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br>**- (토론)** 김도곤 과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br>황규홍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br>신욱수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 2부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성과공유 · 우수지자체 시상

사회 : **조은준** 아나운서

| | | |
|---|---|---|
| 13:00~13:30 | **등록** | |
| 13:30~13:50 | **개회사** 정익중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 |
| | **환영사** 보건복지부 | |
| | **축 사** 국회의원 | |
| 13:50~14:20 | **아동정책시행계획(2022년) 평가 및**<br>**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우수사례 시상식**<br>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
| 14:20~14:30 | **단체사진 촬영** | |
| 14:30~15:00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발표**<br>민소영 센터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
| |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경과 보고**<br>정정희 차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
| 15:00~15:15 | 아동 정책 시행 계획 | **아동정책시행계획(2022년) 평가 우수사례 I**<br>김미정 주무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 15:15~15:30 | | **아동정책시행계획(2022년) 평가 우수사례 II**<br>강원희 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육아동과) |
| 15:30~15:45 | 아동 정책 영향 평가 자체 평가 |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우수사례 I**<br>정성환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15:45~16:00 | |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우수사례 II**<br>장유리 주무관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 16:00~ | **폐회** | |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입니다.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동정책포럼 1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연구결과 발표와 아동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발표해 주시는 전진아 박사님, 임세희 교수님과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부는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2022년)와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아동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고되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이행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이며, 이는 아동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익중**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주최에 함께 힘써주신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우수한 아동정책으로 수상하시게 되는 모든 지자체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 참여한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의 만 10세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1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상황으로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더하여 아동들의 삶의 질 또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중심의 정책이 개발되고, 또한 우수한 아동정책 외 우수 사례와 개선과제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동 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의 정책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섯 손주가 있는 사람으로 지난 4월,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면 처벌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아동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시상을 통해 더 나은 아동중심의 정책이 마련되고 공유되기를 바라며, 저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과 행복,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회의원 서정숙**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1부

#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공유 및 확산

**사회** 김시아 부연구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전문평가 연구 I**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전진아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지정토론]**
**- (토론)** 박소연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청희 센터장 (경기도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전문평가 연구 II**
**- 아동 주거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임세희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좌장)** 민소영 센터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 (토론)** 김도곤 과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황규홍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신욱수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발제자 : 전진아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 목차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아동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신적 독립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임.
  - 아동기 정신건강은 성인기로 전환되는 발달학적 과업달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
- 코로나19 유행 이후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위험성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아동의 자살사망률은 성인에 비해 낮기는 하나, 청소년의 3대 사망원인 중 1순위를 기록중임. 또한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또한 높은 수준임.

**`13-`22년 5-19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추이**




출처: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23)

**스트레스 인지율**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21)

**우울감 경험률**




출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2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여자 청소년의 학년별 범불안장애경험률,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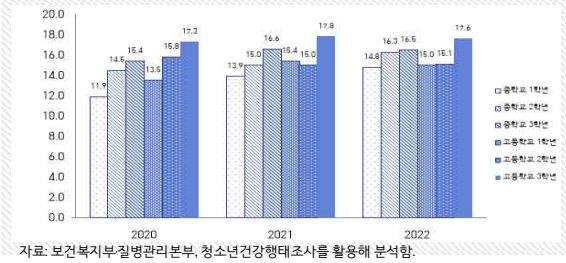


**남자 청소년의 학년별 범불안장애경험률,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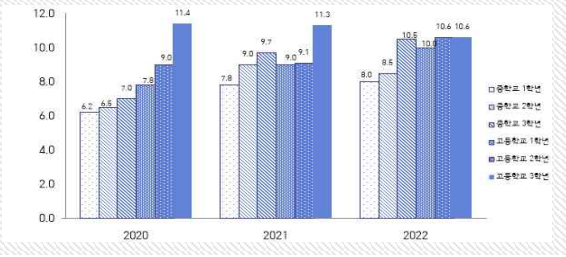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함.

**여자 청소년의 학년별 자살생각률,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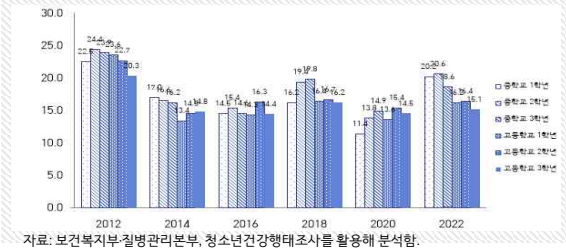


**남자 청소년의 학년별 자살생각률,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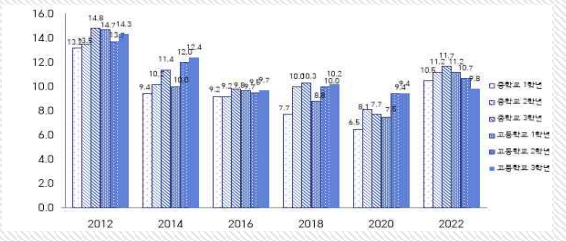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함.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사업 (중앙부처)**과 **지원서비스(지역사회 기반)**가 계획 및 이행 중에 있음.
  -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와 국가 단위 계획의 발표 및 이행
    - ✓ **(아동복지법)** 제35조2항의2 '자살 및 각종 중독 예방 등 정신적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
      제35조4항 신체정신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국가계획 수립 시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포함되어야 함
    -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공공 마음건강 돌봄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 ✓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 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아동정신건강 실태파악 및 인식개선 추진', '정신건강 위기·취약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 학교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 중앙부처의 아동 대상 정신건강 문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등
  - 대표적인 아동 대상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 ✓ **(교육부와 교육청)** 정서행동특성검사, Wee사업 등
    -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하지만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제한적이었으며, 정신건강 정책 논의에서 아동에 초점을 둔 논의 역시 제한적***이었음.
  - 아동이 경험하는 개별적인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어 그 문제를 예방 및 개입하기 위한 전략들을 활용해 왔음.
-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 관련 ***법, 정책 등이 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한 쟁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안하여 정책개발 및 개선에 반영*** 필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 대상 지원 법제도, 정책을 분석하여 **쟁점 사항 도출**

질적면담·해외사례고찰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개선안 제안**

***정신건강 위기 아동 정신건강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에 기여***

- (도입근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5호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라 2016년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 (법적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아동권리 관점에서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도출**

◆국내 아동 정신건강 현황 분석

◆정신건강 위기아동 개념 도출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정신건강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도출
-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분석틀 확정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분석 및 쟁점 도출**

◆국내 아동 정신건강증진 지원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정리 및 분석
- 아동 정신건강증진 지원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정리
-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에 따른 정책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정책 분석 및 쟁점 도출
- 아동 대상 초점집단면접
- 부모 대상 초점집단면접
- 현장 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 정책관계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정신건강 위기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개선안 제안**

◆해외 정신건강 위기아동 대상 지원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 도출

**정신건강 위기 아동 정신건강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에 기여**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아동권리 관점에서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도출

- 정신건강 위기아동의 개념과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의 범위 설정
  - 2차 자료를 활용한 국내 아동 정신건강 현황분석
  -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신건강 위기아동의 개념 도출
  -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법제도 및 정책의 범위 설정

-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확정
  - 연구진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일반원칙과 기본권리 관점에서 정책평가 관련 이슈, 초점 대상, 지원 방식을 포괄하는 전문영향평가 분석틀 도출
    - **그동안 제기된, 고려해야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관련 이슈:** 1) 이주배경 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2) 아동의 치료 의사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 3) 프라이버시 이슈, 4) 서비스의 충분성과 접근성, 5) 획일화된 집단 교육/강의 방식의 예방 교육, 6) 아동의 연령/학령별 관심사에 따른 서비스 제공, 7) 폭력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 8) 아동의 약물 오남용, 9)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부재 등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위기아동 정책 분석 및 쟁점 도출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에 따른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수행
  - 국내 아동 정신건강증진 지원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한 쟁점 사항 도출
    - 법 제도 및 정책에서 명시된 혹은 이행중인 정신건강 정책과 사업 현황 정리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분석틀을 활용한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문영향평가

  - 연구에서 도출한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에 기반한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초점 집단면접을 통한 전문영향평가
    - 정신건강 위기아동, 부모, 현장실무자, 정책관계자

## (3)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에 대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의 개선안 제안

- 호주, 영국, 캐나다 해외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제언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국내)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국가 단위 계획

- **(아동정책기본계획)** 중앙부처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아동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망 구축, 고위험군 학생 선별·상담, 사례관리 등 연계, 치료비 지원 등 실시(조기중재센터 운영)
  - 고등학생 대상 교과기반 마음건강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직원 대상 마음건강 연수 과정 개발 및 연수 실시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병원치료 연계, 치유캠프 운영, 부모 교육, 상담사 양성교육 등 추진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 보호필요학생(이혼·방임·가정 폭력 등)에게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상담, 교육, 치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지난 2021년 발표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정신건강증진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 **(영·유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 양육 스트레스 관리, 부부간 문제와 양육 상담 등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아동·청소년-교육부)** 단위학교별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상담 제공과 함께 위기상황시 즉각 개입
  - **(학교 밖 청소년-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시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층평가·상담 추진
  - **(인식개선-교육부)** 초·중·고 정신건강 및 마음 건강 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자연스러운 심리상담 문화정착을 유도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현황 파악 조사의 특성

[표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현황 파악 조사의 특성

| 조사통계명 | 조사 대상 아동 구분 | 조사 주기 | 주관부처 | 실태조사에서 파악하는 정신건강문제의 유형 | | | | | | | | |
|---|---|---|---|---|---|---|---|---|---|---|---|---|
| | | | | 스트레스 | 우울 | 불안 | 자살관련 행동 | 약물 | 도박 | 자살사망 | 이용 장애 | 정신질환 진단·치료 |
| 국민건강영양조사 | 만 12세~24세 청소년 | 1년 | 질병관리청 | O | O | | O | | | | | |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 1년 | 질병관리청 | O | O | O | O | | | | O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만9-17세 아동, 만 0-17세 아동의 주양육자 | 5년 | 보건복지부 | O | O | | O | | O | | O |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전국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1년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 O | | O | | | | | |
|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 및 보호자와 형제자매 | 1년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O | O | | | | | | | |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전국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2년 | 여성가족부 | | | | | | | | O | |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위기 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만12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3년 | 여성가족부 | | | | | | | | O | |
| 사망원인통계 | 0세 이상 한 해에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신고된 건 | 1년 | 통계청 | | O | | O | O | | | O | |
| 초중고자살학생통계 | 7~19세 초중고등학교 학생 | 1년 | 교육부 | | | | | | | O | | |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만 3세 이상(가구원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 | 1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O | | | O | | |
|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 | 전국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고3학생 제외) | 1년 | 한국콘텐츠 진흥원 | | | | | | | | O | |
| 발달장애인실태조사 | 0~17세 발달장애 아동 | 3년 | 보건복지부 | | | | | | | | O | |
| 장애인실태조사 | 0세~17세 장애 아동 | 3년 | 보건복지부 | | | | | | | | | O |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만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 3년 | 여성가족부 | O | O | | O | | | | | |

출처: 전진아 외(2022).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pp.66페이지의 표 3-1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함.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교육부와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지원하고 있음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모든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
  - 센터는 국가 재난 상황 및 학생자살 등 학교 위기상황에 대한 컨설팅 및 즉각적인 위기개입을 진행
-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성 높은 SNS을 활용하여 상담을 365일 24시간 제공
  - '다 들어줄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다들어 줄개'를 찾아서, '1661-5004' 문자를 통해 청소년 상담을 진행
- 교육청의 Wee사업
  - 교육청의 Wee사업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에는 Wee클래스, 지역 교육청에는 Wee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스쿨이 설치되어 운영중임.

[표 2] 연도별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 (단위: 개, 누적치)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Wee 클래스 | 4,904 | 5,633 | 6,161 | 6,382 | 6,624 | 6,966 | 7,230 | 7,631 | 8,059 | 8,619 |
| Wee 센터 | 155 | 188 | 198 | 204 | 209 | 213 | 216 | 231 | 238 | 238 |

자료: 전진아 외 (2022).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p88.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에의 어려움, 학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 방식), 심리지원(심리검사, 심리교육),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하여 정신건강 문제, 가출, 폭력 피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교육청의 Wee사업
  -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24/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상담채널은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 국민 모두가 이용 가능 함
- 꿈드림 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진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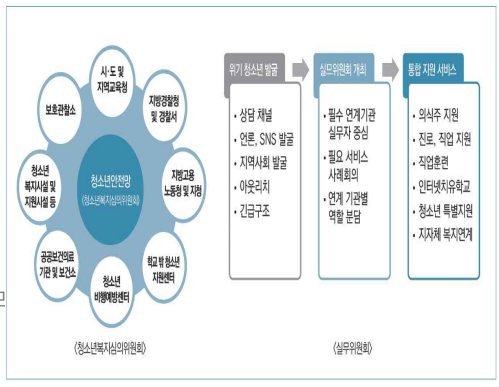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백서. p. 240.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일부 센터에서는 아동 정신건강증진팀이 설치되어있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있음
  - 20년 기준으로 전체 255개 시군구 중 222개 센터에서 아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중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 및 의뢰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사정(assessment) 평가, 집단 및 개인 개입 프로그램,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정신의료기관 연계 또는 학교나 시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며, '주로 초등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ADHD 문제에 보다 중점 을 두고 심리치료, 사회기술훈련, 정서 조절, 부모 교육 및 부모 양육 기술 등의 프로그램을 1년 반의 기간 동안 제공하고 있음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1) 국내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팀 (혹은 아동·청소년 전담 팀) 설치 현황**

| 시도명 | 팀 현황(2020년) | 시도명 | 팀 현황(2020년) |
|---|---|---|---|
| 서울 | 25 | 강원 | 15 |
| 부산 | 16 | 충북 | 14 |
| 대구 | 8 | 충남 | 16 |
| 인천 | 11 | 전북 | 12 |
| 광주 | 5 | 전남 | 18 |
| 대전 | 5 | 경북 | 23 |
| 울산 | 5 | 경남 | 14 |
| 세종 | 1 | 제주 | 2 |
| 경기 | 32 | | |

자료:전진아 외 (2022).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p.99.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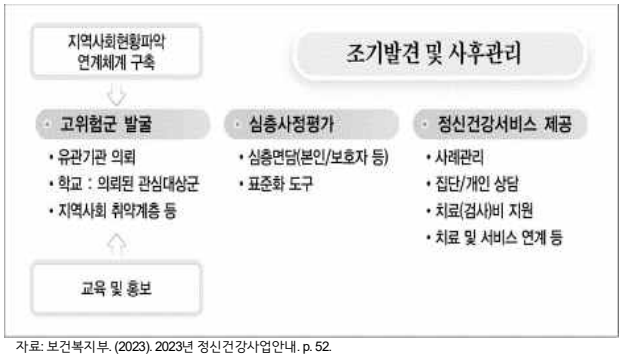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 52.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2) 해외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전문기관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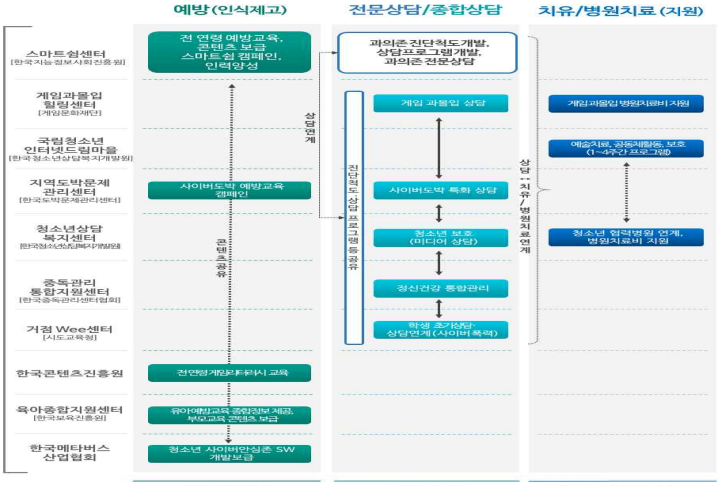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지능정보서비스의 건전한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2022-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 (2) 해외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호주)National Childre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 해당 전략은 0-12세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4가지 영역**(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교육 세팅, 근거와 평가)**을 바탕으로 연속적, 통합적인 개입을 목표로 수립된 국가 전략임.
  - 4가지 영역의 수행은 8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함.
    - 아동 중심(child-centred)
    - 강점기반(strengths-based),
    - 형평성과 접근성(Equity and access)
    - 예방중심(Prevention-focused)
    - 포괄적인 시스템(Universal system)
    - 근거기반의 실행과 지속적인 질평가 (Evidence-informed best practice and continuous quality evaluation)
    -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 수요중심의 개입 (Needs based, not diagnosis driven)

국가 아동 정신건강과 웰빙 전략의 목적 및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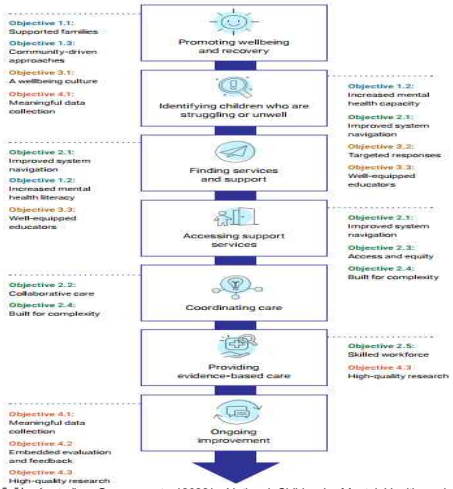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2022). National Childre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p 30.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2) 해외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호주)National Children'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trategy

(1) 가족 및 지역사회

- 부모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해력 증가에 초점

(2) 서비스 시스템

- 시스템 탐색의 향상, 다학제적 접근, 비용 및 지리적 접근성 개선과 형평성 개선, 정신건강 취약 아동(복잡한 상황을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3) 교육 세팅

- 교육환경에서는 웰빙 문화, 특정 문제에 대한 대응(학교 밖, 따돌림, 인종차별 등), 교사의 역량 강화 강조

(4) 근거와 평가

- 의미있는 자료 수집, 내제된 평가와 환류, 높은 질의 연구에 초점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2) 해외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영국) Children & Young People's Emotional Health and Wellbeing in Education Framework(CYPMH)
  -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레임워크 구조, 2) 조기개입, 3)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을 강조하는 전략임.
  - (1) Wellbeing for All
    - 학교 전체 환경에의 접근, 보편적 건강증진, 학교 공동체 내 케어 및 지원 문화, 정신건강증진
  - (2) Early Support
    - 학교 내에서 전체적,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그룹 또는 개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함
  - (3) Enhanced Support
    - 복잡한 니즈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참여/권고
- (영국) 아동 청소년 대상 정보제공 서비스
  - Every minds matters, Young minds, The mix, Kooth 등의 단체는 온라인 또는 앱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정신건강문제 긴급 도움 서비스
  - Shout, Papyrus, Beat 등의 서비스는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자살, 섭식장애 등에 긴급 상담을 제공함

# 3.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

(2) 해외 아동 대상 정신건강 관련 정책 또는 서비스

## ▪ (캐나다) Child and Youth Mental Wellness Action Plan 2017-2022

- Government of the Northwest Territories (GNWT)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과 중독관련 프로그램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룹을 타겟으로 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내용 |
|---|---|
| 최종 목표 | 아동, 청소년(0-24세)는모든 생애주기에서 정신건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목표 1 |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문해력의 향상 |
| 목표 2 |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
| 목표 3 |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숙련된 성인 양성 |
| 목표 4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
| 목표 5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 |

- 각 목표에 따라 캐나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을 전달하며, 각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있음.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질적면담 대상자 모집 결과

### (1) 아동

- 아동은 13세-19세 25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약 한달 반 기간 동안 대면 및 비대면 1:1 개별면접을 수행
- 대상자 모집은 교육청, 학교사회복지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심리치료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 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모집

### (2) 보호자

- 보호자는 총 9명을 진행하였으며, 9월부터 약 한달 반 기간 동안 총 5회의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
- 대상자 모집은 맘카페,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 추천 또는 선별하여 모집

### (3) 실무자

- 실무자는 총 13명을 진행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
- 실무자의 범위로는 쉼터 관계자, 학교 담당자, 위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 담당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청소년 상담복지세터 상담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를 포함

### (4) 정책관계자

- 정책관계자는 총 12명(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 중앙부처 공무원 1인) 을 진행하였으며, 9월 약 한달간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질적면담 질문지(아동)

**<중고등학생용 면접지>**
**1. Introduction 1-2 (15분)**
- 연구에 대한 설명
면접 진행 방법
비밀보장 및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알림.
**2.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알아보기**
- 먼저 본격적인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소개를 해볼까요? (학교에 다니면, 학년과 이름, 학교 밖 청소년이면 나이와 이름)
- 오늘 우리는 OO님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OO님이 생각하기에 정신건강은 무엇일까요?
(예: 마음이 편안한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되는 것, 우울하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 OO님 주위 또래 청소년을 떠올렸을 때 그들의 정신건강은 어떤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친구들과 비교해 정신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3. 정신건강 어려움의 경험과 해결방법**
1. 신체건강도 그렇지만 기분(우울감, 불안감 등 정신건강)이 항상 똑같지는 않은데요. 어떨 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1) 학교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 혹은 우울 혹은 불안감, 고립감을 주는 사람이나 원인이 뭔가요? 예를들면 친구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혹은 형제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시험, 입시? 진로? 외모? 체형? 뭔가요?
2) 그렇게 힘들 때의 증상 (잠을 못잔다.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 3) 해결방법은?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위로를 얻기, 전문 기관을 찾기, 참기, 회피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이유를 묻지 말기
4)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2) 비대면 온라인 상담과 대면 상담이 있다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나요? 그 이유는?
3) Wee클래스·학교단위의 학생 상담실/ Wee센터·시도단위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모바일상담센터, Wee 클래스, 1388,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설 심리상담센터, 심리치료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4) 위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진료 기록이 남는 부분은 괜찮을까요?)
3. 만약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나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따돌림, 고립감 (무리에 속하지 않는듯한 느낌) 경험, 우울, 부모님과의 관계, 학교 부적응 등)
1) 만족했나요?
2) 누가 이 서비스를 알아봤나요?
3)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리는? 비용은? 만족합니까?
4)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얼마나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이유는?
5) 정신건강 서비스나 치료를 받는데 청소년이라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지난 3개월 동안 우울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기력증을 느낀 적은 있나요?
- 친구와의 관계에서 고립감이나 우울, 괴롭힘 등으로 어려웠던 적은 있나요?
- 스마트폰, 게임을 그만하고 싶지만, 그만해야 하지만, 그만하지 못했던 적은 있나요?
-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괴로운 적이 있었나요?
-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고민하면서 힘든 적이 있었나요?
-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청소년이 정신건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가까운 거리, 비용, 서비스 이용 기관 홍보 등
5.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을 받아보시
-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나요? 그 이유는? 만약 이와 같은 교육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속 정신건강**
1)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음이 어려웠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위로를 얻기, 전문 기관을 찾기, 회피하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
**5. 도움 요청 후, 바라는 점**
1) 마음이 힘들 때면 어떻게 하십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거나 위로를 얻기, 전문 기관을 찾기, 스스로 참기, 회피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
-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OO님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 했을 때 OO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지지해주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나요?
- OO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려움을 공감해주었을 때 OO님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OO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했을 때, 혹은 공감해주지 않았을 때 OO님은 어떠했나요?
3) 주변 친구들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것 같나요?
4) 정신건강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OO님이 공부를 잘해서 못해서, 혹은 OO님이 어려서 등등
**6.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종결**
1)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충분히 신경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혹은 학교에서 어떤 점을 도와줘야 할 것 같나요?
3)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개입이 청소년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질적면담 질문지(보호자)

**Introduction 1-1 (5분)**
참석자에게 본 인터뷰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하도록 가이드
- 연구과제 & 연구원 소개
- 인터뷰 목적 소개
오늘 좌담회에서는 여러분 자녀의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ADHD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진료, 음악 미술치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때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정해진 방향의 결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많은 말을 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말하고 싶은게 생기면 손을 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 비밀 보장, 녹음에 대한 언급 (목소리를 크게 말해주면 감사, 익명 보장), 휴대폰 off 요청
- 본 인터뷰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urn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계속 바꿔서 진행한다
**2. Introduction 1-2 (5분)**
- 먼저 본격적인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어디 거주하시는지, 몇 세 자녀(아동)를 양육하고 계시는지, 본인 생각에 자녀(아동)의 정신건강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 오늘 여러분 자녀(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자녀(아동)의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마음이 편안한 것, 집중력이 좋은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회복되는 것, 우울하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걱정거리가 없는 것

**3. 자녀의 정신건강 현황**
- 본인 생각에 자녀의 정신건강수준·상태 어떤지
- 실제 자녀가 겪고있는 정신건강문제 (스트레스, 우울, 불안, ADHD, 게임·스마트폰중독, 약물 사용 문제 등)는 무엇인지
-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에 대해) 해당 정신건강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선천적 성향? 학업? 외모문제?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가정 내 기타 다른 문제? ...
- 정신건강문제의 영향
발달·학업·생활·부모와의 관계·친구와의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를 겪는 자녀에게 본인이나 다른 보호자가 주었던 도움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예: 이야기 들어주기, 공감하기, 서비스 이용 ...
**4. 자녀의 정신건강문제 관련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이용경험**
(공공·사설센터에서의 아동·가족단위·부모대상 상담, 음악·미술치료, 병의원 진료...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내 위클래스 등)
-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서비스 기관, 서비스 내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이용하게 된 계기·경로
예: 다른 부모 등 지인의 소개, 인터넷 카페, 온오프라인 홍보물, 아동이 직접 찾았음 ...
- 서비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예: 기관에 신뢰가 가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뢰가 가서? 가까워서? 비용이 저렴해서?
- 서비스 이용 주기
- 서비스의 접근성 (이용하는데 있어서 거리 상의 문제, 가격 문제, 낙인에
- 민간서비스(사설 센터 및 병의원 등)의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질문
- 서비스의 효과 및 만족도(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기대와 같았는지), + 그 이유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동 입장에선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서비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는지
예: 내버려둔다 등..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과 자녀 간 갈등은 없었는지
예: 자녀는 이용을 원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지,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는지 등
**5. 주변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 본인 자녀 외 주변 아동들도 정신건강에 있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 다른 학부모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어떤 문제를 겪었고, 어떤 해결책을 적용했다..).
**6. 필요한 국가의 지원, 아동 관점에서 잘 제공되는 것 같은지**
- 나라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신체건강을 위해 충분히 신경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사업 등)
- 아동 관점에서 적합하며 충분한 정책이 시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으신지 요?
- 국가에서 어떤 점을 더 도와드줘야 할 것 같으신지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현재 서비스의 개선 방안은?
(예: 부모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7. 참석 소감**
- 마지막으로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소감(오늘 말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든지)이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질적면담 질문지(현장실무자)

| | | |
|---|---|---|
| **1. 간단한 자기 소개 및 귀 기관(센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br>-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 귀하께서 맡고 있는 업무 내용은<br>어떻게 됩니까?<br>- 귀하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br>- 기관의 종사자수와 지휘감독체계 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br>**2. 귀 기관(센터)에 방문하는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br>- 귀 기관에 방문하는 아동들이 주로 안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무엇입니까?<br>- 아동들의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상황(가정환경)은 어떻습니까?<br>3. **아동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귀 기관(센터)으로 오고 있습니까?**<br>- 아동의 특성이나 정신건강문제 유형에 따라 방문 경로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 4. 정신건강 **위기 아동들이 귀 기관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br>- 이러한 서비스나 지원이 제공되는 전반적인 체계(절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br>- 서비스 제공시, 아동의 특성은 어떻게 고려 및 반영이 이루어집니까?<br>- 타 기관으로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br>5.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br>- 상담 및 관리의 전반적 과정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 또는 교육이 이루어집니까?<br>6. 서비스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이 고르게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br>- 혹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문제 유형 등의 측면에서) | **7. 제공되는 서비스와 지원은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br>- 상담 및 지원을 받은 아동 및 보호자의 만족도는 어떤 편입니까?<br>- 만약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br>- 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뿐 아니라 현재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체계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br>**8. 서비스 제공 등 귀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br>- 아동 및 보호자와의 관계<br>- 조직 내부적인 요인<br>- 정부 및 타 기관과의 관계<br>- 기타 법·제도적 요인<br>**9. 정신건강 위기 아동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질적면담 질문지(정책관계자)

| | |
|---|---|
| **1. 귀하가 맡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br>-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해 귀하께서 맡고 있는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br>- 귀하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br>**2.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가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혹은 서비스는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까?.**<br>-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가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혹은 서비스 중 초점을 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문제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br>-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가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혹은 서비스는 예방,발굴, 조기개입, 상담, 사례관리, 치료 등 서비스 스펙트럼 상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왜 그 영역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각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 혹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br>-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는 아동의 생애주기, 학령, 성별 등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br>-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계획 등에서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가?<br>- 서비스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이 고르게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문제 유형 등의 측면에서)<br>**4.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가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협업하는 부서 혹은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곳입니까? 어떤 문제로 어떻게 협업하시는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br>**5. 현재의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체계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br>**6. 귀하 혹은 귀하의 부서가 아동 정신건강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쉬운 점 혹은 부족하다고 인식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가?**<br>**- 귀하가 업무를 하시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들은 무엇입니까?**<br>**7.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아동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아동의 연령은 16세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6명, 14세 4명 순이었음.
- 성별은 여학생이 15명, 남학생이 10명이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4명, 가정 밖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1명이 포함되었음.
- 정신건강 어려움의 종류는 우울 및 불안이 14명, 학업스트레스가 7명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순위 질문에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6명으로 가장 많았음.

질적면담 참여자 특성(아동)

| 연령 | 명 | 성별 | | 명 |
|---|---|---|---|---|
| 13 | 1 | 남 | | 10 |
| 14 | 4 | 여 | | 15 |
| 15 | - | 학교밖 | | 4 |
| 16 | 8 | 가정밖 | | 1 |
| 17 | 6 | 지역 | 서울 | 1 |
| 18 | 3 | | 경기도 | 21 |
| 19 | 3 | | 기타 | 3 |

| 정신건강 어려움 | | | 위기도 | |
|---|---|---|---|---|
| | 1순위 | 2순위 | | |
| 우울 및 불안 | 14 | | 높음 | 18 |
| 학업스트레스 | 7 | | 경미/낮음 | 7 |
| 또래관계스트레스 | 1 | 3 | 합계 | 25 |
| 가족관계스트레스 | 1 | 6 | 폭력이슈 | |
| 일상생활스트레스 | 1 | | 유 | 10 |
| ADHD | 1 | 1 | 무 | 15 |
| 기타 | | 1 | | |
| 계 | 25 | 11 | 합계 | 25 |

자료: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아동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아동이 인식하는 정신건강>

|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 상태 | 좋은 정신건강 상태 |
|---|---|
| 스트레스<br>우울<br>소극적<br>감정기복<br>부정적<br>자살생각<br>문제 회피 | 좋은 인간관계<br>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낌<br>긍정적<br>공감능력<br>문제직면하여 해결하려 함<br>자기 의견 말할 수 있음 |

<아동이 필요로 하는 개선>

- 말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는 경험
- 문제상황 공유보다 부모를 협력자로 초대하는 경험
- 찾아가서 아동청소년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경험
- 사례중심의 예방교육 경험
-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험
- 다양한 청소년의 문화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

<아동 정신건강 위기 대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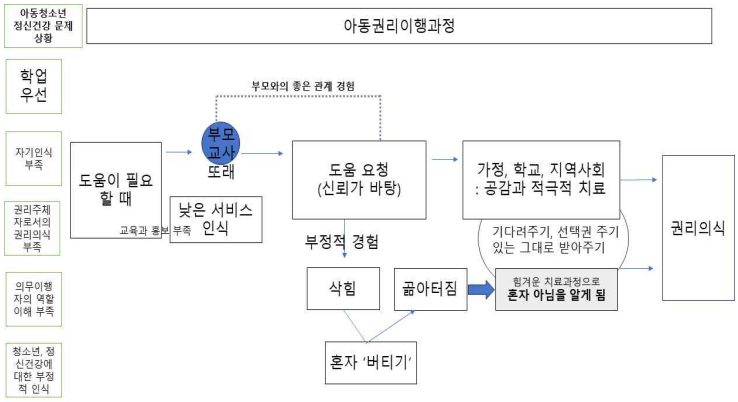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보호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보호하는 아동의 연령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었음.
- 성별은 남성이 6명, 여성이 3명이었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였음.
-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어려움의 종류는 ADHD 진단이 가장 많았으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 불안, 자해 등이 포함됨

질적면담 참여자 특성(보호자)

| 모집처 | 보호자 | 거주지역 | 아동 성별 | 아동연령 |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 |
|---|---|---|---|---|---|---|
| 맘카페 | A | 경기도 | 남 | 초1 | 자폐 스펙트럼 장애(장애 진단) | 일반학교 특수반 |
| | B | 서울 | 남 | 만6세 | 자폐 스펙트럼 장애(장애 진단) | 장애통합어린이집 |
| | C | 경기도 | 여 | 초6 | ADHD, 경계선지능(장애 진단) | 일반학교 완전통합반 |
| | D | 경기도 | 여 | 초1 | ADHD | 일반학교 |
| | E | 서울 | 남 | 초6 | ADHD | 일반학교 |
| ○○시 자살예방센터 | F | 경기도 | 여 | 중2 | 우울, 불안, 자해, 자살시도 | 일반학교 |
|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G | 경기도 | 남 | 고1(둘째) | 우울, 불안,가정폭력 | 일반학교 |
| | H | 경기도 | 남 | 고1(첫째) | ADHD, 가정폭력 | 일반학교 |
|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I | 전라북도 | 남 | 고2 | ADHD, 우울 | 일반학교 |

자료: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보호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원인: 가족의 무관심, 부모와의 갈등
- 아동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또래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학업에 영향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경험
  - 맘카페 그룹: 정보 부족, 높은 비용,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 ADHD에 대한 정신질환 약물의 효과
  - 공공센터 이용자 그룹: 고위험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은 높음, But,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 존재. 가족 상담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공통된 주제: 보호자의 희생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보호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두드러지는 이슈
  - 정신건강 문제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아동 본인의 인지
  -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의 차별
  - 아동의 약물복용,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존재
  -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부모의 불인지
  - 정신건강 문제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부정적 인식
  - 재촉하기보다 기다려주는 태도 필요
  - 최근 발생한 이슈 관련(사회의 존중과 배려 필요)
- 정책 개선 요구
  - 정책의 충분성 확대 : 바우처 증액, 상담서비스의 횟수 증대
  -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의 보호자 대상 지원 정책 필요: 부모상담 지원
  - 아동정신건강을 위한 학교 기반 지원 정책
  -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조기개입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실무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현장 실무자는 쉼터 관계자, 학교담당자, 위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 담당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였음.

질적면담 참여자 특성(보호자)

| | 구분 | 소속 | 직위 |
|---|---|---|---|
| 1 | 실무자 A | A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 소장 |
| 2 | 실무자 B | A광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소장 |
| 3 | 실무자 C | ○○여자중학교 | 교육복지사 |
| 4 | 실무자 D | △△초등학교 | 교사 |
| 5 | 실무자 E | B광역시 교육청 위센터 | 실장 |
| 6 | 실무자 F | C시 교육지원청 위센터 | 사회복지사 |
| 7 | 실무자 G | D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지원팀 | 팀장 |
| 8 | 실무자 H | E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지원팀 | 팀장 |
| 9 | 실무자 I | 경기 ○○시 드림스타트팀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 10 | 실무자 J | 경기 □□시 드림스타트팀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 11 | 실무자 K | 서울시 A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사 |
| 12 | 실무자 L | 부산 K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전문요원 |
| 13 | 실무자 M | 전북 J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자료: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실무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 만성화 및 다양화
  -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언급
-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체계
  - 다양한 공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가 존재
  - 서비스 연계는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남. 관련해서, 명확한 역할 분장이 없어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 아동의 특성 및 의견 반영은 미미
  -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아마도 아동이 정신건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모른다고 지적
  - 그래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의 개입은 아동이 원해야 효과가 높기 때문에, 아동에게 충분한 안내와 설득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 및 치료는 아동의 선호와 특성을 거의 전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실무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서비스 이용 제약 요소 및 사각지대
  -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
  - 인프라 부족: 전문의와 상담인력, 시설 부족. 지방으로 갈수록 인프라 부족 문제는 심각. 아동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진행되는 상담과 치료
  - 고위기 문제중심 및 학교 중심 개입: 소외되는 학교 밖, 가정 밖 아동 , mild-moderate 정신건강 문제 경험 아동
-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충분성 부족
  - 사회적 총량은 증가 " 표면적인 관심의 증가 "
  - 세부적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부족: 타겟화된 특성을 고려한 접근의 부족
  - 그때그때 이슈 중심의 대응
  -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 & 열악한 처우와 소진
- 제도 개선 방향
  - 정신건강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아동의 공유성과 정신건강 문제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촘촘한 보호망 강화와 다학제 전문가 개입
  - 현장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정책 기획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정책관계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정책관계자는 9개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과 더불어 중앙부처 공무원 1인을 대상으로 질적면담을 실시하였음.
- 지역은 서울·경기 2명, 강원권 2명, 전라권 2명, 충청, 대전, 부산, 인천에서 각 1명이 모집되었음.

질적면담 참여자 특성(보호자)

| | 구분 | 유형 | 성별 | 지역 |
|---|---|---|---|---|
| 1 | 정책관계자 A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서울·경기 |
| 2 | 정책관계자 B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서울·경기 |
| 3 | 정책관계자 C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전라권 |
| 4 | 정책관계자 D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충청권 |
| 5 | 정책관계자 E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대전 |
| 6 | 정책관계자 F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부산 |
| 7 | 정책관계자 G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전라권 |
| 8 | 정책관계자 H | 아동보호전담요원 | 남 | 강원권 |
| 9 | 정책관계자 I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강원권 |
| 10 | 정책관계자 J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인천 |
| 11 | 정책관계자 K | 아동보호전담요원 | 여 | 전라권 |
| 12 | 정책관계자 L | 중앙부처공무원 | 여 | - |

자료: 면담과정에서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정책관계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다양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 ADHD, 우울과 불안, 공격성, 수면, 자해/자살 등 경험
  - 정신건강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보호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한 정신건강 서비스
  - 심리검사와 심리치료(필요시) : 주로 민간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
  -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입원 + 행정입원)의 경험 존재 : 보호자 동의의 어려움 + 통고제도 활용 (치료인프라의 부족)
  -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정신과 의사
  - 아동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의 협의기반 논의체에 참여 경험은 부족
  -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수요 존재

# 4. 정책전문영향 평가를 위한 질적면담조사 분석 결과

## ▪ 정책관계자 대상 질적면담조사 결과

- 아동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인식
  - 낮은 정책 우선순위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 개선 필요사항
  -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정신건강 교육 수행
  -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대상 치료 인프라 확대:치료인프라시설+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 정신건강 유관자원 간 연계와 협업 강화
    -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협의체 참여
    - 사례결정위원회 정신과 의사 필수 포함
    - 중앙 및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아동 정신건강 정책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필요
  -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바우처 확대
  - 정신건강, 정신질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1)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분석틀

## ▪ 정신건강 개념

- "a state of mental well-being that enables people to cope with the stresses of life, realize their abilities, learn well and work well, and contribute to their community"
- **정신건강 문제 유형 자체의 다양성 + 아동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의 다양성 고려**

## ▪ 정신건강 위기 아동의 개념 설정 과정

- **연구에서 정의한 정신건강 위기 아동 = 아동 전체를 의미함.**
  - 현재의 아동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혹은 정신질환을 가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방 차원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 문제, 초점 중심의 targeted approach + 예방교육 등 comprehensive approach.
  - But, 연구의 질적면담조사에서의 초점 아동 =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
    - 정신건강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권고 사항 도출을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경험과 의견 수렴 과정 진행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 (1)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분석틀

### ▪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에 따른 분석틀

-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권리를 모두 고려하여 전문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
- 일반원칙과 권리가 서로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각 원칙 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함.

| 일반원칙 | 내용 |
|---|---|
| 1. 아동 이익 최상의 원칙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 | • 아동의 정신건강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br>•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 계획 등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
| 2. 비차별의 원칙 | 모든 어린이는 부모, 인종, 종료, 언어, 소득, 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
| | • 아동의 생애주기와 필요 정도에 따라 충분한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가?<br>• 연령, 경제적 수준, 거주지역, 이주배경, 장애 등 아동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잠재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
|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 어린이는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
|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현황이나 특성 고려)생애주기에 맞는,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br>• 생존(질환) 뿐 아니라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위한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가?<br>•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br>•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인지, 도움 요청 방법 인지,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
| 4.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어린이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함. |
| | • 해당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br>• 서비스의 이용 여부, 유형 등의 선택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는 어느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는가?<br>• 부모와 아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관련하여 어떠한 원칙이 있는가?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 1) 아동 이익 최상의 원칙

| | |
|---|---|
| 현황 | ▪ 아동 관련 법제도와 국가 단위 계획,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와 국가 단위 계획에서 아동 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제시<br>▪ 아동 관련 모든 부처에서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중이며, 아동 정신건강 사업 및 서비스는 다양해지고 아동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지속 확대<br>▪ 아동 정신건강 관련 심리, 정서, 마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voucher 확대<br>▪ 최근의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이슈(예. 서현역 사건, 교원 의 자살 등)의 영향 존재 |
| 문제점 | ▪ **(알아야만, 찾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아동과 보호자가 알아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도움 이용정도에 편차 존재.<br>▪ **(정신과적 치료 서비스 이용에서의 제약)** 정신과적 증상 혹은 질환을 경험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보호 시설 부족 + 아동 중심의 치료 환경(소아병동 미분리)<br>▪ **(낮은 서비스의 질)** 민간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 & 공공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 정신건강 상담 거부나 저항 존재.<br>▪ **(아동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상담 및 심리치료는 회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은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음(예산의 이슈와 연관)<br>▪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과 그 가족,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각 서비스 제공 주체만의 관심)** 새로운 기관이나 사업 개발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관심이지 지역, 사회, 제도 전반의 관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즉, 사회적, 제도적 전반적인 관심은 여전히 낮음.<br>▪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아동 정신건강 : 부족한 예산 및 인력 -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나 긴급 정신건강 현안 대응 위주로 대응하다보니 아동정신건강은 후순위로!.)** 정신건강 정책은 아동이 아닌 성인 중심으로 진행 + 자해 및 자살 아동 대상 디테일한 관찰과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 상 진행되기 어려움.->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br>▪ **(아동의 이익인가? 부처의 이익인가? - 서비스 간 협력과 연계 미흡)** 아동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 중첩되고, 통합·조정되지 않고 각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상황. 인프라나 서비스는 확대되지만 중복지원을 받거나 사각지대의 아동 발생 우려 존재.<br>▪ **(아동 이익을 최선으로 두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 1) 아동 이익 최상의 원칙

| | |
|---|---|
| 개선 권고 사항 | ▪ **(사후 개입 방식이 아닌 사례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른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 예방교육 강화.<br>▪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미디어 모니터링(예. 강제 입원 장면 등) 및 개선 권고<br>▪ **(정신과적 증상 및 질환 경험 아동 치료 인프라 확충 및 치료 환경 개선)** 소아 병동 분리, 소아 대상 병원 내 재활 프로그램 강화, 병원형 학교 운영 확대, 치료인프라 확충<br>▪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인식 개선 기회 확대)** 웹드라마 등 영상, 연극, 표어/슬로건 등 아동이 참여할 기회 활성화. 공모전 등을 활성화하고, 당선된 내용들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진행.<br>▪ **(정확한 정보제공 지속)**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기록이 취업, 학업, 진학에 활용되지 않는 개인 정보라는 사실 등 정확한 정보제공 지속 및 정보제공 매체 확대.<br>▪ 중앙 단위 아동 정신건강 정책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br>▪ 지역 내 아동 정신건강 사업 및 프로그램 조정 및 성과 모니터링,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br>▪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상 정신건강 보수교육 구성 및 운영<br>▪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실무자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이수 의무화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 2) 비차별의 원칙

| | |
|---|---|
| 현황 | ▪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사업 지원 중<br>▪ 지자체별로 아동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인프라들이 존재(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등) |
| 문제점 | ▪ **(학교 중심의 지원)**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 & 가정밖 청소년 대상 지원은 열악한 상황임. 가정 밖이면서 학교밖인 청소년인 경우가 가장 열악하며, 공공서비스 이용 기록에서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아동이 서비스 인지, 이용 등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br>▪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물리적 접근성 제약)** 군단위 지역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 (공공과 민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모두). 지리적 접근성 제약이 결국 사각지대로 작용<br>▪ **(시간적 접근성 제약)** 아동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아동 이용시간과 맞지 않음. 모바일 등 매체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지 부족<br>▪ **(가격적 접근성)** 종합심리검사는 3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 발생<br>▪ **(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정보의 격차)**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 개선 권고 사항 | ▪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확대<br>▪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신건강 상담 기회 제공 확대<br>▪ 학교 기반 정신건강 지원 강화 – 위클래스 설치 확대<br>▪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담당 인력 지정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 | |
|---|---|
| 현황 | ▪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학령전환기에 진행하면서 발달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심리정서 상태 모니터링 중<br>▪ 약물사용장애(마약, 중독성의약품), 도박 문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정신건강 문제 존재<br>▪ 202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 문제점 | ▪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 성인의 아동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부정적인 인식 + 아동의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br>▪ **(고위기 사례 중심의 개입)** 고위기 사례에 비해 무기력이나 문제행동, 우울 등은 위센터나 청상복에 의뢰해도 케이스가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편임.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개입이 시작되는 구조<br>▪ **(스트레스 해소 방식의 부재)** 자해의 수단 혹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형태로 음주, 약물, 물질 사용하는 아동·청소년 존재.<br>▪ **(폭력 피해 아동, 자살유가족인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아동 대상 정신건강 지원 미흡)**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 자살유가족 중 아동에 대한 관심 필요. 이들은 자살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돌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 높음.<br>▪ **(가정 내 지지 부족)** 가족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요인이자 지지요인이기도 함. 협조하지 않는(아이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보호자 +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보호자 ->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br>▪ **(부모 대상 지원 부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을 보호 혹은 돌보는 부모 대상 지원은 부족<br>▪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검사 후 조치에 익숙한 아동 ->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 | |
|---|---|
| 개선 권고 사항 | ▪ **(아동의 연령별, 성별, 특성별(학교 밖, 가정 밖, 이주배경청소년, 범죄 청소년, 보호시설 아동 등) 정신건강 문제 현황 모니터링 지속)**<br>- 출산전후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주산기 자료원 구축(호주 사례)<br>- 보호대상아동 양육환경조사 내 ADHD 외 정신건강 문제 추가 모니터링. 이를 위한 보호대상 아동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자원확보.<br>- 아동의 약물사용, 도박 문제, 섭식장애 등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체계 마련 필요.<br>▪ **(학생자살에 대한 심리부검 보고서 작성 및 공유)**호주의 아동 정신건강 전략에서는 아동 정신건강 자료가 부서간 공유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과제로 제안하고 있음<br>▪ **(학대 및 폭력 피해 아동 대상 정신건강 지원 강화)**정신과 치료/ 심리치료 비용 지원<br>▪ 자살유가족인 아동 대상 모임 구성 및 운영<br>▪ 참아내는 것이 아닌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 공유 + 아동의 정신질환, 정신건강 문제, 약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지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br>▪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체활동 활성화)** 학교 내 동아리 문화 및 취미 프로그램 활성화, 학생들의 만족도, 흥미 높일 수 있도록 Wee 클래스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예.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등)<br>▪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바우처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아동의 보호자 대상 지원 도모**<br>▪ 마약류 외에 향정신성의약품, 다이어트 약품의 온라인 판매에의 접근성 제한 조치 강구 |

# 5.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개선권고사항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

## ▪ 4)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 |
|---|---|
| 현황 | ▪ 아동 정신건강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은 일부 반영되고 있음(아동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아동의견 청취 + 아동정책 전문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의 성과 모니터링 시 아동의 의견 청취 중) |
| 문제점 | ▪ **(아동의 정신건강 상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br>▪ **(서비스 이용,조치 등에 있어서의 아동 결정권 존중 부족)**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 + 아동의 치료의사는 상담 및 치료 진행의 중요한 요건 + 아동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
| 개선 권고 사항 | ▪ **(아동 정신건강 상담에서의 프라이버시 존중)**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닌 아동에게 어떻게 대해야하는 지의 내용으로 보호자와 정보 공유 +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공유할 지에 대한 아동과의 논의 선행 필요<br>▪ **(부모 동의 절차 지원 체계 마련)** 교사, Wee 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인력에 의한 부모교육 등 설득 과정 진행(예. 싱가포르의 REACH 팀은 학교에서 의뢰된 아동·청소년의 부모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교육 등 설득과정 진행) |

지정토론

## 토론문

**박소연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 정신건강 위기 아동 지원 정책 전문영향 평가에 대한 토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와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영향 평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개인적으로도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발표 내용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개선점을 명료하게 정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영향평가 분석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몇 가지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상담센터에서 제공되는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와 공공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제도 강화와 보수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거 기반 실천 방법을 적용해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언급한 호주의 근거기반의 실행과 지속적인 정성평가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의 물질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 행정처(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는 대상별 및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웹 기반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진은 비차별의 원칙에 부합하는 개선 권고 사항으로 학교 기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위클래스

설치 확대를 언급하였습니다. 발표에서 언급된 호주 사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의 확대는 중요하며, 학생과 매일 접촉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상담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육, 문화, 여가 등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2년 전에 실시한 보호대상아동의 정신건강정책 전문영향평가에서 한 아동이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지만 여행을 갈 수 없어 슬퍼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호대상아동은 룸메이트의 코골음으로 인해 편안한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현재 많은 정신건강서비스는 특정 문제를 가진 아동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높지만 낮은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는 주로 중증 정신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건강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두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에서, 아동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아동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를 교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아동의 의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의 보장 등에 대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합니다. 즉 아동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아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정토론

토론문

**서청희 센터장**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연구에 관한 토론문

## 1.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실태

아동청소년기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생물학적 변화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정체성 혼란,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경험하는 학업과 진로, 학교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 명당 2.7명에 달하며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고, 지난 10년간 30대 이상의 타 연령대와는 달리 자살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자해 및 자살시도자 중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차 증가추세인 점도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다(질병관리청, 2023). 이에 2023년 4월 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는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 및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기상황임을 공표한 바 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살학과 죽음학 연구자인 에드윈 슈나이드먼 박사는 자살자들의 유서와 사례를 분석하여 공통된 핵심 단어 2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아동기'와 '불행'이었다(Shneidman, 1998). 즉,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동기의 불행을 겪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87%가 행복하지 않다고 보고된 내용과(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10대 및 20대의 자해와 자살률 증가 현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기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에 따르면 아동의 주요 정신건강 요인은 신체화, 불안, 우울, 자살 및 자해, 스트레스, ADHD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정적 신체인식, 인터넷이나 게임, 스마트폰 사용 행태, 학교폭력, 부모양육태도, 부모가족관계, 자아존중감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관계, 부모지지와 같은 부모의 관계 및 지지 영역과 높은 중심성을 보였고, 자살 및 자해 정신건강 문제는 비행이나 외상 영역과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등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 2. 정신건강 위기아동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본 연구는 국내외 아동 정신건강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분석하고 질적조사를 수행하여 아동, 보호자, 실무자, 정책관계자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도출한 데 의의가 있다. 즉,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제시된 아동 정신건강 정책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 산하 기관을 통한 서비스 및 지원사업으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 모바일상담센터, WEE 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꿈드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 기관과 사업별 대상자와 서비스의 특수성을 분명히 하여 서비스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보건, 복지, 교육 영역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관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 평가와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호주, 영국, 캐나다의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호주의 경우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가족, 지역사회, 서비스 시스템, 교육 환경, 근거와 평가 등 4가지 수행 영역을 구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등과 중고등의 개입 전략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초등연령 아동의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가 중고등과 다르며 부모와 교육체계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정책 구조와 구분된 서비스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 나라들의 정책이 'WELLBEING', 'MENTAL WELLNESS'등 예방중심, 보편적 건강 증진, 강점 관점,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문제중심이나 질환적 접근보다는 교육 및 생활환경과 같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과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13세~19세 아동 25명, 보호자 9명, 실무자 13명, 정책관계자 12명을 질적분석하였다. 아동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고등 연령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와 경험, 의견을 듣는 좋은 자료를 구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분석결과 아동 정신건강 위기대응 경로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이행과정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정신건강 문제 상황시 적절한 도움의 유무에 따라 권리의식 형성 과정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제시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일반원칙과 내용 분석과 연결될 수 있는데, 아동의 정신건강을 권리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이를 정책기반화 하려는 시도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대한 권리를 당사자 권한으로 인지하고 요구할 수 있다면 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변 환경체계 역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마련하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위기아동의 개념 정의와 아동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뜻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취약한 아동일수록 권리보다는 생존이 더욱 문제가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의 부모 역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할 것이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도 전문성 보다는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현장을 고려하여 전문영향평가라는 연구 주제와 내용의 적합성이 보다 세밀하게 적용되길 바란다.

**참고자료**

질병관리청, 2023,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23, 2023 아동행복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Shneidman E. S., 1998, The Suicidal Mind, (번역) 자살하려는 마음, 서청희, 안병은, 2019.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발표자 : 임세희(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발제자 : 임세희, 강미나, 강현미, 송아영, 조영민, 최선아, 도화정

1

##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해외사례
4. 연구결과
5. 결론

2

# 1. 서론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 주거지원정책을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과 4대 권리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함
- 가정 내 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자 함

3

## • 연구 필요성

- 주거는 아동의 권리에 전방위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침
- 기후 위기로 주거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주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에 사는 것은 아님
  -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 가구 중 11.0%가 주거취약계층이었음(강미나 외, 2020)
- 그동안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혹은 저출산 대응에 집중함
  - 아동 혹은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강미나 외(2020)와 김지연 외(2020)가 있음
- 본 연구는 앞서의 연구 결과를 계승하되, 아동권리적 관점 적용, 상세한 개선방안 제시, 가정 밖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까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4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자료분석, 질적연구, 서면자문의 방법을 활용함
- 문헌연구
  - 아동 주거권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아동주거지원정책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함
  - 정책 대안에 참고가 될 해외 아동주거지원정책도 문헌연구로 알아봄
  - 문헌연구는 각 종 법과 지침, 사업과 프로그램, 아동주거지원 정책 관련 선행 연구가 모두 포함됨
- 2차 자료분석
  - 아동 주거권 보장의 실태와 아동 주거지원 정책의 수혜 현황을 알기 위해 2차 자료 분석을 함
  - 2023년 9월 기준으로 주거관련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1년 주거실태조사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2%)를 활용
  - 가정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리 청소년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함

5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아동(아동가구) 질적연구 참여자_15명

| 구분 | 특성 | 주요 질문 |
|---|---|---|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 | 고등학생 3명<br>중학생 1명 | 아동주거권에 대한 생각<br>과거와 현재의 주거경험<br>필요한 주거지원<br>주거지원 정책 제안 |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보호자 | 서울시 초등, 고등 학생 모<br>전주시 유아, 초등 학생 모 | |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3명<br>청소년쉼터 1명<br>그룹홈 1명<br>가정위탁 2명<br>법무부 소년보호체계 2명 | |

[표 1] 아동(아동가구) 질적 연구 참여자

6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종사자 질적연구 참여자_21명

| 구분 | 특성 | 주요 질문 |
|---|---|---|
| 드림스타트 | 통합사례관리사 4명 | 아동 주거권에 대한 생각<br>아동 주거지원 경험<br>아동 주거지원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 |
|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사 4명 |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 2명 | |
|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전담인력 4명 | |
| 주거복지센터 | 아동주거지원 담당 4명 | |
| LH | 자립준비청년<br>건설임대주택 담당 1명 | 아동 주거권에 대한 생각<br>아동주거지원정책 계획 설립과정<br>아동주거지원정책 계획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
|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담당 1명 | |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사업 담당 1명 | |

[표 2] 종사자 질적 연구 참여자

7

##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서면 자문
  - 연구진 제안 개선안의 필요성에 대해 1(=전혀 필요하지 않음~5=매우 필요함)으로 평가 요청
  - 각 제언과 연구진이 제안하지 못한 기타 개선방안이 있는지 자문 구함
  - 10명의 자문위원들이 평가한 각 제언의 필요성은 평균값이 최소 2.7점에서 최대 5점이었음
  - 연구진은 자문위원들의 평가값과 제안 내용을 살펴본 후 상호협의하여 최종 개선방안을 도출

8

## • 분석틀

###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 분석 내용 |
|---|---|
|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 |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는가?<br>아동 혹은 아동의 보호자의 특별한 주거 욕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비차별의 원칙 | 성별, 소득, 장애, 출생순위, 지역, 언어, 보호자 유무 등 어떠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 |
| | 성별, 연령, 소득, 재산, 장애, 출생순위, 출신, 언어, 보호자의 유무 등의 요인에 따라 주거지원에 차별이 발생 하는가? |
| 아동이익 우선의 원칙 |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
| | 아동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더 높은 수준의 보호와 아동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제도를 설계하였는가?<br>정책 전달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밀한 전달체계를 구성하였는가? |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참여를 돕고,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한다. |
| |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에게 주거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가? 정보 제공이 적시에, 충분히 이루어지는가?<br>주거 정책 계획 단계에서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참여가 있는가? 의견 수렴 후 반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있는가? |

[표 3]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적용 분석틀

9

## • 분석틀

###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 4대 권리 | 분석 내용 |
|---|---|
| 생존권 |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섭취,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
| | 지원된 주거의 물리적 조건(방수, 면적, 구조성능환경, 필수설비)이 기본적인 아동의 삶의 수준을 고려한 주거인가?<br>주거비 부담으로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고 있는가?<br>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가?<br>전달체계가 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고려하며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가?<br>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
| 보호권 |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와 방임, 체벌과 폭력, 약물, 위해 환경, 고문,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아동에게 위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 | 아동의 보호권(특히 학대와 방임)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 주거의 물리적 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br>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br>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보호권(사고 위험의 예방 등)을 보장하는가?<br>전달체계가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아동에 대한 차별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하고 있는가?<br>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주거지원정책이 보호권(아동에 대한 차별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는가? |
| 발달권 |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아동이 교육 받고, 놀며, 휴식하고, 부모(보호자)·교사·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 주거의 물리적 조건(방수, 면적, 구조성능환경, 필수설비)이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br>주거비 지원이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는 수준인가?<br>지역사회 환경 정책이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와 계획을 하고 있는가?<br>전달체계가 아동의 발달권을 고려하며 주거 정보 제공, 주거탐색 등의 정책 집행을 하는가?<br>가정 밖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된 주거(시설)는 발달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 참여권 |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부모(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 주거권과 주거 지원에 대해 아동(가정 밖 아동청소년)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가?<br>주거에 대한 아동(가정 밖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부모(보호자)와 전달체계 종사자가 수렴하고 존중하는가?<br>아동(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부모(보호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전달체계 종사자는 아동(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옹호활동을 하는가? |

[표 4]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적용 분석틀

10

# 2. 이론적 배경

## • 주거의 의미

- 주거는 단순히 네 개의 벽과 지붕이 있는 거주지 혹은 상품이 아님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아와 공동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곳임
- 주거의 각 공간은 Maslow의 5단계 욕구체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및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대응될 수 있음

11

## • 주거권의 의미

-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임
- 주거권은 인권의 상호의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권리
- 주거권의 충족 여부는 '적절한 주거'가 있는 지로 해석되어야 함
- 1991년 사회권 규약은 주거권의 요소로 점유의 법적 보장, 서비스•물자•시설•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비용의 적정성, 거주가능성, 접근성, 사회적 시설로부터 인접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을 제시함

- 아동 주거권의 의미

1) 주거의 구조적•물리적 특성이 건강한 아동발달에 적절함
2) 주거비가 과중하지 않아 비주거부문 지출이 아동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
3) 퇴거 위험이나 빈번한 이동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
4)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이루어진 상태

12

## • 아동 주거권 우선 보장의 근거

- 아동의 고유한 특성
  - 아동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
  - 일차적 보호자를 넘어서 정부 혹은 사회의 외부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아동기의 발달은 영역별로 상호 연관되며, 아동기의 발달적 성과는 성인기까지 이어짐.
- 사회적 효용
  -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은 빈곤의 세습을 예방하고,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아동 초기에 이루어지는 개입은 늦은 시기의 개입보다 투자대비효과가 높음

13

## • 아동 주거권 우선 보장의 근거

- 국제규범
  - 1924년 아동권리선언은 서문에 "인류는 아동들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선언
  -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은 제 25조 제 2항에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라고 함.
  - 1959년 UN 아동인권선언의 제 2원칙은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와 시설을 제공 받아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를 분명히 천명함.
  -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은 제3조 1항에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함.
  - 스웨덴의 국무총리실의 보건사회부장관 오사 레그네르(Åsa Regnér)는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다른 모든 이슈보다 더 강한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견해를 밝힘.
  - UN 해비타트(UN-habitat, 2022)도 "도시의 미래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거욕구의 우선성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 정착촌과 빈민가에 사는 아동의 주거 우선 순위 해결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도시 계획 및 거버넌스에 더 많은 자원과 기술 전문성을 할당해야 한다"라 함.

14

## •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 과밀과 아동 발달

- 과밀 주거에서 아동은 긴장, 불편함, 통제 불능감의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경험함
- 불필요한 가구원 간 상호작용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호자 스트레스도 높아짐
- 부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
- 과밀할수록 아동의 숨가쁨, 천식, 비염, 아토피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질 좋은 수면이 감소하고, 비만 위험이 증가함.
- 과밀할 수록 아동 우울불안이 높아지고, 자존감과 행복감이 감소함
- 과밀할 수록 인지발달과 학업성취가 낮아지고, 학교내외 활동에 덜 참여함

15

## •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 채광, 환기, 냉난방, 습기, 단독 화장실 등의 문제와 아동 발달

- 채광과 환기가 잘 안되는 주거, 습기가 있고, 적절한 난방이 어려운 주거는 아동의 비염, 아토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높임
- 안전하지 않은 전기 배선과 불필요한 계단과 고르지 못한 바닥은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영유아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험 요인임
- 구조성능환경에 문제가 있는 주거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시킴
-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신체학대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성추행 피해 경험이 증가함

16

## •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 • 주거비 과부담과 아동 발달

- 주거비가 과중한 경우 아동발달에 필요한 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어려워짐
- 주거비는 소득 비탄력적인 지출임.
  - 한정된 예산 하에서 매월 지불해야 하는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구들은 주거비를 줄이기보다는 다른 비주거부분의 지출을 줄이는 전략을 택함
- 주거비가 높아지면 아동의 철결핍이 증가하고, 사교육비, 식료품비, 건강보험, 장난감, 의복구입이 줄어듦
- 주거비가 높은 가구의 아동은 주의집중, 친구 애착과 주관적 행복감이 감소함.
- 주거비가 높으면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모가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움.

17

## •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 • 거주 안정성과 아동 발달

- 거주 안정성은 아동과 아동 가구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침
-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함
- 이사로 전학하는 경우 학교수행이 감소하고 지역사회 위험으로부터 주민이 아동을 보호할  가능성이 낮아짐

18

## •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 • 지역사회 특성과 아동 발달

| 구분 |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 생활인프라 접근성 및 질 | 신체활동 | - 근린의 활동목적과 접근성, 심미성이 신체활동 빈도에 영향 |
| | 정서 | - 물리적으로 열악한 근린에서 더 큰 심리적 고통 |
| | 발달 전반 | - 아동의 사회성, 발달, 경험 등이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성인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침 |
| 고층, 다세대 주택이 많은 빈곤지역 | 사회적 상호작용 | - 하위문화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짐<br>-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위축<br>- 아동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감소<br>- 청소년의 학교 적응 및 또래 관계에 영향 |
| 보행환경 | 신체활동 | - 보행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동 신체활동 활발<br>-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은 아동의 야외 놀이 제한으로 운동 능력 감소, 독립적인 이동 수준에 영향 |
| | 사회성 | - 사회적 네트워크 축소로 사회성 발달 저해 |
| | 안전 | - 차가 다니는 가로에 근접한 집은 소아 부상의 위험을 높임 |
| 자연환경 | 정서 | - 아동의 인지 피로를 줄이고 회복능력과 긍정적 영향 강화<br>- 주의력을 향상시키고 만성 스트레스 요인 노출의 부정적 영향 완화<br>- 주의력과 감정적 자기 조절 능력 향상 |
| | 놀이 | - 자연 속 야외공간에서 놀이의 양과 질이 향상되며, 아동의 신체활동과 운동능력을 개발하고, ADHD아동에게도 도움을 줌<br>- 아동의 인격향상에 자연환경에서의 놀이가 긍정적 영향 |

19

[표 5] 지역사회 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

### •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 규모

(단위: 가구, 만단위, %)

| 구분 | | 국토교통부기준 | | | |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 적용 | | | |
|---|---|---|---|---|---|---|---|---|---|
| | | 전체가구 | | 아동가구 | | 전체가구 | | 아동가구 | |
| 과밀가구 | 면적 기준 미달 | 69.4 (3.3%) | 67.8 (3.2%) | 12.3 (2.3%) | 11.1 (2.1%) | 129.5 (6.2%) | 68.2 (3.3%) | 61.4 (11.5%) | 11.6 (2.2%) |
| | 방수 기준 미달 | | 4.6 (0.2%) | | 3.4 (0.6%) | | 69.5 (3.3%) | | 55.3 (10.3%) |
| 필수설비미달 | | 57.5 (2.8) | | 0.8 (0.1%) | | 57.5 (2.8%) | | 0.8 (0.1%) | |
|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 | - | | - | | 53.8 (2.6%) | | 2.9 (0.5%) | |
| 최저주거기준미달 | | 94.4 (4.5%) | | 12.7 (2.4%) | | 177.9 (8.5%) | | 63.4 (11.8%) | |

* 2021년 주거실태조사 활용, 모집단 추정 가중치 적용, 아동가구는 2021년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진 분석

20

임세희 작성

[표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규모

## •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

• 주거비 과부담 아동가구 규모

(단위: 가구, 만단위, %)

| 전체가구 | | 아동가구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317.8 | 15.2 | 31.1 | 5.8 |

* 2021년 주거실태조사 활용, 모집단 추정 가중치 적용, 아동가구는 2021년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진 분석

[표 7] 주거비 과부담 아동가구 규모

21

## •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

• 중복 주거빈곤 아동가구 규모

(단위: 가구, 만단위, %)

| 국토교통부 기준 | | | | 최저주거기준의 적극적 적용 | | | |
|---|---|---|---|---|---|---|---|
| 전체가구 | | 아동가구 | | 전체가구 | | 아동가구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30.4 | 1.5 | 2.4 | 0.5 | 43.2 | 2.1 | 6.8 | 1.3 |

* 2021년 주거실태조사 활용, 모집단 추정 가중치 적용, 아동가구는 2021년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진 분석

[표 8] 중복 주거빈곤 아동가구 규모

22

## •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

- 홈리스 아동의 규모

(단위: 1인)

| 구분 | 아동 인구 |
|---|---|
|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청소년 중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청소년 | 55,407 |
| 정부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준비청년 | 1,272 |
| 중간보호종료아동 (무단퇴소, 기타 사유) | 22 |
| 비주택 거처 아동 | 16,698 |
| 계 | 73,399 |

* 여성가족부(2022)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이용(입소)실인원(2021)'의 42.4% 적용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의 '2021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중간보호종료아동 통계는 추출
*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2%) 활용, 인구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표 9] 홈리스 아동의 규모

23

## • 아동 가구 주거 밀도

(만단위, %)

| 구분 | 예(독립사용) | | 아니오(공동사용)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아동 침실 독립사용 여부 | 385.2 | 75.6 | 124.1 | 24.4 |

| 구분 | 예 (아동청소년끼리 공동 사용) | | 아니오 (다른 연령대 공동사용)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아동 침실 아동청소년끼리 사용 여부 | 17.4 | 14.1 | 106.7 | 85.9 |

| 구분 | 빈도 | 비율 |
|---|---|---|
| 2 | 38.2 | 30.8 |
| 3 | 63.8 | 51.4 |
| 4 | 20.7 | 16.7 |
| 5 | 1.3 | 1.1 |
| 계 | 124.1 | 100.0 |

[표 10] 아동 가구 주거 밀도

24

## • 아동 가구 주거 위생

(만단위, %)

| 구분 | 예(문제 있음) | | 아니오(문제 없음)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주거 위생 상태(벌레, 곰팡이 등) | 12.4 | 2.4 | 497.0 | 97.6 |

* 2021년 주거실태조사 활용, 모집단 추정 가중치 적용, 연구진 분석

[표 11] 아동 가구 주거 위생

25

# 3. 해외 사례

## • 공공임대 주택 정책

- 영국
  - 주택법에서 최소주거기준을 설정(1985)하고 적정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 도입(2000)
  - 2006년에 주거 건강 및 안전 등급 시스템(HHSRS: Housing Health and Safety Rating Systems)을 적정주거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적용함
  - HHSRS를 도입하여 거주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소를 29개 항목(습기, 과도한 추위/열, 오염 물질, 부족한 공간, 불충분한 보안, 열악한 위생 등)으로 평가하고 불량 판정 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배 시 과태료, 임대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함
  -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은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합리적 우선권(reasonable preference)'에 따라 5개 밴드로 나누어 운영함
  -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그룹은 제1밴드인데, 살고 있는 집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자녀의 안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이주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년이 포함됨. 제2밴드에는 제1밴드보다는 양호하지만 집이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이주가 주요 대안이 되는 가구, 단칸방 거주 아동가구 등이 포함됨

최선아, 도화정 작성

26

## • 공공임대 주택 정책

- 미국
  - 오바마 정부는 2010년, '건강한 집(Healthy Home)'의 요건을 재정의함.
  - 대통령 TF의 주요 임무를 재규정함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환경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이슈 규명,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을 주요 임무로 재규정함
  - 정책 및 위원회의 우선순위 분야로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품질 개선(건강한 집)을 설정함

27

## • 아동 주거비 정책

- 영국
  - 영국의 사회보장 주거급여법은 가족 구성원 간 방 공유기준에 따라 임차료 지급을 함
  - 주거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방 공유 기준으로 16세를 넘은 아동은 성별이 다르면 다른 방을 쓰고, 2명 이상이 있는 방에서는 3번째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 미국
  - 미국의 주택정책은 1970년대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으로 변화함
  - 일단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되면 수급자는 직접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지역 공공주택청이 주택품질기준를 토대로 해당 주택을 평가한 후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또 영국의 주거급여제도 지급액 기준과 유사하게 성별이 다른 자녀가 방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음.

28

## • 아동 주거비 정책

- 프랑스
  - 프랑스의 가족 주거수당(ALF)은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함.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생활이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 임산부, 21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등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주거수당(ALS)은 노인, 장애인, 25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됨. 주택수당(ALF)과 달리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함. 임차인은 정부의 주택수당(AP)을 공제한 만큼의 임차료를 지불하면 되며, 임대인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협약(주택 수리 활용) 체결해야 함
  - 프랑스는 2008년부터 주거청구권을 도입함. 주거청구권은 국민은 주거 문제에 관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

29

## • 아동 주거비 정책

- 스웨덴
  - 스웨덴의 주거급여는 아동 가구와 18~28세 청년, 연금 수령자로 규정하고 있음.
  -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수급액이 많음
  - 한부모가구 중에서는 여성 한부모가구가 남성 한부모가구보다 수급액이 많음
- 독일
  - 독일의 주거비 보조제도는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역별 평균 임대료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급여가 지급됨
  - 이때, 아동이 있는 가구는 더 많은 주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책정하고 있음.

30

## • 지역 환경 관련 해외 법과 사업

- 독일
  - "Kinderfreundliche Kommunen" (Child-Friendly Municipalities)
    - 2012년 UNICEF Germany와 Deutsches Kinderhilfswerk(The German Children's Fund)의해 설립된 Kinderfreundliche Kommunen은 독일의 도시와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UNCRC를 로컬 단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임.
    - Kinderfreundliche Kommunen이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4개 요소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①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 ② 아동 친화적 도시 보장을 위한 법제화 ③ 아동청소년의 참여 ④ 알권리 보장임.

31

## • 지역 환경 관련 해외 법과 사업

- 스웨덴
  - 스웨덴 스톡홀름, 통합아동평가(Intregrated Child Impact Assessment)
    - 스웨덴의 스톡홀롬은 가족친화 도시로도 유명.
    - 통합아동영향평가(ICIA)를 통해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도입함
    - 통합아동평가는 도시개발프로젝트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4단계의 평가 절차를 제시함
    - 각 단계마다 도시계획에 있어 어린이의 니즈와 관련한 세가지 메인 주제와 질문을 던지는데, 각각 환경과 건강, 주택과 일상생활, 안전과 접근성으로 구성됨.

32

## • 지역 환경 관련 해외 법과 사업

- 영국
  - 복합결핍지수 (The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IMD)
    - 복합결핍지수는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사회·환경적 여건에서 생활 필수인프라에 대한 공급 여건을 복합적으로 진단하는 지수임.
    - 영국은 인구조사구 크기의 소지역단위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범죄,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영국 전체를 상대평가하며 해마다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 이 지수를 활용하여 결핍된 지역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특히 7개 부문 중 주택과 서비스 장벽 영역(barriers to housing and services)은 주택 및 지역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및 재정적 접근성을 측정함
  - 영국 국가놀이정책 PLAY ENGLAND
    - PLAY ENGLAND는 영국 놀이정책의 핵심기구로 아동 놀이 기회 및 자원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함
    - 평가는 4가지 요소에 초점: ①놀이 자원에 대한 아이들의 이용, ②놀이자원에 대한 접근성, ③놀이 자원에 대한 아이들의 경험, ④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의 질로 구분됨
    - 객관적인 공간 분석 방법을 통해 놀이환경 부족 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접근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큼

33

## • 전달 체계

- 영국
  - 영국의 홈파인더(Homefinder) 제도는 사회주택을 원하는 가구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
  - 본인이 원하는 주택의 침실 수, 지역, 휠체어 접근성 여부 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사회주택을 사진과 함께 상세 정보(임차료, 계단, 승강기, 주차장 등)를 공개함
  - 자신이 거주 중인 사회주택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 직장 등 여러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다른 사회주택 거주자와 상호교환의 가능성과 절차로 안내함
- 호주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관리제도
    - 공공임대주택 거주 희망자는 하나로 통합관리됨
    - 거주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그룹을 선정함
    - 홈리스 또는 홈리스 위험에 놓여 있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심각한 장애로 현재의 주거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greatest need로 분류함

34

## • 시설 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영국
  - 아동의 집(Children's Homes)
    -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및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의 집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돌봄의 목적, 아동의 관점, 교육, 건강 및 웰빙 등 다양한 측면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들에게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
    - 무엇보다도 아동에게 별도의 침실 있되, 이 공간은 성인과 공유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함)
    - 시설의 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의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통한 아동의 집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강조
    - 관련 법률에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 아동은 시설의 서비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

35

## •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미국
  - Continumm of Care 프로그램
    - CoC는 지역의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계획 및 실행하는 지역 사회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관임
    - CoC가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환 주택(Transitional Housing) 등이 있음

36

## •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독일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27세까지로 상정하고 자립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서비스에는 치료 서비스, 교육상담, 시설 보호, 사법 지원, 청소년 사회사업 등이 있음
    -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청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임

37

## •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일본
  -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서 출원하여 다시 사회에 돌아와 재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재범률 감소를 위해 출원생의 주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갱생보호시설'은 거주지 제공 뿐 아니라 거주지 복귀를 알선하고 생활상담, 교육 프로그램, 사회생활기능훈련 등을 운영하고 있음

38

## • 해외 사례 소결

-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
  -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주거 취약 대상으로 우선적 고려함
  - 주거와 관련 기준에서 아동과 관련된 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포함하고 있음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주거지원과 연계

- 보다 확장된 개념의 주거권
  - 지역환경 측면에서는 아동친화적 도시를 보장 하기 위한 법제화,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 및 커뮤니티 계획, 놀이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짐
  - 전달 체계 측면에서는 사회주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구 대상 사례관리팀 운영하고 있음
  - 시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측면에서는 시설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공간 및 운영 기준,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고도화, 보호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등이 이루어짐

39

# 4. 연구결과

## • 주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본법, 기본계획과 아동주거지원

- 주거기본법
- 주거종합계획
- 아동복지법
- 아동정책기본계획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임세희 작성

40

|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기본법과 기본계획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주거기본법 제 2조(주거권)에서 모든 국민의 주거권 규정하고 있음 | 주거기본법 제 16조(주거약자 지원) ① 주거약자에 장애인, 고령자만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어, 주거약자인 아동.청소년이 배제되어 개선 필요 |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고령자 · 아동.청소년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⑤ '지원대상아동'을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 경제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함 | '지원대상아동'이 되는 '기초적인 조건'을 구체화지 않음. 적절한 주거는 생존, 보호, 발달의 가장 기초라는 면에서 주거를 포함한 '기초적인 조건'을 구체화해야 함 | 아동복지법 제3조 ⑤의 '기초적인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포함 |
| |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함을 정의함 |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약함 |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의 '기본적인 여건'의 내용에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구성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2]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41

|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기본법과 기본계획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비차별의 원칙 | 주거기본법 제 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이 천명됨 | 주거기본법 제 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홈리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천명 필요 | 주거기본법 제 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0. '홈리스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 추가 |
| | 주거종합계획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이 명시됨 | 주거욕구는 같아도 혹은 주거욕구가 더 커도 자녀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함 | 아동주거지원의 대상을 자녀수가 아닌 주거욕구를 기초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 추가 |
| | 아동복지법 제 15조(보호조치)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 15조 (보호조치)①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보호대상아동 혹은 가정내 보호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 밖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고려하지 않음 국가에 outreach등 발굴 의무가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제 15조 (보호조치)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가정 밖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장 추가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2]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42

|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기본법과 기본계획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주거기본법 제 18조(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규정 | 최저주거기준미달 아동가구에 대한 최우선 지원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거기본법 제 18조(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인 경우 즉각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정책결정시 아동청원과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아동참여 제도화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 | 아동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참여위원들에게 '도시재생사업계획' 등 주거정책 참여 기회 제공 |
|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등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청소년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 참여 청소년들에게 '도시재생사업계획' 등 주거정책 참여 기회 제공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2]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43

| 4대 권리 |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권리보장 | 기본법과 기본계획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아동복지법 제 37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로 실시한다고 규정 | 아동복지법 제 37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주거가 누락됨. |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 | 주거종합계획과 아동종합기본계획에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의 조건으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제공 | 생존권이 극심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하(반지하), 비주택, 필수설비 미달 주거에 사는 아동청소년가구의 발굴 및 지원 필요 | 2024, 2025년 주거종합계획과 제 3차 아동정책종합계획에 지하(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2만9천 아동가구, 필수설비미달 8천 아동가구 총 3만7천 아동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주거 지원 계획 포함 |
| 보호권 |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13.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포함됨 | 학대피해아동의 불필요한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를 막기 위해 가족단위로 쉼터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13.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가구 쉼터로 변경<br>2025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가구 쉼터 시군구 단위로 목표 물량 설정 |
| | 아동복지법 제 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④항에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등이 포함된 학대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규정 | 학대피해 아동의 과밀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 미비 | 아동복지법 제 22조의4의 ④ 피해아동 및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 · 교육 · 상담 프로그램,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 임대료 체납 등 다양한 이유로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 미비 | 아동복지법 제 37조의 시행령의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다음을 포함<br>'폭력, 학대 및 경제적 이유로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 |
| |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에 주거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시군구 단위로 접근가능한 임시거소가 실질적으로 부족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1의 다. 주거지원 중 임시거소 목표 물량을 시군구 단위로 설정 |

[표 13]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44

| 4대 권리 |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권리보장 | 기본법과 기본계획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발달권 | 주거기본법 제19조(유도기준의 설정)에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도주거기준의 미설정 및 아동의 특성과 발달을 고려한 주거기준의 부존재 | 주거기본법 제19조(유도기준의 설정)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할 수 있다'를 추가 규정<br>2024년 주거종합계획에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주거기준 설정을 포함<br>2024년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한 아동가구용 주거욕구 사정도구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업무 매뉴얼 반영 |
| | 아동복지법 제 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신체, 정신, 영양,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만 있음<br>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이 모든 사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추가 필요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②에 '5. 건강한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 추가 |
|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을 규정함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필요한 여건이 무엇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음.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③에 '필요한 여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포함 |
| 참여권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서 아동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 규정 | 안전과 주거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주거 위험이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등에 아동주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6.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주거 등 기타 교육 추가 |
| | 제 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 권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을 참여 및 의견 수렴 의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 의무 규정 있음 | 청소년의 의사를 밝힐 권리,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있어 이사 등의 주거생활과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의사를 밝힐 권리인지 명확하지 않음 |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청소년기본법 제 5조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청소년관련정책'에 주거 및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정책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 포함 |

45

[표 13]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기본법, 기본계획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 기본법, 기본계획 소결

- 극빈주거빈곤아동 우선 지원
  - 2024년 주거종합계획과 제 3차 아동정책종합계획에 지하(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2만9천 아동가구, 필수설비미달 8천 아동가구 총 3만7천 아동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주거 지원 계획 포함
  -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2023년 새롭게 포함된 학대피해아동쉼터 목표물량을 아동 개인 뿐만 아니라 가구단위의 쉼터도 포함하여 시군구 단위로 2025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설정
  -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가구들에게 제공하는 가구단위 긴급주거 물량을 시군구 단위로 2025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공표

-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기초(기본) 주거 여건' 구체화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준비 시작
  -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업무매뉴얼에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아동가구용 주거욕구 사정도구 배포 계획 포함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5항의 지원대상아동의 기준이 되는 '기초적인 조건' 에 주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5. 청소년복지의 '기본적인 여건'과 제 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필요한 여건'을 주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46

# • 공공임대주택정책

- 공공주택 특별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 공공임대주택 사업
- 긴급주거지원
-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영국의 적정주거기준

.

강미나 작성

47

- 공공임대주택 정책 연구목적과 근거법
  - (목적)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동 주거관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이 보장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과제 도출
  - (근거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2) 와 (제3조 3)
    - 아동가구 우선· 특별공급 입주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아동복지법」 제16조

| | | 가구수 | 비율 | 독립적으로 방 사용*여부 | 비율 |
|---|---|---|---|---|---|
| 전체 가구수 | | 20,926,710 | | - | |
| 전체 아동가구 | | 5,093,600 | | 3,852,491 | |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 | | 182,799 | 3.6%** (100.0%) | 105,132 | 60.6%*** (100.0%) |
| 아동의 연령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영유아 아동 (6세 이하) | 57,777 | (31.6%) | 14,362 | (13.7%) |
| | 초등학교(7~12세) | 69,854 | (38.2%) | 50,172 | (47.7%) |
| | 중등(13~15세) | 35,842 | (19.6%) | 26,761 | (25.5%) |
| | 고등(16~18세)) | 19,325 | (10.6%) | 13,837 | (13.2%) |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규모는 41.0~85.7만 가구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수는 부족

⇒ 아동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주거종합계획 등에 아동주거지원 목표 명시 필요

[표 14]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 규모 및 비율

48

(단위: 가구수, %, 명)

| | 전체 | 영구 | 국민 | 행복 | 장기전세 | 기존주택 매입.전세 | 기타 |
|---|---|---|---|---|---|---|---|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수 | 182,799 | 13,928 | 103,721 | 12,331 | 17,894 | 33,374 | 1552 |
| | 100.0% | 7.6% | 56.7% | 6.7% | 9.8% | 18.3% | 0.8% |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 평균 아동수 | 1.53 | 1.63 | 1.58 | 1.08 | 1.71 | 1.40 | 1.00 |

자료: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연구진 작성

[표 1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 아동가구 규모 및 비율

## •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

(1) 주거의 질 개선 효과

(2) 아동 건강 개선 효과

(3) 아동가구 관계 개선 및 학습 집중 효과

(4) 행복감 증대 효과

49

|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원칙 준수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를 안정적, 건강,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 입주기준이 저소득 무주택가구 기준이 우선적용됨에 따라 아동의 필요욕구가 우선되고 있지 못함<br>공공임대주택의 절대수가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확대 공급이 필요<br>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생존을 보장하지만 보호나 발달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기준임 | 적정주거기준(가칭)을 제정하여 아동가구의 건강, 보호, 발달을 보장 함<br>주거종합계획 등에 아동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목표를 설정함 |
| 비차별의 원칙 |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차별요소가 없음 | 공공임대 거주 아동이 '영구'라고 불리는 등 낙인, 왕따, 놀림 현상<br>민간 분양아파트와 외견상에서도 구분이 되어서 임대주택단지라는 차별적인 요소가 있음(옥외주차장, 창문이 없는 외관 등)<br>민간분양아파트 단지와 담으로 경계를 나누고 학교를 돌아가야 하는 현상 | 분양아파트와 외관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적인 요소 반영<br>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홍보, 거주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저소득 아동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로 아동이 우선 고려되기 시작<br>기존 주거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아동의 학교, 통학, 친구관계 등이 고려되기 시작 | 주거빈곤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책 시행시 아동의 권리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이 우선됨에 따라 이주를 강제할 수 없음(예: 쪽방에 거주하는 엄마가 이주를 거부함에 따라 아동이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음) | 아동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가구는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함<br>적정기준에 부합하는 주거수준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 | 주거는 신청-계약-입주-퇴거 등의 일련의 과정과 목돈이 소요되므로 공급자와 보호자(후견인) 등의 의견이 주로 반영됨 | 자립준비 청소년이 입주시 보증금 지원 혹은 저리 융자 지원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및 시행 |

자료:연구진 작성

50

[표 16]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4대 권리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아동 권리 보장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를 안정적, 건강, 안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 | 입주기준이 저소득 무주택가구 기준이 우선적용됨에 따라 아동의 필요욕구가 우선되고 있지 못함<br>공공임대주택의 절대수가 주거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확대 공급이 필요<br>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생존을 보장하지만 보호나 발달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기준임 | 적정주거기준(가칭)을 제정하여 아동가구의 건강, 보호, 발달을 보장<br>주거종합계획 등에 아동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 |
| 보호권 | 공공임대주택은 일차적으로 주거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 | 가구내에서 행해지는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br>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근거, 인력과 예산 등이 마련 필요 |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지원을 받은 아동가구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br>책임을 시행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조치(보호자 설득 등) 마련 검토 |
| 발달권 | 아동이 더 나은 주택으로 이주하여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내 방을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족내 관계와 또래 관계 개선, 학습의욕과 능력 고취 등 발달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 |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협소하여 아동이 충분한 여가, 학습, 놀이, 휴식의 공간으로 부족<br>아동의 연령, 체격, 장애 등의 요소 반영 필요<br>주택외부의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 개선을 통하여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적정주거기준(가칭)을 제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주거수준에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br>아동의 연령, 체격, 장애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지원 |
| 참여권 | 아동이 주거안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학업과 활용에 임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br>아동의 학교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생김<br>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과 입주에서 아동의 참여보다는 상대적으로 여건과 보호자의 의견이 더 크게 작용 |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가구에 대한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이에 따른 준수의 책무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충분함 | 아동의 주거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중앙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

[표 17]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51

## • 공공임대주택 정책 소결

- 아동가구 지원 목표설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단기)
  - 주거지원 필요 아동가구가 정책의 테두리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목표를 주거종합계획에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
  - 입주기준에 아동가구의 특성 반영
  -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 적극적인 홍보
- 정책지원 수혜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단기)
  - 공공임대주택 아동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아동가구에 대한 대폭적인 실태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하여 리스트업 하고 전달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지원

52

## • 공공임대주택 정책 소결

- 최저주거기준 개선 (중장기)
  - 현행의 최저주거기준을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개선
  - 아동의 연령, 체격, 장애 등을 반영한 주택규모와 시설 요소 등을 반영
  -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우선 개보수 지원
- 기타 제도 개선 (중장기)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고
  - 왕따와 사회적 낙인 문제 해소
  -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

53

## • 주거비지원정책

- 주거급여
- 에너지바우처
- 전월세대출

조영민 작성

54

| 4대기본원칙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주거비지원 정책은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통해 아동의 삶과 발달에 필수적인 건강, 교육, 영양, 여가 등과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여지가 있음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를 충족해야 하므로, 아동가구중 비수급 빈곤가구나 더 광범위한 주거비과부담 가구는 배제됨 | 아동가구는 주거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을 60%로 상향하고, 근로가구의 경우 80~100%까지 상향해야 함.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 | | 현행 주거비지원제도는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아동의 보호와 발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
| | | 주거급여나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지원대상과 금액에서 아동의 수, 가구형태(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하지 못함 | 아동가구에게는 아동수에 따라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함. |
| 비차별의 원칙 | 현행 주거비지원제도에서 아동가구에 대한 직접적 제도적 차별은 존재하지는 않음 | 위험성이 높지는 않지만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특성상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아동들도 낙인감을 가질 수 있음 | 주거급여의 수급자라는 낙인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정보보호와 사생활 보안의 강화가 필요함 |

[표 18]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주거비 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55

| 4대기본원칙 | 주거비 지원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만 고려하므로 아동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부족함 | 주택이나 주거지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는 것은 아님. 주거지원이라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동의 이익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이익 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함 | 주거품질 기준을 연계(예: 아동의 독립적 공간이나 최소 면적)하여 주거비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함(충족시 인센티브 등). |
| | 에너지바우처는 만6세 미만 아동과 한부모가족을 세대특성기준에 포함하고, 전월세대출제도는 다자녀 가구에게 소득기준완화, 대출한도상향, 추가우대금리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함 | | 아동가구에 대해 기준중위소득과 아동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별도의 추가 급여를 제공해야 함.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주거비지원정책에서는 아동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나 장치가 없음 | 현재 주거비지원제도는 신청자(보호자)와 행정담당자의 의견만 반영됨. | 주거비지원제도의 신청과 주택조사 등의 과정에서 아동의견 청취 절차마련 |
| | | 아동(특히, 중고등학생)에게 주거권과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의견청취의 장이 제공되어야 함 | 주거권에 관한 주요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

[표 18]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주거비 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56

| 4대 권리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권리보장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주거비지원정책은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비를 경감하여 교육 건강이나 영양, 보건 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주거비지원이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더 나은 주택이나 지역; 다른 필수 서비스 구입)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는 한계가 있음 |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생존조건을 보장 |
| | | 현행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7%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진 아동가구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현재의 주거비지원 수준이나 금액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증진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가구에 대해 주거급여의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급여를 지급 |
| 보호권 | 주거비지원제도는 더 나은 여건의 주택에 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주거빈곤가구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학대나 방임, 폭력 등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음. | 주거비지원에 선정된 이후에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 있음 | 주거비지원제도의 아동보호 수준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 |
| | | 지역 사회내의 아동보호 관련 시설, 기관, 민관조직 간의 협업 강화 필요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포함한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 협업을 통해 아동보호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 자원연계 기능 보완 |

[표 19]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주거비 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57

| 4대 권리 | 주거비 지원정책의 권리보장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발달권 | 주거비지원을 통해 더 나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발달을 위한 놀이와 휴식 여건이 개선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 증진들 통해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최소한의 주거 및 주택품질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아동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나 환경이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거비지원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필요 |
| | | 주거비지원 선정 과정에서 아동의 수와 연령, 성별, 장애 등의 특성이이 고려되지 않음 | 아동의 수, 연령, 성별, 장애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지원 |
| 참여권 | 주거비지원으로 아동의 학교 근처에 적절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아동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생김 | 현재는 주거비지원 제도의 대상 선정과 지원과정, 주거지역와 주택의 선택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나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여건임. 정책담당자와 심사자, 그리고 보호자의 의견과 선택이 우선이며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객관적인 주택품질기준 충족의 여부와 함께 아동의 현재의 주거상황한 인식과 만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 | 하지만 주택의 위치나 입지, 품질 등의 선택에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제는 충분하지 않음 | | |

[표 19]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주거비 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58

## • 주거비 지원 정책 소결

### • 급여대상과 급여액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현행 47%를 아동가구에게 60% 수준으로 상향하고 근로연령가구(맞벌이 등)는 80~100%수준으로 올려야 함.
- 현행 주거급여 기준임차료는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의 75% 수준이므로 아동가구에게는 10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함. 특히, 한부모가구 등 주거와 돌봄 등 복지욕구가 높은 집단에는 추가급여 지급이 필요함.
-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소득기준을 위의 주거급여 목표수준(아동가구 60%, 근로연령가구80~100%)로 높이고, 아동가구에게는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함. 세대원특성에서 영유아 기준을 완화하여 아동수당 연령인 만8세로 상향해야 함.

### • 상담 및 정보제공 강화, 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최저주거기준 내용, 의미, 중요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임차가구 중에서 최소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지역의 주거복지 담당자들(주민센터 공무원, 마이홈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담당자 등)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통합·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함.
- 지자체 단위별로 주거급여나 에너지바우처의 수급율이 낮은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수급율을 올려야 함 (복지부 정보망과 LH 데이터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

59

### •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조사 및 자료체계 개선

- 주거급여의 주택조사 내용과 형식,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재 주택조사의 조사표 내용은 추상적인 측면(유무를 확인하며 기능이나 작동여부 확인 부족)이 있음. 주택조사의 항목과 내용 개선을 위한 전문적 연구와 자문 필요함.
  - 주택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및 내부/외부 연구활성화가 필요함. 주거급여 대상자의 특성과 진입, 유지, 탈퇴, 재진입 등의 종단적인 변화와 패턴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요구됨. 이러한 요인 및 패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상향이동을 돕는 단계별 세부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의 예산과 수급세대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연구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아동의 수, 연령 등)과 바우처 신청 및 승인, 사용, 개선사항, 냉난방비 지출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이 시급함.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 대한 조사와 통계치 생산은 가구특성별 제도 개선(주거빈곤 아동가구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 전월세대출지원 가구의 주거최저기준 충족 여부, 주거상향이동의 장애 및 촉진 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제도 수혜 가구들의 현황 파악과 세대별 특성(아동가구 여부 등)에 따른 정책 세밀화를 위해 필요함.

60

## • 지역사회환경 정책

- 기반시설 및 주거지 생활인프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역사회 돌봄시설: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보호법

강현미 작성

61

| 4대기본원칙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정책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낙후된 주거지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거수준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절차를 규정 | 지역에 필요한 아동 공공시설을 사전에 진단하여 공공기여에 반영하도록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진행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한 「국토계획법」 제3조의2의 내용을 개정하여 아동 관점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도시정비사업 등에 반영하도록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제시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 주민참여 과정에서 아동을 위한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2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중 아동 관련 시설 항목 및 기준을 정비하고(놀이터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아동을 고려한 연령통합시설을 조성하도록 원칙 제시 |
| | 도시계획시설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며, 주택단지 조성시 복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기준 개정 |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유형으로 실내놀이터를 포함하고,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기여하도록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br><br>주택건설기준규정 제 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br>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아동청소년실내놀이터 1개소 이상 포함), 어린이집<br>4.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단지 경계에서 도보 5분 내 접근 가능한 공공놀이터를 설치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 | 놀이터를 포함하는 공원 설치 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안전 고려를 포괄적으로 제시 | 놀이터 및 주변 공간의 안전 확충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도록 개정 |
| | 공동주택, 학교, 도시공원 등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놀이터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통해 시설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 |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법령이 설치장소별로 분산되고 놀이 가치를 고려한 장소계획기준이 부재하여 개선 필요 | '어린이놀이터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놀 권리를 보장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민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등을 통해 체육시설 설치 원칙을 명시하고 체육시설 사업계획 방향 제시 | 아동·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학교·공공업무시설의 시설복합화사업 또는 기조성 체육시설의 개방 활용 활성화 |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 체육시설 확충 유도 (학교시설복합화사업 활용)<br>공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제도적 근거 확충 |

62

[표 20]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4대기본원칙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정책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비차별의 원칙 |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고유 법령이 없이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만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거유형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입지에 차이 발생 | 주거지 유형, 공동주택 규모 등 설치 장소에 관계 없이 아동이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놀이터를 누리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기준 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150세대 이하의 단지를 조성할 경우 부지 내에 놀이터를 조성하거나 인근 부지에 놀이터를 조성·개선하기 위한 재정을 분담해야 ㅐ 한다" |
| | (장애인차별금지법 36조) 국가는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함을 규정 | 아동의 놀 권리 중 장애 아동의 놀이터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부족하므로, 장애아동을 접근과 이용을 고려하여 놀이기구의 시설 기준 정비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터(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마련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놀이터 설치 및 관리) 놀이터 관련 법령은 아동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아동의 안전과 더불어 놀이 가치를 고려하도록 경직된 시설 기준을 개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놀이가치 및 위험감수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를 도입하도록 법률 개정 |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유연히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아파트 놀이터의 용도 변경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아동 권리 관점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놀이터 등 아동전용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해 아동 가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규정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며, 놀이터 등 아동공간의 계획에 있어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조례를 수립하여 운영함 | 도시환경 관련 사업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 | 도시환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동 및 아동보호자의 참여를 확대하도 록 공청회 절차 및 방식 개선 |
| |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아동 주거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고려 | 대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아동영향평가(가칭)'를 도입하고 사업 계획의 각 단계에서 아동과 아동보호자의 참여를 확대 |

[표 20]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63

| 4대 권리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권리보장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도시계획시설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 기존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이 정한 지자체 단위보다 더 세밀한 공간 단위에서 생활인프라 공급 수준과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 지수를 활용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내에 생활인프라 공급 적정성에 대해 아동의 관점을 특화한 지수를 도입<br><br>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중 아동 이용 시설을 특화하여 기준 개선 및 이를 적용한 공간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 |
| 보호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 시설 안전을 중점적으로 규정<br>「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 및 유희시설의 인증 및 배치 기준을 규정<br>「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에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거리 두고 설치'를 규정<br>현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시설을 규정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확충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및 장소에 '아동복지시설'을 포함 |

[표 21]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64

| 4대 권리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권리보장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발달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조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규모와 유치거리를 제시<br>「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놀이 시설 안전을 중점적으로 규정<br>놀이터 관련 법령이 부재하는 대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창의적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 | 놀이터에 대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여 놀이터를 통한 아동의 발달과 놀 권리, 참여 권리 보장<br>기존의 시설 안전 중심에서 통합적 안전 및 놀이 가치로 관점을 전환하도록 어린이놀이터 관련 제도 개선 | 「어린이 놀이터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세부 기준 마련<br>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기여를 규정 (4.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단지 경계에서 도보 5분 내 접근 가능한 공공놀이터를 설치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br>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실내놀이터를 추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 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br>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아동청소년실내놀이터 1개소 이상 포함), 어린이집)<br>「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놀이가치 및 위험감수의 측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를 도입하도록 법령 개정<br>공공시설 내 체육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위한 기준 및 지원사항 제도화 |
| 참여권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사업을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기도 함<br>현재 지자체 조례 중 일부는 어린이의 놀 권리와 놀이터 공간 계획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도시계획 및 관리 절차 가운데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확대 | '도시·군 기본계획' 내 생활권계획을 법제화하고 아동을 포함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br>어린이 놀이터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아동의 발달과 놀 권리, 참여 권리를 보장<br>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아동 가구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내용 개선 |

[표 21]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지역사회 환경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65

# • 지역사회 환경 정책 소결

## •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인프라 공급 확충

- 아동 생활인프라 부족 수준이 심각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복합화사업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주민공동시설의 조성 의무 기준과 조성 대상 시설의 종류에 관한 조항을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포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2(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의 아동 이용 기초생활인프라 기준 보완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공공기여를 통해 아동 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준 및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활용 및 유지관리 보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5조(행위 허가 등의 기준)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어린이 놀이터의 용도변경에 관한 행위 허가 및 신고 기준을 강화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및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체육시설 개방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방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충
-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아동이 이용하는 생활인프라 주변

66

# • 지역사회 환경 정책 소결

- 생활인프라 접근성 취약 지역의 체계적 진단
  - 지역사회의 생활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아동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분석도구 개발 및 보급
  -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아동 관점의 생활인프라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제공
  -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내에 아동을 위한 생활인프라 접근성 현황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구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제1항 2.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 에 '아동친화도'를 포함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별표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별표2(평가자료의 수집 및 구축)에 아동 관련 생활인프라 항목을 포함

- 아동 발달을 고려한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 개선
  - 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를 도입하여 놀이가치 및 위험감수의 측면을 평가하여 놀이시설 질적 수준 제고
  - 장애아동 놀이터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마련 추가
  - 「어린이놀이터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 및 아동 참여에 관한 사항 포함

- 도시개발사업의 아동영향평가체계 마련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사업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체계 도입

67

# • 전달체계

## • 주거복지전달체계 관련 법령과 기본 계획

| 세부사업 | | 내용 |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주거복지성과평가 개편 |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누수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성과평가 개편 |
| | 대기자 통합시스템 | 대기자 통합시스템 기본모델과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한 대기자 통합 TF 구성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 | AI+ 주거복지서비스 | AI + IoT를 활용하여 입주민의 건강·일상을 상시 관리하고, 응급상황시에는 선제적 돌봄·의료 서비스제공 |

[표 2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편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점 사업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사업 안에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과 묶여 사업이 구성되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달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종합계획수립의 의지를 읽어 내기 다소 어려움

송아영 작성

68

## •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와 아동 주거권

| | 요건 | 확인질문 | 평가 |
|---|---|---|---|
| 구성원칙 | 적절성 | 아동 주거욕구 해결을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의 주거서비스와 자원이 공급되고 있는가? | 부족 |
| | 전문성 | 아동 주거욕구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를 담당하는 적절한 전문가가 있는가? | 부족 |
| | 접근용이성 | 아동 주거욕구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는가? 서비스와 정책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가? | 부족 |
| | 포괄성 | 아동의 주거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는가? | 보통 |
| | 통합성 | 아동의 주거욕구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공급자들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 | 보통<br>(네트워크는 활성화되었으나 자원이 부족) |
| 운영원칙 | 지속성 | 아동 주거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충분하게 일정기간 서비스와 자원이 제공되는가? | 보통 |
| | 책임성 | 사회복지 조직은 아동의 주거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자원을 전달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 보통<br>(공공 영역 부족) |
| | 평등성 | 아동의 성별, 소득, 종교, 지역, 인종에 관계없이 평등한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저연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동의 주거욕구가 타 연령 집단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가? | 부족 |
| | 효과성 | 아동 주거욕구와 관련하여 정량, 정상적인 주거서비스 전달 목표가 달성되는가? | 현 상황에서 평가 적절하지 않음 |
| | 효율성 | 아동 주거욕구 해소와 관련하여 그 투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유리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가? | 현 상황에서 평가 적절하지 않음 |

[표 23]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성요소와 아동 주거권

69

| UN 아동권리협약 4대기본원칙 | 의미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정책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주거와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br>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및 비주택 거주 아동가구 주거상향 사업 | 생존권 보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주거권<br>아동 생존과 발달을 돕는 주거자원 부족<br>공급자중심 전달체계의 개선 | 최저주거기준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적극 지원<br>정보 누락 및 지원 탈락 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례발굴과 기관 연계 |
| 비차별의 원칙 | 성별, 소득, 장애, 출생순위, 지역, 언어, 보호자 유무 등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및 비주택 거주 아동가구 주거상향 사업<br>민간의 소수 아동(장애인, 다문화 가구 아동 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 주거형태 및 주거유형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차별<br>아동가구 전세임대 물색 과정 중 겪는 차별<br>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주거자원 | 전세임대관련 중개인 및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 강화<br>아동 주거욕구 발굴 및 사정에 있어 소수 아동가구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 필요<br>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 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 노력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 공급 체계 개선<br>아동 가구 주거욕구 사정 시 아동의 교육 및 주거 환경 등 별도 고려 | 주거정책에 있어 아동은 최우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br>아동가구 발굴 및 주거욕구 사정에 참여하는 조직과 전문가의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br>주거물색 및 주거상향에 있어 보호자 중심의 결정 과정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도구 개발(지원대상 선정 도구)<br>아동 주거 욕구에 대한 전문적 사정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 실무자 교육 및 역량강화 필요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참여를 돕고,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한다. |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아동가구 주거지원 시 아동욕구 사정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음<br>거주지 이전 과정에 있어 양육자의 의견 중심의 결정 과정 | 아동가구 주거지원 시 아동 의견 청취 및 반영<br>아동가구 주거지원 전문가의 옹호 및 설득 능력 향상을 통해 아동 최우선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4]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70

| 4대 권리 | 의미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권리보장 | 지역사회환경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 충분한 영양 섭취,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 | 아동 주거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br>최저주거기준 및 비주택 아동가구 주거상향 지원 | 주거 및 아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부족<br>주거 탐색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밀착 주거지원 필요 | 시군구, 읍면동 사례관리사에 대한 주거복지 보수교육 강화, 변화하는 주거복지정책 실시간 공유확대<br>주거 탐색이 어려운 아동가구(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주거탐색 지원<br>과밀가구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주 지원 |
| 보호권 | 차별, 학대와 방임, 체벌과 폭력, 약물, 위해 환경, 고문,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 공급 시 방 수 고려<br>일부 지자체에서 학대 및 폭력 피해 아동가구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임시주택 운영 | 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절대적 부족 | 학대피해가구에 대한 주거공급 및 안전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권 보장(긴급 주거 확대) |
| 발달권 | 아동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이 교육 받고, 놀며 휴식하고, 부모(보호자)·교사·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이사 비용 일주 지원하고 있음<br>아동가구 이주를 위한 사정 및 개입 시 아동의 학교 및 교우관계 등을 고려 | 이사 관련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필요한 지출 감소 및 중단 예방을 위한 아동가구 주거비 지원 체계의 전체적인 개선 | 아동가구 이주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지 이동을 적극 권장<br>아동가구 이주 시 아동이 발달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급격한 환경변화 등을 지양하도록 원칙 설정 |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을 부모(보호자)로부터 존중받고,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정책 등 아동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아동 권리 교육에 참여할 기회 |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 시 아동 참여 미비<br>아동 주거욕구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아동관련 지식이 풍부한 인력의 부족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 시 아동 별도 사정을 통한 아동 참여권 증대 |

[표 25]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71

- 전달체계 소결
  - 아동 및 아동가구의 주거상향 적극 지원 전달체계 구축
    -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시군구, 읍면동 사례관리자 보수 교육 및 정보 공유
    - 주거탐색이 어려운 아동가구 주거탐색 지원
    - 과밀가구에 대한 적극적 개입
    - 학대피해 아동가구 지원 강화
    - 아동가구 이사 부대비용 지원
    - 아동가구 이사시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하는 원칙 설정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 체계 구축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도구 개발
    -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시 아동 참여권 증대
  - 농어촌 지역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72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아동정책기본계획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김희주 작성

73

| 4대기본원칙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 및 양육 지원을 명시함. 또한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필요한 주거의 지원을 명시함 | 원가적 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에 유사한' 주거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설에서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함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보호대상 아동을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부족함 없는" 또는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 받는다 |
| | 청소년복지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함 | 가정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주거지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이 전제되어야 하고,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인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문구 추가 |
| 비차별의 원칙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은 가정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 강화, 경제 및 주거지원 확대, 자립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 등의 과제를 수립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함 | 지원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리의 가정 밖 청소년 등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의 확대를 위해 홈리스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 |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중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서는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 소관부처(청소년 쉼터(여가부), 자립생활관(법무부))가 지원대상으로 추천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가구를 지원함 | 정책의 지원 내용 및 범위는 시설 소관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어, 아동이 거주한 시설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받을 소지가 있음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간 차별과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자립지원청년의 자립 및 지원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 |
| | | | 6호 처분 퇴소자 중 만 24세 미만 무의탁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조건 부여 |
| | | |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혹은 청소년쉼터 퇴소자와 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실시 |

[표 26]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74

| 4대기본원칙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긍정적 영향/원칙 준수**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 |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 지원을 확대하거나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하여 '가정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함<br>또한 가정 외 보호아동은 원가정 복귀나 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아동복지 사업에서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해야 할 경우 ① 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형이나 가정형 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양육시설을 가정환경과 유사한 소규모 시설로 전환, ② 원가정 복귀나 시설 외의 다른 방안(예: 지자체가 아동의 특별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조력하는 방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유사 그룹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계약자는 기관이 하는 방식의 지원주택)들을 마련 |
| |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규정이 없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에 있어서 청소 년의 최상의 이익을 통한 보호, 주거 및 자립지원의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의 가정형 보호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지원 필요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킴<br>독립생활이 가능한 최소 연령 기준(예를 들면 16세 이상)을 도입하여, 가정 밖 청소년 중 원가정 복귀나 쉼터 입소가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없는 경우 대안적 주거를 제공함 |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보호조치)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 보호자와는 달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는 명시하지 않아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br>보호아동의 나이에 따라 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방법, 상담 등에서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필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보호조치)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3(자립지원)에서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할 때 자립에 필요한 지원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쉼터 계속 이용과 관련된 조항 외에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및 지원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3(자립지원)에서 청소년이 쉼터를 퇴소할 때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선택에 반영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 | 자립준비청년 자립 및 주거지원 정책들은 지원 원칙에 있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다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퇴소 시기, 자립과 주거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들이 소관부처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립준비청년들이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퇴소하기 전 의무적으로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주거지 제공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이들에게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제공 |

75

[표 26]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4대 권리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권리보장**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생존권 | 보호자의 온전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및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제52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만 명시하고 있고, 제1항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기능만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보호자의 온전한 양육을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및 양육을 지원받는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에 가까운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
| |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시적이지만 보호대상 및 가정 밖 아동의 주거의 대안이 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보 호, 자립 외에도 가정 환경과 유사한 시설환경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31조)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이 일시적이라도 대안적인 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 보호, 자립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가정환경에 가까운'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31조)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이 일시적이지만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가정에 가까운 환경의' 주거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규정에 포함 |
| 보호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5호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와 함께 이들의 대한 지원 내용을 제16조에 규정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주거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대피해 청소년의 기초적인 생활조건 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학대 피해 청소년의 기초적 인 생활조건 지원에 대한 규정 강화 필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주거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동법 제32조의 2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쉼터에 입소하였거나 쉼터 안의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아동 의사와 관계 없이 퇴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2항에서 다른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용어보다 좀 더 강력하고 의무적인 문구로 수정 필요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 2(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계속 이용) 제 2항에서 청소년쉼터를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76

[표 27]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4대 권리 | 가정 밖 아동청소년주거지원 정책의 **권리보장**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개선사항** | 제도개선(안) |
|---|---|---|---|
| 발달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의 입지조건 및 구조 및 조건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 수용인원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유형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대규모 시설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복지시설의 가정형 거주공간으로 개정(1인1실 지원 등)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입지조건 및 설비기준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공간의 면적이나 설비개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 공간의 면적이나, 입소 아동 수에 대비한 설비의 개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침실과 거실, 화장실 등 각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정원 등을 전면개정함 |
| |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종료 준비와 자립을 통한 청년의 건강한 발달을 제시함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정책들은 상한 소득의 제한을 두고 있고,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주거와 자립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주거지원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기간이 청년이 자립을 확보할 때까지 충분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호종료 후 자립과 주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자립지원이나 주거유지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함 |
| | |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청소년쉼터(여성가족부)나 소년원/자립생활관(법무부) 퇴소자들을 위한 자립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 마련 및 강화가 필요함 | 소년원 퇴소자 중 무의탁 퇴소자들에게 퇴소전 이용가능한 자립생활관, 주거복지 안내 등 자립지원 체계 마련 |
| | | | 청소년쉼터 퇴소자가 자립지원체계 이용 가능하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 및 지원 강화 |
| | | 자립준비청년 대상 대출지원과 관련해서 저신용 햇살론 유스에 자립준비청년이 포함되지 않음 | 저신용 청년대상 햇살론 유스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 포함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연령 조건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
| 참여권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 규정하고 있음 |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근거하여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2권 자립지원 영역에서 진로선택과 주거지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 및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시설 유형 및 소관 부처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부처의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립지원 업무지침 개발 |
| |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지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종료 준비와 자립을 통한 청년의 건강한 발달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이 이용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도움과 만족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지원 체계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의 모니터링 및 정책 만족도 조사 등을 도입하여 정책의 효과성 평가 |

77

[표 27] UN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측면에서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과제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소결

-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개선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복지시설의 가정형 거주공간으로 개정 (1인1실 지원 등)
  - 청소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침실과 거실, 화장실 등 각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정원 등 규정

- 자립준비청년의 체계적인 보호종료 준비와 자립 및 주거지원 전달체계 일원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저신용 대출지원(예: 햇살론 유스) 확대 및 연령 조건 만18세 이상으로 조정
  -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과 주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예, 희망복지지원단 등)와 연계 지원체계 기존 보다 더 강화
  - 청소년쉼터(여성가족부), 소년원/자립생활관(법무부)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 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확대
  - 소관부처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청년 자립 및 주거지원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

78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소결

## • 가정 밖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체계 강화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서 시설에서 "부족함 없는" 또는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 문구 포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2항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 지원'에 대한 문구 추가
- '가정형 보호' 지원 확대와 소규모화된 아동양육시설로 전환
- 원가정 복귀나 시설 외의 다른 방안 모색(예: 지자체가 아동의 특별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조력하는 방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유사 그룹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계약자는 기관이 하는 방식의 지원주택)

79

# • 당사자와 종사자가 경험하는 아동주거지원정책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험

-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 5명과 보호자 1명, 자립준비청년 9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FGI 진행

| 참여자 ID | 연령 | 성별 | 학력 | 거주 지역 | 동거 가족 | 주거 유형 | 아동 유형 |
|---|---|---|---|---|---|---|---|
| A | 16 | 여 | 고1 | 서울 | 모, 동생 1명 | 매입임대 | 주거 빈곤 아동 |
| B | 18 | 남 | 고3 | 서울 | 모, 형 2명 | 영구임대 | |
| C | 16 | 남 | 고1 | 서울 | 할머니 | 영구임대 | |
| D | 17 | 여 | 고2 | 서울 | 모 | 매입임대 | |
| E | 15 | 남 | 중3 | 경기도 | 부모님, 형제 5명 | 매입임대 | |
| F | 23 | 여 | 고졸 | 경기도 | 없음 | 청소년자립 생활관 | 소년보호체계 자립준비청년 |
| G | 21 | 여 | 고졸 | 경기도 | 없음 | 고시원 | |
| H | 22 | 남 | 대3 | 경기도 | 없음 | 전세임대 | 청소년 쉼터 자립준비청년 |
| I | 23 | 남 | 고졸 | 서울 | 없음 | 청년전세임대 |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 |
| J | 23 | 남 | 고졸 | 서울 | 아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 |
| K | 23 | 남 | 고졸 | 서울 | 없음 | 전세임대 | |
| L | 25 | 남 | 고졸 | 서울 | 없음 | 매입임대 | 그룹홈 퇴소 자립준비청년 |
| M | | 여 | 대졸 | 서울 | 없음 | 청년전세임대 | 가정위탁 출신 자립준비청년 |
| N( | 29 | 여 | 대졸 | 서울 | 없음 | 매입임대 | |
| O | 40 | 여 | 고졸 | 전북 | 남편, 자녀 2명(9살 6살) | 전세임대 | 주거빈곤 아동 보호자 |

김희주 작성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험 연구결과

| 대주제 | 중주제 | 소주제 |
|---|---|---|
| 주거의 구조적 기능과 아동의 삶 |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함 | 좁고 낡은 공간에서 머물러 삶 |
| | | 주거 변화가 주는 삶의 긍정적 변화 |
| | '집'이 될 수 없는 시설 | 사생활과 자유로운 일상이 제약되는 삶 |
| | | 나만의 공간이 있는 살고 싶은 '내 집 ' 을 원함 |
| | 주거에 대한 미래는 '흐림' | 영원하지 않는 집에 대한 불안감 |
| | | 조심히 그려보는 미래의 집 |
| 아동권리보장의 일반원칙과 주거 경험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내 집'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움 |
| | | 내가 살 집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중요함 |
| | 비차별의 원칙 | 시설아동 또는 아동 가족 대한 차별 |
| | | LH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 |
| | 아동 최상의 원칙 |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 어려움 |
| | | 아동의 이익을 위한 지원 체계 |
| | 생명과 발달의 원칙 | 노숙 위기에서 구한 주거 |
| | | 시각 장애 부모와 아동을 위한 분리된 공간 필요 |

## • 가정 밖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경험 연구결과

| 대주제 | 중주제 | 소주제 |
|---|---|---|
| 아동권리보장의 4대 권리와 주거 경험 | 주거와 아동의 생존권 | 아동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침 |
| | |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노숙을 경험함 |
| | 주거와 아동의 보호권 | 가정폭력의 피해 속에서도 보호 받기가 어려움 |
| | 주거와 아동의 발달권 |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저해함 |
| | | 주거의 열악함 만큼 교우 관계도 열악해 짐 |
| | | 또래와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됨 |
| | | 자주적인 발달이 어려운 시설환경 |
| | 주거와 아동의 참여권 | 집에 대한 아동의 의견 존중 |
| | | 주거 획득을 위한 제한된 정보제공 |
| 아동 및 청년의 주거권 보장 |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 권리임 |
| | | 청년의 첫 시작을 위한 기본적 권리임 |
| |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까지 지원이 필요함 |
| | | 임대가 아닌 자가가 가능한 주거지원 정책 |
| | |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
| | |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정책 |
| | | 주변환경도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 |

## • 당사자와 종사자가 경험하는 아동주거지원정책

### • 아동주거지원 현장 실무자 FGI 참여자 역할 및 특성

| 기관 | 역할 및 특성 |
|---|---|
| 희망복지지원단( 4인) | • 아동주거지원에 있어 핵심적 공공 주체<br>• 아동주거욕구에 대응하는 공공 주거자원 연계의 중추<br>• 지역 내 아동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br>• 주거욕구 외 아동가구 종합적 사례관리 진행 |
| 드림스타트(4인) | • 영유아 및 초등학교 연령대 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례관리<br>• 지원 연령 아동에 대한 높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br>• 고위험 아동가구에 대한 종합적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지원<br>•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
| 주거복지센터(4인) |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전문성<br>• 공공 및 민간 주거자원 발굴 및 연계<br>• 주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지원 |
| 사회복지관(2인) | • 아동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적 사례관리 진행<br>• 지역 내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연계 가능<br>• 아동발달지식 및 아동/가족 상담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 |
| 자립지원전담인력(4인) | • 자립준비아동에 특화된 전문 지식<br>• 자립준비아동의 정착과 독립을 위한 전문적 지원 |

송아영 작성

## • 아동주거지원 현장 실무자 FGI 주요 결과

### • 의뢰/사정 단계

| 대주제 | 중주제 | 소주제 |
|---|---|---|
| 지역 내 주거빈곤아동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 |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거빈곤아동가구 발굴 체계 |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한 의뢰 |
| | | 주민센터 및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아동가구 발굴 |
| | | 민간/시민의 관심을 통한 사례 발굴 |
| | 직접적으로 발굴되는 아동가구 | 직접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가구 |
| | | 주거 외 욕구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아동의 주거문제 |
| | | 기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
| 아동의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 |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아동주거욕구 사정 절차 | 현재 존재하는 매뉴얼을 사용하여 사정 |
| | | 실무자/기관 자체적 관찰을 통한 사정 |
| | | 개별적 판단에 의존하는 사정 체계 |
| | | 기관 자체에서 사정 및 사례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
| | 아동가구 사정 시 별도로 관찰하는 요소 | 보호자의 양육의지와 태도에 대한 관심 |
| | | 아동의 독립공간 및 적절한 공간분리 여부의 확인 |
| | |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인지를 확인 |

# • 아동주거지원 현장 실무자 FGI 주요 결과

## • 아동주거 개입 단계

| 대주제 | 중주제 | 소주제 |
|---|---|---|
| 아동가구 주거탐색 과정의 특성 |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한 노력 | 아동의 학군을 고려한 주거물색 |
| | | 변화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 |
| 적절한 주거로의 이동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원활한 주거물색 및 이동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 주거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노력 |
| | | 원활아동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개입 |
| | 부족한 주거자원 보충을 위한 자원 발굴 | 지자체 자체의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 |
| | | 민간기관 자원발굴을 위한 노력 |
|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 |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위한 실무자의 노력 | 아동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 |
| | | 아동 주거권 옹호를 위한 설득의 과정 |
| | | 숨어있는 주거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

# • 아동주거지원 현장 실무자 FGI 주요 결과

## • 아동주거 개입 과정에서 확인한 전달체계의 한계

| 대주제 | 중주제 | 소주제 |
|---|---|---|
|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한계 | 전세임대 주거물색의 어려움 | 부족한 지원금액으로 적절한 전셋집을 얻기 어려운 현실 |
| |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부정적인 태도와 부당한 대우 |
| | | 매입임대에 대한 선호 |
| | | 공공 개입과 관리의 사각지대인 전세임대 |
| | 매입임대 입주의 장벽 | 월세와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임 |
| | |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는 매입임대 |
| | | 길기만 한 대기기간 |
|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자원 | 외부자원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동주거지원 | 실무자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 |
| | | 안정적 공적 자원의 부재로 인한 외부자원 의존 |
| | 충분한 지원을 가로막는 부족한 주거자원 | 욕구의 양을 고려하지 못한 주거자원 배분으로 인한 어려움 |
| | | 급작스런 주거이동 필요에 대응할 수 없는 부족한 주거자원 |
| | | 더욱 더 부족하기만 한 농어촌의 주거자원 |
| | | 주거이동이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 |
| 공급자 중심적 전달체계 및 주거자원 배분 체계 | 아동가구의 욕구와 선택권이 배재된 주거자원 배분 | 불평등한 주거자원 배분으로 아동가구의 선택권 묵살 |
| | |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주거불평등 |
| | | 취약한 보호자가 따라가기 어려운 주거지원 과정 |
| 적절하지 못한 행정체계 | 전문적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부재 | 모호한 아동주거지원 행정담당 체계 |
| | | 강압적이고 낙인을 찍는 행정 용어 |
| | |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체계로 인한 정보의 누락 |

# 5. 결론

## •단기 개선 방안

- 지하(반지하), 비주택, 필수설비미달 , 총 3만7천 아동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주거 지원
- 학대피해아동(가구)쉼터와 퇴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주거의 물량 시군구단위 확보
- 아동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테마형 임대주택 중 아동 친화 주택 유형 포함
-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상향조정
- 아동의 상황과 주거욕구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공공임대주택입주 신청서류와 절차 간소화 추진
-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만 8세로 상향
- 한부모 가구 추가 주거급여 지급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에 아동을 고려한 연령통합시설 조성 원칙 제시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중 아동관련 시설 항목 및 기준 정비, 인프라 부족 지역 우선공급 및 시설 복합화 유도
- 공동주택 기조성된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을 외부 주민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유도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아동(가구) 주거욕구 사정도구 배포
- 전달체계 종사자에게 아동주거권과 주거지원정책 교육 실시
- 주거복지센터와 아동 관련 기관의 협조와 네트워크 강화

87

## •단기 개선 방안

- 저소득 아동가구(자립준비청년) 이사 비용 지원
- 아동단독가구 보증금 지원 및 저리 융자 제도 정비
- 저신용 청년대상 햇살론 유스 사회적 배려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하고 대상연령 만 18세로 조정
- 취업,진학의 사유로 이사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진 기존 공공임대주택 혜택 유지하도록 변경
- 성폭력 피해로 특별지원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9세 퇴소자에게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은 주거지원
- 6호처분, 소년원 퇴소자 중 일정연령 이하의 무의탁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 홈리스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노력 신속히 체계화
- 청소년 쉼터 등 중도 퇴소자를 위한 지원 의무화
- 아동복지시설의 입지조건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가정형 거주 공간으로 개정
- 청소년복지시설 역시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기준을 개정
- 경계성 지능 장애 등의 특수한 욕구와 지원이 필요한 자립 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주택, 청년형 그룹홈(쉐어 하우스) 등 공급
-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 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가구) 참여 보장

88

## • 중기 개선 방안

- 아동복지법의 '기초적인 조건',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적인 여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아동복지법의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에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 대통령령에 추가
- 공공임대주택 입주 아동청소년가구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 마련
- 주거급여 수급 아동가구의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별도의 추가급여 제공
- 아동가구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의 기준소득을 중위소득 60%까지 상향
-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에 초등학생 연령 모두 포함
- 공동주택이 지역사회 공유 커뮤니티 설치 시 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
- 주민공동시설에 아동청소년실내놀이터 추가
- 공동주택 용도변경,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아동의 수나 지역사회 아동시설 현황 고려, 아동(아동가구) 참여 보장
- 도로교통법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추가
- 아동의 지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농어촌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 원가정 복귀를 할 수도, 시설 거주도 할 수 없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화
- 모든 유형의 자립준비청년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자립지원업무지침 개발
- 모든 유형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용가능한 일원화된 자립지원전달체계 구축

89

## • 장기 개선 방안

- 주거기본법의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지원대상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 주거기본법에, 홈리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주거확보 노력, 아동청소년(가구)이 최저주거기준미달인 경우 즉각 지원 명시
- 아동복지법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건강한 심신 보존을 위한 주거 및 지역사회환경 사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에 주거 포함하도록 개정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주거(지역사회)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의견 존중의 원칙 강화
- 아동(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가칭) 설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른 주택개보수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주거비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건설 및 매입/전세단가 현실화, 민간 분양아파트와 외연적 차이해소
-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위소득 100%까지 주거급여와 에너지바우처 지급(근로활동 조건)
- 주거지원 정책 수혜자의 최저(혹은 적정)주거기준의 충족과 아동발달간의 관계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 아동관점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국토계획법에 추가
-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접근성 확보
- 공원녹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터 사항, 장애아동놀이터 설치 기준 마련
-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법제화에 아동(아동가구) 참여 보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어린이놀이터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주거 적정기준 설정,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통합화, 아동접근성 취약 진단 사업, 도시정책시 아동관점에서의 영향평가, 생활인프라 복합화 사업 모델 신규 추진

90

| 개선 항목 | 개선 내용 | | 개선 시기 | 주무부처 |
|---|---|---|---|---|
| | 개선사항 | 구체적 내용 | | |
| 주거종합계획 | 극빈 주거빈곤 아동가구 발굴 및 지원 | ○ 지하(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2만9천 아동가구, 필수설비미달 8천 아동가구 총 3만7천 아동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주거 지원 계획 포함 | 단기 | 국토교통부 |
| | 테마형 임대주택에 아동의 권리 고려 | ○테마형 임대주택 중 '아동친화 주택 유형' 포함, 지역사회 아동의 커뮤니티 이용 유도 | 단기 | 국토교통부 |
| | 퇴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시거소 물량 확보 | ○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의 1의 다. 주거지원 중 임시거소 목표 물량 시군구 단위 설정 | 단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간소화 | ○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추진<br>○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다각화 증대 | 단기 | 국토교통부 |
| |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목표 설정 | ○ 아동주거빈곤가구 규모 고려하여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목표 설정 | 중기 | 국토교통부 |
| |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개선 | ○ 아동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완화<br>○ 아동의 상황과 주거욕구를 고려한 입주 우선권 배정<br>○ 아동과 보호자 의견 대립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른 공정지원체계 구축 | 중기 | 국토교통부 |
|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수혜 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수혜 가구 모니터링 체계 구축<br>- 주택품질기준, 아동의 주거권 보장(예, 면적기준, 침실기준,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기준 등의 아동 주거권 보장 상태) 점검 후 지원 방안 모색(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옹호활동 병행) | 중기 | 국토교통부 |
| | 아동적정주거기준 설정 |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아동적정주거기준 설정 추진<br>- 아동의 연령, 성별, 장애, 활동 고려 | 장기 | 국토교통부 |
| |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 ○ 민간 분양 아파트와 외관 차이 해소<br>○ 매입임대주택 단가 현실화<br>○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상향 | 장기 | 국토교통부 |
| 아동정책기본계획 | 극빈 주거빈곤 아동가구 발굴 및 지원 | ○ 지하(반지하), 비주택에 거주하는 2만9천 아동가구, 필수설비미달 8천 아동가구 총 3만7천 아동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주거 지원 계획 포함 | 단기 | 보건복지부 |
| | 학대피해아동(아동가구) 쉼터 목표 물량 설정 | ○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3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가구 단위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br>○ 2025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학대피해아동쉼터 목표 물량을 시군구 단위로 설정 | 단기 | 보건복지부 |
| | 아동가구용 주거욕구 사정도구 배포 | ○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한 아동가구용 주거욕구 사정도구 배포<br>- 2024년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업무 매뉴얼 개정 | 단기 | 보건복지부 |
| | 보호대상아동 주거권 보장 | ○ 보호대상아동 거주 공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br>- 보호대상아동의 성별, 연령, 특성을 고려한 공간이 되도록 시설규정을 개정하고 재정 지원 확대 | 단기 | 보건복지부 |
|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형 보호의 확대 | ○ 가정형 보호의 확대<br>- 대규모 양육시설을 가정환경과 유사한 소규모 시설로 전환 | 중기 | 보건복지부 |
| |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화 | ○ 원가정 복귀를 할 수도, 시설 거주도 할 수 없는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화<br>- 독립생활이 가능한 최소 연령기준(예 16세 이상)을 충족한 가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인적 | 중기 | 보건복지부 |

91

| | | | | |
|---|---|---|---|---|
| 아동정책 기본계획 | | 주거 제공<br>- 지자체가 특별 대리인이 되어 계약 조력하는 방식 등 도입 | | |
| | | ○ 경계성 지능장애 등 장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지원주택 개발<br>- 독립생활 가능한 주거(1인 1실 혹은 1인 1호)에서 살면서 사회복지사의 돌봄과 지원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년형 지원주택 개발 및 확산 | 단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체계 강화 | ○ 저신용 청년대상 햇살론 유스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 포함<br>-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연령 조건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 단기 | 서민금융진흥원 |
| | | ○ 취업, 진학 등의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 혜택 유지 가능하도록 개선<br>-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주거지원 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자립 지원 | 단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 ○ 6호 처분 퇴소자 중 만 24세 미만 무의탁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조건 부여 | 단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 ○ 주거지원 기간의 연장<br>-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보호종료 후 10년으로 확대 | 장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주거권과 주거지원정책 정보 제공 후 의견 수렴 |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도시재생사업계획'시 아동(아동가구)의 참여 보장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단기 | 보건복지부 |
| |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법제화에 아동(아동가구) 참여 보장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장기 | |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홈리스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내용 추가 | ○ 홈리스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추가<br>-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가정위탁 등을 이용하지 않는 홈리스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단기 | 여성가족부 |
| | | ○ 청소년 쉼터 중도 퇴소자를 위한 지원 의무화<br>-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청소년 쉼터를 중도 퇴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 하도록 의무화(현재는 '노력' 규정) | 단기 | 여성가족부 |
| | | ○ 가정복귀, 청소년쉼터 입소가 적절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신설<br>-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가 보호자에게서 이탈된 경우, 성성체성 등의 이유로 청소년쉼터 입소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신설<br>- 일정 연령(만 16세)에 도달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돌봄을 전제로 독립생활 가능하도록 함 | 중기 | 여성가족부 |
| | 청소년쉼터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체계 강화 | ○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은 자립지원체계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br>-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확대 및 지원 강화 | 중기 | 여성가족부 |
| |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주거권과 주거지원정책 정보 제공 후 의견 수렴 | ○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한 '도시재생사업계획'시 청소년(청소년가구)의 참여 보장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단기 | 여성가족부 |
| | |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법제화에 청소년(청소년가구)의 참여 보장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 | 장기 | 여성가족부 |
| 소년범죄 종합대책 | 소년원 퇴소자들에게 자립지원 체계 마련 | ○ 소년원 퇴소자 중 무의탁 퇴소자들에게 퇴소전 이용가능한 자립생활관, 주거복지 안내 등 자립지원 체계 마련<br>-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퇴소자와 일원화된 지원체계 마련 | 중기 | 법무부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 원칙 개정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 아동을 고려한 연령통합시설 조성 원칙 제시 | 단기 | 국토교통부 |

| | | | | | |
|---|---|---|---|---|---|
| | | 아동 및 아동가구 참여 보장 | ○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계획'시 아동 및 아동가구 참여 보장 | 단기 | 국토교통부 |
|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 2의 개정 |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중 아동 관련 시설 항목 및 기준을 정비(놀이터등) | 단기 | 국토교통부 |
| | 도시군 기본계획 | 아동 및 아동가구 참여 보장 | ○ '도시·군 기본계획'내 생활권계획 법제화 및 아동 및 아동가구 참여 법제화 | 장기 | 국토교통부 |
| | 에너지바우처 사업 | 아동 연령 상향 | ○ 세대원 특성 기준 중 '영유아' 기준을 만 8세 아동까지 상향 | 단기 |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에너지 공단 |
| | | 아동가구 소득기준 상향 | ○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 | 중기 | |
| | | | ○ 아동가구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중위소득 80~100%까지 완화. 단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장기 | |
| | 여성아동권익 증진사업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특별지원보호시설(만 19세 미만 피해자시설) 주거지원 강화 | ○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혹은 청소년쉼터 퇴소자와 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실시 | 단기 | 여성가족부 |
| | 주거복지전달 체계 사업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거문제 인식 강화 |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거에 대한 문제의식 강화 및 주거복지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br>변화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유 체계 마련<br>- 주거지원 정보 누락 및 지원 탈락 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례 발굴 | 단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 |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옹호활동 증가 |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아동 권리 및 아동가구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담 역량 고취 필요<br>- 아동중심의 주거욕구 파악(객관적인 주거상태와 아동의 주거에 대한 인식과 욕구 확인, 급격한 환경 변화 지양, 주거지원과 관련된 낙인감 최소화)<br>- 아동 권리에 대한 보호자 인식 및 보호자 설득을 위한 노력 증가 필요<br>-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장애, 다문화, 학대피해)을 위한 주거지원 전문성 증가 | 단기 | 국토교통부 |
| | | | ○ 주거탐색이 어려운 아동가구(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탐색 지원 체계화 | 단기 | 국토교통부 |
| | | | ○ 임차 중인 아동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임대인과 갈등시 옹호활동 강화 | 단기 | 국토교통부 |
| | | | ○ 아동가구(자립준비청년) 이주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지원 | 단기 | 국토교통부 |
| | | | ○ 주거빈곤 밀집지역 환경 개선 및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 중기 | 국토교통부 |
| | | 주거복지의 연계 강화 | ○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 강화<br>-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생활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주거복지센터의 연계 강화 | 단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 |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 시도, 시군구 주거복지담당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전문성 강화 | 중기 | 행정안전부 |
| | | | ○ 농어촌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 중기 | 국토교통부 |
| | 주거기본법 | 주거기본법 제 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개정 | ○ 홈리스 아동청소년 주거지원 원칙 추가<br>- 10. '홈리스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 추가 | 장기 | 국토교통부 |
| | | 주거기본법 제 16조(주거약자지원) ① 개정 | ○ 주거 약자에 아동·청소년 포함<br>- 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 고령자 · '아동·청소년' 등 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기 | 국토교통부 |

| | | | | | |
|---|---|---|---|---|---|
| | | 주거기본법 제 18조(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개정 | ○ 아동청소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즉각 지원 규정 추가<br>- 주거기본법 제 18조(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단,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 가구가 최저주거기준미달인 경우 즉각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추가 | 장기 | 국토교통부 |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사설의 입지조건 및 설비기준)의 개정 |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복지시설의 입지조건 및 설비기준으로 개정<br>- 가정형 거주공간으로 개정(1인1실 지원 등) | 단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3조(정의) ⑤ 시행령 제정 | ○ 지원대상아동 선정 조건이 되는 '기초적인 조건' 주거 포함하여 구체화<br>- 아동복지법 제3조 ⑤의 '기초적인 조건'을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 중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15조(보호조치) 개정 | ○ 보호대상아동 혹은 가정내 보호 아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 밖 아동 발굴 법적 의무 추가<br>- 아동복지법 제 15조 (보호조치)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가정 밖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장 추가<br>○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시 아동 의견 청취 의무화(기존은 아동의사 존중으로 표현)<br>아동복지법 제 15조 (보호조치) 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령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장으로 개정 | 장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31조(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개정 | ○ 아동복지법 제 31조(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6.에 주거권 등 관련 교육 추가<br>-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6.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주거 등 기타 교육' 추가 | 장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개정 | ○ 아동복지법 제 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에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조항 추가<br>-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에 5조의 ②에 '5. 건강한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에 관한 사항' 추가 | 장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개정 | ○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 추가<br>- 아동복지법 제 37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등)의 시행령에 ' 폭력, 학대 및 경제적 이유로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 및 가정' 항목 추가 | 중기 | 보건복지부 |
| | | |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주거 포함<br>-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장기 | 보건복지부 |
| | | 아동복지법 제 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항의 1. 개정 및 문항 추가 | ○ 아동양육시설의 양육목적에 '충분하고 적절한 ' 문구 포함<br>- 아동복지법 제52조 ①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br>○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 '가정형 보호(가정에 가까운 주거 환경)'에 가까울 것을 권고하는 문항 추가 | 장기 | 보건복지부 |
|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기본법 제 3조(정의) 4. 시행령 제정 | ○ 청소년복지 지원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여건'에 주거를 포함하고 구체화<br>-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의 '기본적인 여건'을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정 | 중기 | 여성가족부 |
| |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③ 시행령 제정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필요한 여건'에 주거를 포함하고 구체화<br>-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의 '필요한 여건'을 청소년의 발달에 적합한 주거를 | 중기 |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정 | |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개정 | ○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으로 개정<br>-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인원 대비 면적, 설비의 개수, 청소년 발달과 활동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공간별 면적 등 전면 개정 | 단기 | 여성가족부 |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책임)의 ②개정 및 문항 추가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항을 가정으로도 복귀할 수도 없고 시설에도 거주할 수 없는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로 개정<b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의료·주거·교육 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br>○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때 '가정환경과 유사한 주거 지원'의 의무 추가<br>-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때는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추가 | 장기 | 여성가족부 |
|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32조의 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의 개정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의 ②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의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br>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장기 | 여성가족부 |
| |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복지급여의 내용) 5. 시행령 제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제 12조(복지급여의 내용)에 아동주거비 포함<br>-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조(복지급여의 내용) ①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아동주거비를 포함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설정 | 단기 | 여성가족부 |
| |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법 제 7조(임차료의 지급) 의 시행규칙 개정 | ○ 주거급여법 제 7조(임차료의 지급)의 시행규칙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아동가구 추가 급여 조항 추가<br>주거급여에 관한 고시 제 3조의 3(아동 주거급여의 실시) 추가하고 아동의 수, 연령, 성별, 장애 여부를 반영하여 지원 | 중기 | 여성가족부 |
| | | 주거급여법 제 5조(수급권자의 범위) 개정 | ○ 주거급여법 제 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아동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상향 단서 조항 추가<br>주거급여법 제 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단, 아동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추가 | 장기 | 국토교통부 |
|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 제3조의 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개정 | ○ 아동 관점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추가 | 장기 | 국토교통부 |
| | 주택법 | 공동주택 아동시설 지역사회 공유 지원 | ○ 공동주택에 기조성된 놀이터, 작은 도서관 등 외부 주민 공동사용 유도 정책 필요<br>지자체의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시설개방 유도 | 단기 | 국토교통부, 지자체 |
| | | | ○ 신규 조성하는 공동주택이 지역사회공유 커뮤니티시설 설치시 건폐율과 용적율 인센티브 제공 | 중기 | 국토교통부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1. 개정 | ○ 주민공동시설에 아동청소년실내놀이터 추가<br>주택건설기준규정 제 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2. 300세대 이상·경로당, 어린이놀이터(아동청소년실내놀이터 1개소 이상 포함), 어린이집 | 중기 | 국토교통부 |
| | | |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어린이놀이터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개정<br>주택건설기준규정 제 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4.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규모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단지 경계에서 도보 5분 내 접근 가능한 공공놀이터를 설치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 장기 | 국토교통부 |

| | | |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공공기여로 조성되는 생활인프라 검토 | ○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아동생활인프라 부족지역 진단 후 공공기여 우선 반영 | 장기 | 국토교통부 |
| 공동주택 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개정 | ○ 공동주택 용도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 및 설치시설 종류 결정시 지역의 아동의 수나 지역사회 아동시설 현황을 고려하고, 아동(아동가구) 참여 보장<br>시행령 제 35조(행위 허가 등의 기준)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이용가능한 놀이터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경우 아동 가구의 수요 조사를 포함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개정 | 중기 | 국토교통부 |
| 공원녹지법 |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 신설 | ○ 놀이터 조성 설치 기준 및 시설 기준을 통합·개선<br>○ 어린이 놀이터 질적 수준 내용 포함 | 장기 | |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개정 | ○ 어린이 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보호구역 추가<br>도로교통법 제 12조①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와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 중기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아동 놀이터 설치 기준 마련<br>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 도입 | ○ 장애아동 놀이터의 설치 및 시설 기준 마련 추가<br>○ 위험가치평가(Risk-Benefit Assessment) 도입하여 놀이가치 및 위험감수의 측면 평가하여 놀이시설 보완 | 장기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4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 ○ 아동의 시설 이용 수요 고려 및 이용 활성화 지원<br>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시 아동청소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가 | 중기 | 국토교통부 |
| 신규 법률 제정 | 「어린이놀이터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 ○ 놀이터 조성 설치 기준 및 시설 기준을 통합·개선<br>- 어린이 놀이터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위험가치평가 도입<br>○ 놀이터 조성시 아동 참여 및 의견 수렴 의무화 | 장기 | 국토교통부, 지자체 |
| 신규 사업 추진 | 아동 적정 주거기준 마련 | ○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적정 주거기준 및 집행 기준 마련 | 중장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통합화 |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통합화 | 중장기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
| | '아동 접근성 취약 지역 '진단 | ○ 아동의 주요 생활 인프라 접근성 정기적 진단 | 장기 | 국토교통부 |
| | 아동영향평가 도입 | ○ 아동 관점에서 도시정책의 영향 평가 체계 도입 | 장기 | 국토교통부 |
| | 생활인프라 복합화 사업 모델 개발 | ○ 아동 생활인프라 취약지역의 우선적 개선을 위한 시설복합화 사업 모델 개발·실행 | 장기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토론문

**김도곤 과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토론문

**황규홍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 1. 논리의 틀과 체계성

본 연구는 한국의 주거지원정책을 대부분 총망라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권리를 토대로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그 논리적 분석에 질적 내용을 더하여 연구방법의 체계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이론적 배경과 고찰에서 주거의 의미, 주거원의 의미, 아동 주거권의 의미, 아동 주거권 우선보장의 근거, 주거권 미보장과 아동발달, 아동 주거빈곤의 규모 등 관련 이론과 데이터의  파악/분석자료는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에서 주요 잣대로 작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단, 해외사례는 5개 범주로(공공임대주택정책, 아동 주거비 정책, 지역환경 관련 법 및 사업, 전달체계, 사설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구분하여 고찰한 것은 그 접근성이 좋았으나, 결론의 법제도 개선사항과 다소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해외국가와 한국의 법제도의 체계가 다른 점, 여러 관점의 여건이 상이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2. 분석결과의 수준과 한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로서 ①기본법+기본계획. ②공공주택정책, ③주거비지원정책, ④지역환경정책, ⑤전달체계, ⑥가정밖아동청소년+자립준비청년의 6가지로 구분하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4대권리를 분석지표로 활용하여 개선안까지 도출한 것은 향후 관계기관의 법제도 개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의미 있는 아웃풋을 도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용어변경에서 주요사항 추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를 부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혼돈스러워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 마지막으로 '⑦당사자+종사자FGI'는 실증적 경험과 실무적 의견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매뉴얼 개발 및 종사자 실무 노하우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FGI에서 도출한 이슈들이 결론의 단기/중기/장기적 개선사항에 어떤 논리로 반영되었는지가 보이지 않아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대주제와 중주제의 내용은 추상적이어서 활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 소주제들이 내용적으로 개선할 내용들인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버릴 것과 담을 것, 담을 것 중 급한 것과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 등으로 판단하셔서 결론으로 연결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논리 설명과 흐름이 보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종합계획 개정, 입주기준에 아동고려, 서류 간소화 및 홍보, 실태조사와 정기 모니터링 강화, 최저주거기준, 주택규모 및 시설개선, 장애아동 우선 개보수, 인식제고 및 낙인문제 해소, 품질제고 등 도출한 개선사항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잘 도출하였으며 국토부, LH 등 유관기관에서 참고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 3. 결론의 합리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론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실천적 접근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논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더라고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한 이유를 사전 설명하면 설득력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기간동안에 포함된 개선요소들이 현재는 단순 열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데, 중간 위계를 두어 요소들을 그룹핑하면 전반적인 유형과 체계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단기/중기/장기 개선사항들이 개선의 실천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SWOT분석이 필요하고, 이 자료들이 SWOT분석하기에 잘 모아진 데이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시행계획시의 연구범위 등을 고려하셔서 연구진이 자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법제별 개선사항과 주무부서까지 명기가 포함된 표는 정책부서별 제도개선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매우 우수합니다.

### 4.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과 그와 연계된 법제도들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과 4대 권리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개선안을 도출한 연구로서, 아동들에게 맞지 않는 자동차 중심 및 부동산 자산수단으로서의 한국의 주거문화가 주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후속 연구, 연구의 실천적 활용성, 연구의 홍보, 관련 포럼 등이 향후 활발해 져서 한국의 아동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토론문

**신욱수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2부

#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성과공유 · 우수지자체 시상

사회 조은준 아나운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발표**
민소영 센터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경과 보고**
정정희 차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아동정책시행계획(2022년) 평가 우수사례 I**
김미정 주무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시행계획(2022년) 평가 우수사례 II**
강원희 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육아동과)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우수사례 I**
정성환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우수사례 II**
장유리 주무관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일 아동의 날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책임연구원: 민소영 센터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공동연구원: 김시아 부연구위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강현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주연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선욱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보조원: 이예나(이화여대 박사과정), 장건우(경기대 석사과정)
임수지 주임(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일 아동의 날

## CONTENTS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아동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및 쟁점
2.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쟁점
3. 아동종합실태조사 평가 및 쟁점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제4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1. 권리주체
2. 여가·놀이
3. 발달·교육
4. 돌봄
5. 보호
6. 안전
7. 건강
8. 실행기반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 아동의 날

#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2

## 제1장 서 론 – 연구배경

**본 연구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2029년)"수립을 앞두고 향후 수립 방향 및 지원체계(안)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

- ✓ 아동정책기본계획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실행의 중요한 기반이 됨
-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목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2기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이 진행 중이며,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은 2024년에 공표될 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수립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
- ✓ 이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아동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바탕으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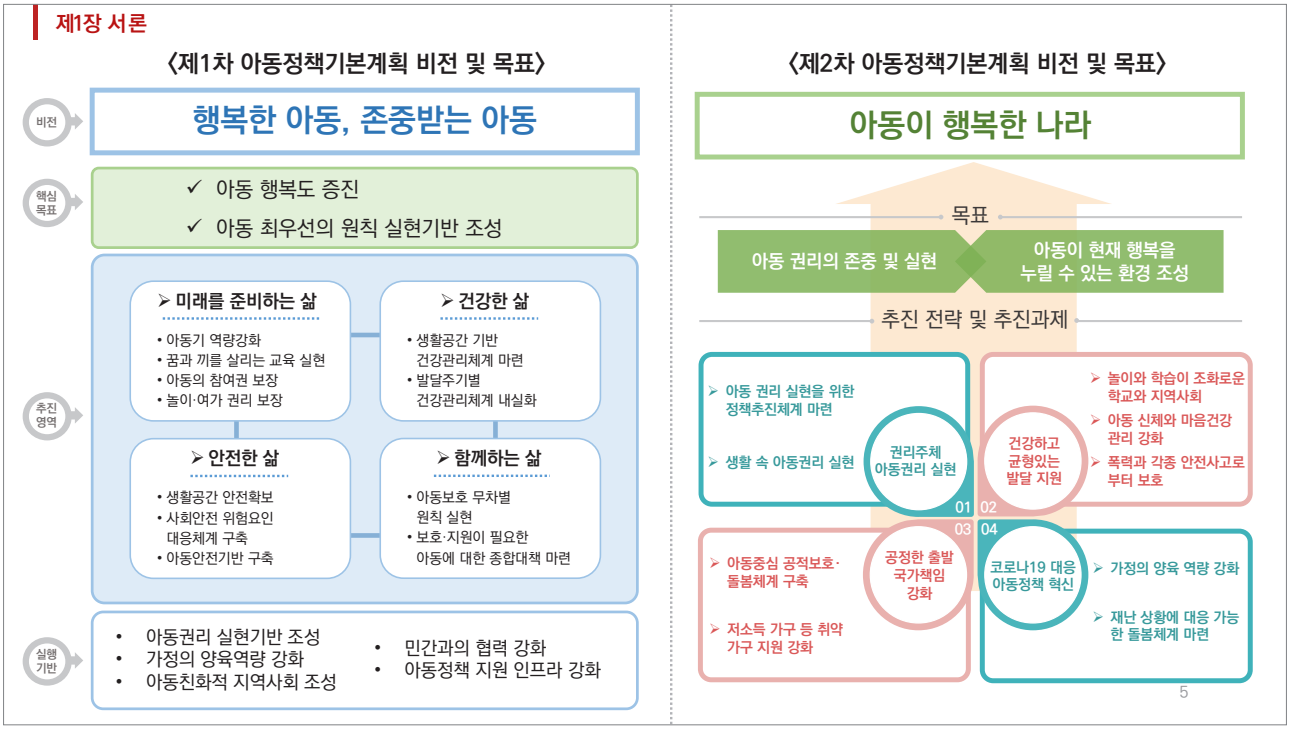


##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정책 현황의 분석 및 진단, 그리고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탐색하여 아동 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의 과학적, 논리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임

아동의 행복한 삶과 권리주체로서 성장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방향성 및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아동 권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과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변화, 사회적 재난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정책의 방향성과 비전을 탐색함

6

## 제1장 서 론
## - 연구수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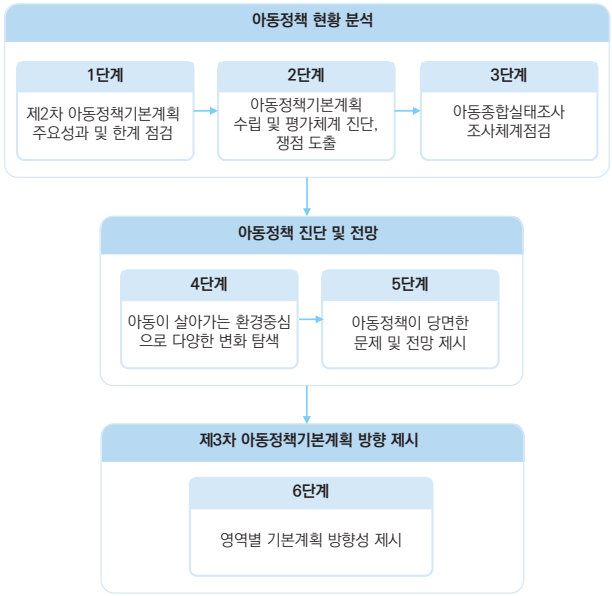


7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 아동의 날

# 제2장 아동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8

## 제2장 아동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 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성과 및 쟁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달성도〉

| 구분 | | 수립 전('19) | 달성도('21) | | 달성도('22) | | 출처 확인 및 통계 발표 시점 | 목표치('24) |
|---|---|---|---|---|---|---|---|---|
| 총괄 | 삶의 만족도 | OECD 28개국 최하위 (6.57점, '18) | 2023년 통계생산 예정 | - | 2023년 통계생산 예정 | - | 2023.12. 예정(5년주기) | OECD 최하위 탈피 7.0점 이상 |
| |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 | - | - | 92.3%('23) | 달성 | 2023.12.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 90% 이상 (불수용 분야 제외한 수치) |
| 권리 | **우리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핵심지표** | 77.1%('19) | 82.4%('21) | 달성 | 82.9%('22) | **달성** | 2022.12.(2년주기) | 80.0% |
| |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핵심지표** | 77.3%('19) | 82.2%('21) | 달성 | 80.6%('22) | **달성** | 2022.12.(2년주기) | 80.0% |
| 발달 |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핵심지표** | 76.5%('19) | 75.6%('21) | 미달성 | 73.4%('22) | 미달성 | 2022.12.(2년주기) | 80.0% |
| | 여가시간 만족도(13~19세) | 43.3%('19) | 47.9%('21) | 달성 | - | **달성** | 2022.11.(2년주기) | 47.0% |
| | 주관적 건강수준 | 70%('19) | 64.7%('21) | 미달성 | 63.1%('22) | 미달성 | 2023.05.(1년주기) | 73% |
| | 영유아 건강검진율 | 74.5%('18) | 83.0%('20) | 달성 | 87.1%('21) | **달성** | 2022.11.(1년주기) 2023.11. 예정 | 82% |
| |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1명 ('16) *OECD 21위 | 0.4명('20) | 달성 | - | **달성** | 2022.12.(1년주기) 2023.12. 예정 | 0.6명 *OECD 7위 |
| |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 8.5%('18) | 5.9%('20) | 달성 | 16.3%('22) | 미달성 | 2022.12.(2년주기) | 8.0% |
| | 재학대 판정률 | 10.3%('18) | 14.7%('21) | 미달성 | - | 미달성 | 2022.08.(1년주기) 2023.09. 예정 | 7.7% |
| 보호 |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핵심지표** | - | 110%('21) 664명(목표)→730명 (실적) | 달성 | 111%('22) 765명(목표)→852명 (실적) | **달성** | 2023.04. (복지부-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 100% |
| | 가정위탁 보호율 | 23.9%('18) | 29.9%('21) | 미달성 | - | 미달성 | 2022.0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37% |
| | 공공보육 이용률 | 28.4%('19) | 34.3%('21) | 미달성 | 36%('22) | 미달성 | 2023.03.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 40%('21) *이후 목표치 재설정 |
| | 아동결핍지수 *전체 평균 지수는 1.58점 | 4.50점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8) | 2023년 통계생산 예정 | - | - | - | 2023.12.예정(5년주기) | 4.00점 |



제2장 아동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성과 및 쟁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관리지표별 성과점검 결과〉

| 추진전략 | 연번 | 주요 관리지표 | 점검결과 |
|---|---|---|---|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권리) | 1 | 아동기본법 제정('22) | 추진중 |
| | 2 | 아동정책영향평가 30개 전문평가 실시('24) | 추진중 |
| | 3 |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23) | 추진중 |
| | 4 | 아동중심보호·공공후견인제도 도입('22) | 추진중 |
| | 5 | 아동 노동권: 뉴미디어 참여아동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20) | 추진중 |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발달) | 6 | 아동·가족 우대제도 확충('22) | 추진중 |
| | 7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20) | 완료 |
| | 8 |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25) | 추진중 |
| | 9 | 건강한 습관·형성 관리('24) | 추진중 |
| | 10 | 유아성행동문제 발생 시 아동관점 대응 강화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 마련('21) | 완료 |
| | 11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21) 및 시행('24) | 완료 |
| | 12 | 위기아동 사전발굴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례분석팀 운영('20) | 완료 |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보호) | 13 | 공적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완료('22) | 완료 |
| | 14 |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1) | 완료 |
| | 15 | 국제입양법 제정('21) | 완료 |
| | 16 |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21) | 완료 |
| | 17 | 빈곤 아동가구의 주거지원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 추진중 |
| | 18 | 한부모, 이주민, 장애아동 양육 가정 지원강화 | 추진중 |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19 | 종합적 가정양육 역량 제고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22) | 추진중 |
| | 20 |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행('24) | 추진중 |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11



## [영역 1. 발달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동, 믿어주는 사회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a. 기관 차이 없이 질 높은 영유아 성장 환경 실현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및 일원화 기반 조성 | • 격차완화를 통한 상생발전의 단기적 목표와 유보통합 달성의 장기적 목표 동시 추진<br>• 유치원 교사 대 유아비율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br>•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기준 및 처우 개선, 시설 설비 기준 상향조정 | | • 유보통합 추진(신) |
| | 국공립과 사립/민간 격차 완화 | • 비용지원 내실화를 통한 사립/민간의 책무성 강화<br>•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 재정지원 격차 완화<br>• 사립/민간의 다양성과 차별성 수용 | | |
| |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 • 지역특성 및 수요 예측 기초한 합리적 확충 계획<br>• 국공립 확충 각종 방식에 대한 시범사업 또는 평가 등 장치 마련<br>• 국공립 여건 개선을 통한 질 개선 모색 | 3-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
| | 아동가구 대상 수당 재구조화 | • 아동수당 성격 및 방향성에 근거한 제도 설계<br>• 양육수당 합리화 | | |
| | 자발성과 주도성에 기초한 영유아 일상적 놀이 보장 | • 가정과 기관에서 영유아의 놀이시간 보장<br>• 영유아 놀이공간 확보 및 개선을 통한 일상의 놀이 보장<br>• 놀이지원자 인식과 역량 강화 | 2-1) 영유아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 | |

12

[영역 1. 발달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동, 믿어주는 사회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b. 아동 스스로 성장해 가는 학교 교육 실현 |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 교육급여 제도 대상 확대 및 지급 금액 현실화<br>•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 통합<br>• 소외계층 가정 학생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 지원강화 | 3-2)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교육급여 지원사업 개편, 학업중단 예방 및 학습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아동 기초학력 등 현황조사 실시 및 기초학습 지원 추진(신)<br>• 장애아동/경계선지능아동/다문화·북한이탈 아동 학습지원 확대(강)<br>• 소년원·소년교도소 재소아동의 맞춤형교육 강화(강)<br>•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신)<br>• 건강장애아동(학생) 병원학교 및 순회원격교육 운영 활성화(신) |
| | 기초학력 보장 | • 초1~2 아동 기초학력 조기진단<br>•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br>•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 구축 | | •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부진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진단, AI기반 학습지원, 두드림)(강) |
| |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실현 | • 중등 자유학기제 보완 및 내실 운영(이행관리)<br>• 고교학점제 추진 및 기반 마련(이행관리)<br>• 학교운영에 대한 아동참여 기회 확대<br>• 미래형 학습공간을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 2-1)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맞춤형 교육 강화(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도입)<br>1-2)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 법제화 등 참여권 제도화 | |
| | 초중학생 학습량 적정화 | • 적정 학습 개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재검토 및 개선<br>•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 2-1)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
| | 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사-학생 비율 개선 | • 교사-학생 비율 OECD 평균수준 개선 | | |
| | 진로교육 내실화 | • 학교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강화 및 내실화<br>• 진로 체험 기회 다양화 및 내실화<br>• 학교 직업교육 혁신 및 현장성 강화 | | |
| |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 • 아동 중심, 창의적 활동 중심 학교 공간 개선<br>•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 환경 개선<br>• 학교시설 환경 안전성 강화 | 2-1) 초등학교 놀이시간과 공간 확충 | • 학교 신체활동과 휴식시간, 공간 확대(강) |

13

[영역 1. 발달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동, 믿어주는 사회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c. 학교 밖에서도 보이는 아동, 참여하는 아동 | 아동우대, 아동할인 제도 운영 정비 및 강화 | • 아동청소년 교통비 할인율 일정비율 관계법령 근거<br>• 취약계층 청소년 '이동권보장' 측면교통비 지원<br>• 공공문화시설 및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할인 확대 | 2-1) 아동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 할인 | |
| | 아동 정책결정 참여 기회 보장 강화 | • 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 개정<br>• 지역사회 아동의회 운영 지원 및 제도화 | 1-2) 아동총회 결과보고 의무화 | • 정책과정 참여 기회 확대(신) |
| | 아동청소년 욕구기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br>•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 2-1) 아동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 할인 | •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강)<br>• 장애아동 놀이 활동 기회 보장(신) |
|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 • 지역사회 자기주도적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설치 및 기존 공간 리모델링 지원<br>• 지자체 평가를 통한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마련 촉진 | (유사)2-1)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 • 지역사회 아동 활동 및 체험 기반 확대(지역별 돌봄·놀이 융합모델 개발, 놀이터 지도 등) |
| | 지역사회 아동 친화사업장 발굴 및 지원 | • 지역사회 결식 아동청소년 대상 무료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 아동지원 소상공인 발굴 및 아동친화사업장 선정<br>• 지역사회 아동친화사업장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우선지원 | | |

14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영역 2. 안전돌봄] 사고, 폭력 및 방치(방임)으로부터의 안전한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a. 사고로 부터 안전한 아동 | 아동 안전환경 조성 | •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이행관리<br>•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세림이법 강화<br>•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 2-3)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
| b.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아동 |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강화 | • 아동학대발굴확대<br>• 아동사망사례조사팀 운영<br>• 아동학대 대응방안 강화<br>• 가정폭력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의 자동연계 | 2-3)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 • 아동학대 조기발굴체계 내실화<br>• 조사체계, 정보입수, 시스템 발전을 통한 발굴 추진(신)<br>• 조기개입체계 구축(신)<br>• 신고의무자 확대 및 예방강화<br>•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신)<br>• 체계적 사후관리(사후지원 서비스 강화, 학대 사망사건 조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 아동성범죄 예방 강화 및 성관련 문제행동 대응 강화 | • 아동대상 온라인 그루밍 예방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br>• 아동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강화<br>• 아동간 성관련 문제행동 아동관점 대응체계 강화 | 2-3) 아동성범죄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 |
| |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보호 | • 아동의 사생활 보호<br>• 아동노동보호 가이드라인 신설<br>• 아동 수익보호 | 1-2) 아동 사생활보호<br>1-2) 아동노동보호 | • 디지털 환경 아동 건강한 참여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강) |

15

[영역 2. 안전돌봄] 사고, 폭력 및 방치(방임)으로부터의 안전한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c.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체계 확립 | • 동일한 방과후 돌봄기능 수행 기관을 동일한 명칭으로 통합,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강화<br>• 온종일돌봄 생태계 선도사업 확대 및 강화, 지자체중 심 돌봄관련기관 간 연계 및 협력 강화<br>• 초등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을 통한 아동돌봄 공백해소 | 3-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 • 초등방과후 돌봄 강화(강)<br>• 아동 돌봄 사회서비스 고도화(신) |
| | 친권 제한제도 도입 및 징계권 용어 변경 | • 현행 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및 지원 강화<br>• 보호아동 위한 아동복지대리 제도 도입 검토<br>• 민법상 '징계권' 용어 변경 및 한계 설정 | 1-2)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br>1-2) 징계권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 | • 보호대상아동 후견 제도 개선(신) |
| | 대리양육자 돌봄체계 강화 |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근무스트레스 및 소진 방지<br>•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관련 정책 적용 제한 근무특성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br>•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도적 한계에 적극적 개선방안 | | |
| |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 학령기 아동급식 사각지대 해소<br>•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 | |

16

## [영역3. 보호포용] 다르지만 같이 커가는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a. 지역사회 중심 위기아동 지원체계 구축 | 아동에 대한 통합적 소득지원체계 마련 | • 아동권리 기반 보편적 아동수당 확대<br>• 저출산 문제 대응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검토<br>• 취약계층 아동 선별적 급여 적정성 검토 | | • 아동관련 수당(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개선방안 마련(강)<br>• 6세 미만아동(영유아) 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비(신)<br>•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강화(강) |
| | 아동 주거빈곤 해소 대책 마련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실효성 확보<br>• 아동가구 특성 고려한 주거급여 산정<br>• 에너지바우처사업 확대 | 3-2) 아동주거빈곤 지원 강화(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 주거지원 강화 대책 중간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 |
| | 위기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 위기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강화<br>• 위기아동 및 가족 지원서비스 전문성 강화 | 3-2) 드림스타트 강화<br>3-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적극 개입<br>3-2) 다양한 배경 위기 아동 지원 강화(한부모 가족,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드림스타트) 내실화(강)<br>•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양육비, 의료비 지원/주거/사례관리/인식 개선)(강)<br>• 돌봄위기가구 아동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신) |
| | 지역사회 중심 위기아동 가족서비스 연계 강화 | • 위기아동 가족 지원서비스 간 연계 강화 | | • 건강한 아동 양육 및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신)(지역거점 어린이집 활용/취약가구 참여 독려 등) |
| |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존중 및 인식 개선 | • 법적 실효성 강화<br>•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교육 확대 및 의무화<br>• 전문 교육 컨텐츠 및 플랫폼 개발과 전문강사양성 | | |

17

[영역3. 보호포용] 다르지만 같이 커가는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b. 통합성과 포괄성에 기초한 공공아동보호체계 확립 및 기능강화 | 아동복지 시설 기능 전환 |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및 기능 조정<br>• 아동복지시설 유휴공간 활용<br>• 아동복지시설 기능 고려한 통폐합<br>•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급적 일시적, 단기적, 위급시<br>•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 매칭 비율 일원화 필요<br>• 공동생활가정 경우, 정체성 모호하여 향후 가정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3-1)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식 개선 | • 원가정 관계·기능 회복 및 지원 강화(강)<br>• 아동 친화적 성장환경 마련(공동생활가정 질적 향상, 양육시설 1인1실)(강)<br>•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신) |
| | 가정위탁 보호 지원 강화 | • 가정위탁 개념 명확화<br>• 위탁가정 양성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와 위탁가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화<br>• 양육보조금 현실화<br>• 위탁가정 후견인 지정 확대<br>• 위탁가정 관리, 감독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체계 구축<br>•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홍보 확대 | 1-2)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br>3-1)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양육비 지원 확대,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등) | • 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강)<br>• 양육시설 전문화 추진(신)/가정위탁 강화/자립지원내실화/현장인력 역량 강화 |
|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br>•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br>• 지자체 내 아동보호업무 전담 영역별 조직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br>• 업무매뉴얼 공식 제작 및 업데이트를 통한 공무원 보직순환 부작용 예방 | 3-1) 공공 인력 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 |
| | 입양절차 공공성 지속 강화: 입양 전 위탁아동 | •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상 입양전 보호 관련 규정<br>• 입양대상아동 입양 이전 보호 위탁가정에 대한 지자체 중심 관리, 감독 체계 구축<br>•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입양기관의 위탁 양육모/위탁가정 공적영역으로 흡수하여 양육하는 방법 고려<br>• 중앙-지자체-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권리보장원-민간 입양기관 간 협업 및 기능 체계화<br>• 전문가정위탁제도에 입양 이전 아동보호체계 포함 | 3-1) 입양 전과정 공적책임 강화(입양전 사전위탁 제도화) | • 입양체계 전면 개편<br>• 보호대상아동 국내입양체계 개편(신)<br>•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신)<br>• 입양실태조사,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신) |
| |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 | • 보호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br>• 범죄아동, 치료시설아동, 교정시설아동, 소년범 등 사회복귀 지원 강화 | 3-2) 보호종료아동 대상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확충(자립수당 지원기간, 주거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자립정보제공강화, 자립지원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자립준비청년, 조기종료 아동 자립지원 강화(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전담인력, 자립정보 등 개선)(강)<br>• 시설아동 소년원 입소시 퇴소 후 자립지원 지침 개선(신) |

18

[영역3. 보호포용] 다르지만 같이 커가는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c.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공적체계 강화 | 아동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 차별금지법 제정<br>•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br>• 이혼과정 아동보호 강화<br>• 우범소년 규정 폐지 등 아동 인권 존중 관점에서 아동 사법 개정 추진 | 1-2)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우법소년제도 개선 |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신)<br>• 출생미신고 아동 발굴·지원 강화(강)<br>•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신)<br>• 고의장기적 미신고에 대산 벌칙 강화방안 마련 검토(신) |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실태 기반 정책 수립 | 취약계층 아동 통합적 실태조사<br>취약계층 아동지원기본계획 수립<br>취약계층 아동관련 정책 영향분석 | 3-1)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 • 지역특화 아동정책(지역 아동실태조사, 시도단위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신)<br>• 아동 친화적 정보제공 강화(신)<br>• 장애아동 맞춤형 정보제공(신) |





## [영역4. 건강]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아동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a. 미래 건강 문제 개입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 예방 및 개입 | • 아동 건강권 보호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br>• 디지털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br>• 건강검진을 통한 인터넷 사용 건강문제 진단/발견<br>• 디지털 과몰입 및 사용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실무자 역량 강화 | 2-2) 스마트폰·인터넷 관련 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건강점진 항목 내 스마트폰 사용 포함) | |
| | 과학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 |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아동 이용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br>• 공기정화장치 운영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과학적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br>• 미세먼지 야외활동 가이드라인 개발<br>• 실내체육시설 운영 및 마련 | 2-2)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공기정화장치 관련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 |
| | 아동 스스로 실천하는 감염병 예방 위생습관 | • 손씻기와 양치질 사업 강화<br>• 양치설비 및 손씻기 시설 확보 | 2-2) 아동건강 위협요인 관리 강화 | • 지역기반 아동 일차의료 지원체계 구축(만성질환 예방관리,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강) |
| | 아동발달단계별 예방적 건강관리의 강화 | •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모바일기반 임산부 및 육아지원<br>• 산후조리원 질 관리<br>• 아동대상 건강검진의 강화<br>• 검진과 사후관리 연계 | |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강)<br>•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강)<br>• 건강검진, 상담, 교육 연계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아동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신)/학생건강검진 통합(신)<br>• 6세 미만 아동(영유아) 발달지연 지원 강화(신) |

[영역4. 건강]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아동

21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b. 아동과 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 생활의 실천 | 전자 담배 등 신종 담배의 사용 억제를 통한 아동의 건강습관 형성 | •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유해성 교육 및 홍보<br>• 금연 상담 및 클리닉 운영시 전자담배 포함<br>•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업소 및 구매대행 성인처벌 강화<br>• 위조신분증 사용 담배 구입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등 책임 부여 | 2-2)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사용 억제(담재 판매자 등 단속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 |
| |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구축을 통한 신체활동 강화 | • 생애주기별 생활터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지원<br>• 체육 교과목 실제적 운영<br>• 학교·교육청 단위 스포츠 클럽 운영 확대 | | |
| | 아동의 잘 권리와 적정 수면시간의 확보 | • 적정한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br>• 학원 교습 허용시간 조례 조정 | | |
| | 아동의 잘 먹을 권리와 잘 먹는 습관의 생활화 | • 아침식사 결식률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br>• 조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NGO, 사회적 기업 지원 | | |
| | 아동비만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br>•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br>• 아동 비만 진단 기준 정립 및 국가적 아동 비만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 | | |
| c. 사각지대 없는 건강취약아동의 건강관리 | 만성질환 아동이 불편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 소아당뇨 아동에게 필요한 당뇨성 소모성 재료 급여 대상 확대<br>•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확대 배치, 교육기관, 지자체, 전문기관 간 협업강화 건강취약아동 지원 추진<br>• 어린이집, 학교 등 만성질환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br>• 보건교사, 보건소 전문인력 등을 통한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아동과 소아암 환자 및 치료 종료 아동 반편견 교육 실시 | | • 지역기반 아동 일차의료 지원체계 구축(만성질환 예방관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강화) |
| |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지원 강화 및 전문간병 제공방안 마련 | • 단기 휴식서비스 등 부모 돌봄 부담 완화서비스 실시<br>• 의료법 내 재택의료센터 설치 명시<br>• 중증소아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 2-2) 중증소아환자 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재택의료 지원 강화 | • 재택치료 서비스 강화(강)<br>•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 실시(신) |
| | 장애아동 건강지원 체계 확충 및 강화 |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br>•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등 장애학생 의료적 서비스 강화<br>• 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재활센터 확충 | 2-2)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전문 재활의료기관 확충, 구강진료 강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 | • 장애아동 재활 위한 지역 기반 체계적 재활치료 제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확대)(강화) |
| |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운영비 지원 | • 기존 의료기관이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진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토<br>•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운영비 지원과 인력 확충 | | • 중증·응급 아동 환자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권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신)<br>• 응급 시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신) |

[영역4. 건강]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아동

22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중분류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d. 아동 마음 건강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 학생 대상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 • 초중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br>• 초중고 교사 직무연수 시 정신건강 교육 강화<br>• 정신건강 교육위한 교육 매뉴얼 마련 및 운영 | | • 아동정신건강 실태파악(신) 및 인식개선 추진(강화)<br>• 학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강화)<br>•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속시행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 | 부모의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및 치료 동의 의무화 제도 도입 | • 부모 대상 마음건강 예방 교육 강화<br>• 부모 아동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및 치료 동의 의무화 제도 도입 | | |
| | 아동 마음건강 돌봄체계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대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수 확대 및 운영 예산 지원 현실화<br>• 초등학교 아동 마음건강 돌봄위한 아이존 모형 확대 설치 및 운영 | 2-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정신질환 실태조사 추진 | • 자살관련 보도관리 강화, 민간캠페인, 홍보 강화,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b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확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 |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예방 및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 • 관계부처별 역할 및 권한 명확한 분담<br>• 아동 수요와 상황에 따른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체계 재구조화 | 2-2) 학교-지역사회 간 마음건강 지원체계 간 연계 활성화 | |
| e. 아동 마음 건강 서비스 질 향상 | 신기술 활용 마음건강 돌봄체계 구축 | • AI, 머신러닝, VR 기반 심리상담 기술 R&D 강화<br>• 텍스트 마이닝, 머신러닝 기술 활용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인력 배치<br>• 빅데이터 연계 기반 자살고위험군 아동 및 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 |
| | 민간 아동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의 질 제고 및 가격 접근성 개선 | • 학교 기반 마음건강 돌봄 사업 연계하는 민간 아동 마음건강 돌봄 주체 선정 기준 마련<br>• 민간 서비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 연구실행<br>•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 바우처 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비용 인상 | 2-2) 민간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질·접근성 제고 | |
| | 아동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강화 | • 자살학생 심리부검 DB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발생원인 및 수단분석 통해 근거기반 예방정책 강화<br>•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및 상담, 사후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시도 예방<br>• 자해/자살 영상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 2-2) 자살예방 위한 발생 원인, 수단 분석등을 통해 근거기반 예방 정책 강화 | • 정신건강 위기·취약아동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대책 수립(신)<br>• 심리지원서비스를 보호대상아동에게로 확대 추진 (강)<br>•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치료비 신규 지원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br>• 자살예방센터 연계, 지원 강화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br>• 아동, 청소년 유족 대상 긴급지원 및 보호자 양육지원 강화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영역 5. 실행기반 조성]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3~'27) |
|---|---|---|---|
| 추진과제 | 세부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반영한 추진과제 |
| 헌법상 아동기본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 통합 | • 헌법상 아동기본권 보장<br>• 아동청소년 통합기본법 제정<br>• 아동청소년 보호자 이외 사회구성원들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률조항 신설<br>• 위기아동청소년 연령규정 19세 미만으로 규정 | 1-1) 아동기본법 제정 | • 아동기본법 제정추진(신) |
|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 • 보호필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개정<br>• 학교와 가정을 넘나드는 아동청소년 보호정보체계 구축 | 3-1)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 • 아동 친화적 정보제공 강화(신)<br>• 장애아동 맞춤형 정보제공(신) |
| 아동청소년 정책 연계 및 통합 | • 중앙단위 정책조정기구 통합 필요성<br>• 중앙단위 정책지원기구 통합기구 간 연계 강화<br>•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와 학교복지, 학대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및 사법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 • 범부처 아동정책 협력체계 강화(강)<br>• 지역 특화 아동정책 추진(신)<br>• 시도단위아동정책기본계획 |
| 아동중심 부모교육 및 효과적 전달체계 강화 | • 중장기 부모교육 계획 수립<br>• 부모교육 이수와 급여지급 간 연계 검토 | | |





### 〈생애주기별 타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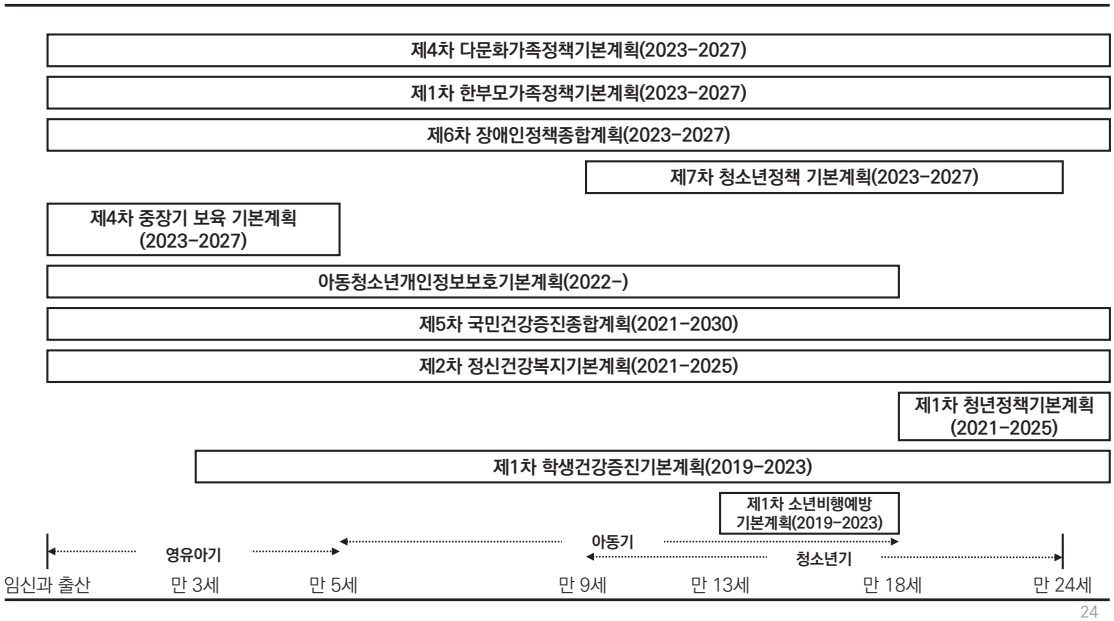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타 기본계획 과제 간 영역 분석〉

| 영역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4) |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 (23-27)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3-27) |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23-27) |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3-27)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3-27)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1-30)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19-23) |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21-25) |
|---|---|---|---|---|---|---|---|---|---|
| 권리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아동 참여와 표현의 기회 확대) |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강화 |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 | | | |
| 발달 (여가)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미래역량개발) | 모든 아동 발달 성장 지원(기초학력 향상·학습격차해소, 돌봄·활동 지원)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고도화<br>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여가 확대<br>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br>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공공보육 확대·내실화, 보육 사각지대 예방) | | | |
| 돌봄·양육 지원 | 공동한 출발 국가책임강화(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br>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 모든 아동 발달 성장 지원(다양한 방식의 양육지원, 유보통합,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양질의 활동과 체험이 있는 돌봄·교육 보장) | |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 (생계지원, 주거안정)<br>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 | |
| 보호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 데이터활용 청소년지원망 구축<br>청소년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 |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br>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 | | | | |
| 안전 재난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폭력과 사고)<br>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 | | 재난안전 보장 강화 | | | | |
| 건강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건강 위협 요인) | 모든 아동 발달 성장 지원(아동기 집중 투자, 아동 의료서비스), | | 한부모 가족생활 안정지원(건강관리 지원) |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 | 건강생활실천<br>정신건강 관리<br>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br>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 관리,<br>안구집단별 건강관리 |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br>건강서비스 확대<br>건강한 교육환경 제공 | 정신의료서비스/인프라 선진화<br>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br>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 실행기반 | | 아동중심정책 추진 기반 마련 (아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 한부모 가족지원 기반 구축 | 장애인 정책 추진기반 강화 | 보육지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br>안정적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지원체계, 전달체계 고도화) |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건강 지원체계 강화 |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아동정책 영역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들을 살펴보는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음**

✓ 대상 기간: 2012.08.05. ~ 2023.07.22.

제1시기 : 제1차 기본계획 준비 시기 (20120805~20150331)
제2시기 :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 (20150401~20200831)
제3시기 :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 (20200901~20230722)

✓ 분석 대상: 종합일간지 주요 언론사인 경향, 조선, 중앙, 한겨레 대상으로 하며,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문 수집

✓ 수집 방법

➢ Python의 BeautifulSoup 및 Selenium 패키지를 활용한 크롤러 활용
➢ 검색 키워드: "아동 정책"(아동 그리고 정책) ➢ 9,948건 기사문 추출

✓ 분석 방법
: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최종적으로 **7,382건**으로 기사문 선별

-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인사 관련 기사문 배제**
  *"오늘의 인사 2023년 7월 14일"(경향신문)*
- **해외이슈로만 구성된 기사문 배제**
  *"6살·8살 어린이 수갑채워 체포한 美경찰관 논란" (중앙일보)*
-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기사문 배제**
  *"6월 27일 궂긴 소식", "9월 9일 알림" (한겨레)*
- **기사문에 '아동' 단어는 포함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동정책과 관련 없는 기사문 배제**
  *"지방직 9급 시험에서 수학·과학 빠진다…전문과목 필수화"(중앙일보)*
- **전혀 무 관련한 기사문 배제**
  *"임대차 3법 일주일, 서울 전셋값 올 들어 최대폭 뛰었다" (동 이름인 '미아동' 포함) (한겨레)*
- **홍보성 기사문 배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학년도 전반기 신입생 모집(아동복지학과)"(한겨레)*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아동정책 영역 흐름 분석 결과

: 1시기(2012년~2015년) 총 기사 건수=1,103건




27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아동정책 영역 흐름 분석 결과

: 2시기(2015년~2020년) 총 기사 건수=3,383건




28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아동정책 영역 흐름 분석 결과

: 3시기(2020년~2023년) 총 기사 건수=2,896건




29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1. 기존 아동정책 분석 및 전망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아동정책 영역 흐름 분석 결과(2012년~2023년)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강조되는 '권리적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점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등장함
- 아동의 여가놀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나타났음에도 아동 정책 영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낮아보였음. 그럼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슈는 필수적임
-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시기를 막론하고 매우 높은 순위를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돌봄을 제공하는 양육자 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또는 조직)를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아동 보호에 대한 강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정형 보호라는 기본 전략 또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 안전 이슈는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도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부터 범죄나 위기 등 다양한 안전 관련 단어들의 빈도에서 변화가 나타남.
- 이 외에도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의 등장이 있었음: ex) '서비스', '지역'

**'권리', '여가(놀이)', '건강', '발달(교육)', '돌봄', '보호', '안전', '실행기반'이 중점 고려 영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30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절차〉

| 절차 | 내용 |
|---|---|
| 문헌검토 및 조사지 개발 (4~5월) | - 기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성과자료 검토<br>- 국내외 문헌, 행정자료를 통한 아동정책 관련 현황 분석 |
| 조사대상 섭외 (5~6월) | - 패널 구성<br>연구진 내 영역별 전문가 추천 (39명) → 연구진 재검토 및 논의 (26명) → 참여 동의 확정 (24명) → 델파이조사 참여 (22명) |
| 델파이 조사 (1차) 실시 (6.19.~7.13.) | - 조사시기 : 6.19.~7.13.<br>- 조사대상 : 22명(응답률 100%)<br>- 조사내용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점검 및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영역에 관한 의견 |
| 델파이 조사 (1차) 분석 및 조사지 작성 (7~8월) | - 모든 항목 코딩하였으며, 정량적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값 산출, 정성적 조사 결과에 대해 내용 분석함<br>- 연구진과 분석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재분류함<br>-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2차) 조사 문항 작성 |
| 델파이 조사 (2차) 실시 (8.4.~8.16.) | - 조사시기 : 8.4.~8.16.<br>- 조사대상 : 22명(응답률 100%)<br>- 조사내용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영역 및 중점과제 방향성에 관한 의견(각 문항 및 영역에 대한 적절성, 시급성, 중요성 파악) |
| 델파이 조사 (2차) 분석 및 주요 결과 도출 (8~9월) | - 영역별 중점과제 및 중점과제 간 우선순위 도출<br>- 연구진과 분석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재분류함<br>-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점영역 및 중점과제 제안 등 주요 결과 도출(주요 결과를 토대로 제4장에서 중점과제 방향 제안) |

〈참여자(총22명) 성별 및 전공분야〉

| 구분 | | 인원수(명) | 비율(%) |
|---|---|---|---|
| 성별 | 남 | 10명 | 45.5 |
| | 여 | 12명 | 54.5 |
| 분야 | 복지 | 15명 | 68.3 |
| | 교육 | 1명 | 4.5 |
| | 심리 | 1명 | 4.5 |
| | 법 | 1명 | 4.5 |
| | 의료·보건 | 4명 | 18.2 |

31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중점과제 방향성에 관한 의견〉

| 중점영역(안) | 중점과제 방향성 |
|---|---|
| 권리 | 1-1.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및 법적기반 강화 |
| | 1-2. 아동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
| | 1-3.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조성 |
| 여가 · 놀이 | 2-1. 놀이 및 여가, 휴식 시간 및 공간 확보, 인프라 개선 |
| | 2-2. 건강한 미디어 활용정책 강화 |
| | 2-3. 여가 및 놀이에 관한 아동의 주체성 및 자발성 강화 |
| 발달 · 교육 | 3-1. 발달 및 학습지원 강화 |
| | 3-2. 취약아동 발달지원 강화 |
| | 3-3.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 |
| | 3-4. 교육소외자 학습권 보장 |
| | 3-5. 미래 핵심역량 강화 |
| 돌봄 | 4-1. 가정 내 자녀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 | 4-2. 초등돌봄 통합 및 개선 |
| | 4-3. 일원화된 마을돌봄-학교돌봄 체계 구축 |
| | 4-4. 돌봄자 역량강화 및 지원 |
| | 4-5. 돌봄 관련 수당 통합 및 개선 |
| 보호 | 5-1.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
| | 5-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강화 |
| | 5-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강화 |
| | 5-4. 입양에 관한 공적책임 강화 |
| | 5-5.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 구축 |
| | 5-6. 위기청소년 지원 및 우범소년 제도 개선 |
| | 5-7. 아동 주거권 보장 및 강화 |
| 안전 | 6-1.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강화 |
| | 6-2.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
| | 6-3.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 및 안전 강화 |
| | 6-4.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부터 아동보호 정책 마련 |
| 건강 | 7-1. 기본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 강화 |
| | 7-2. 정신건강 고위험군 문제예방 및 인프라 강화 |
| | 7-3. 유해물질 과의존 예방 및 교육 |
| | 7-4.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교육 |
| | 7-5. 영유아기 건강지원 강화 |
| | 7-6. 장애아동 건강관리 강화 |
| 실행 기반 | 8-1. 아동·청소년 법체계 정비 |
| | 8-2. 아동중심의 일원화된 중앙-시도-시군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 8-3. 아동정책 거버넌스 마련 필요 |
| | 8-4. 아동정책 실행 및 평가체계 효율화 |
| | 8-5.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활용 |
| | 8-6. 아동복지종사자(인력) 전문성 강화 |

32

❖ 중점과제 방향의 중요성 및 시급성_영역별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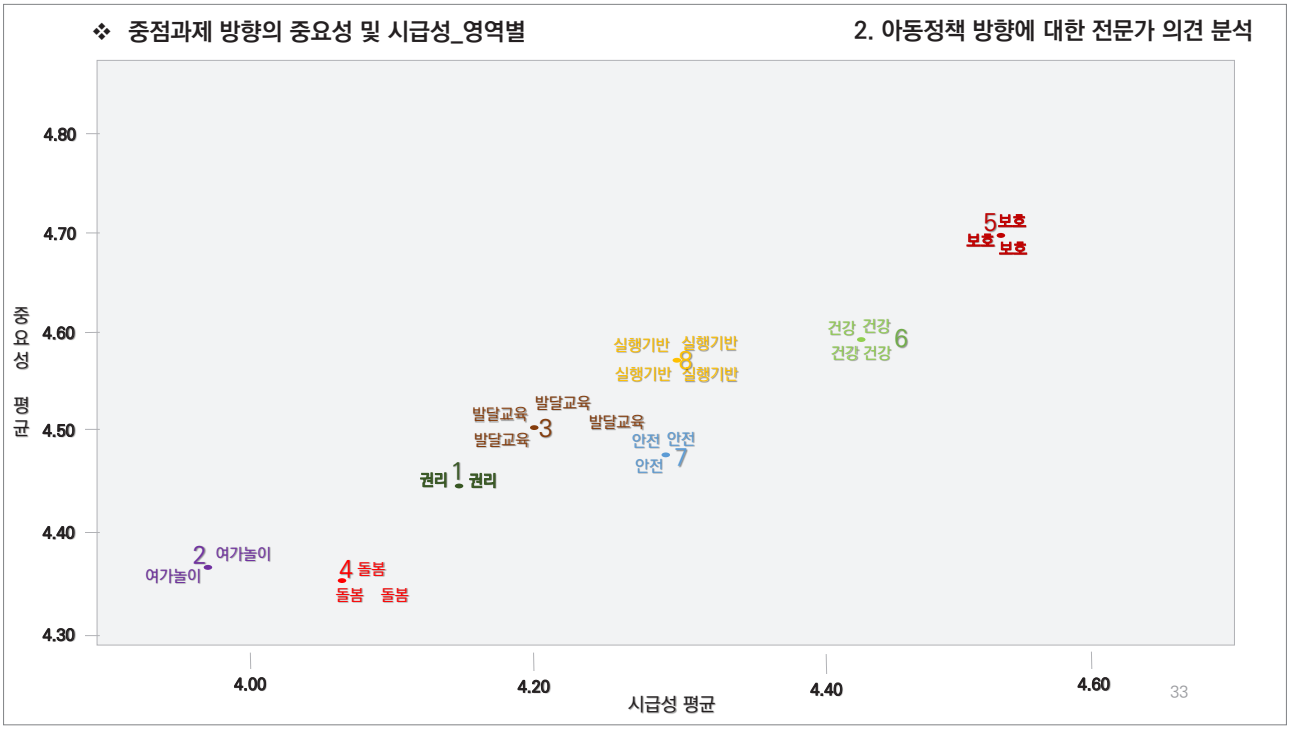


33

❖ 중점과제 방향의 중요성 및 시급성_중점과제별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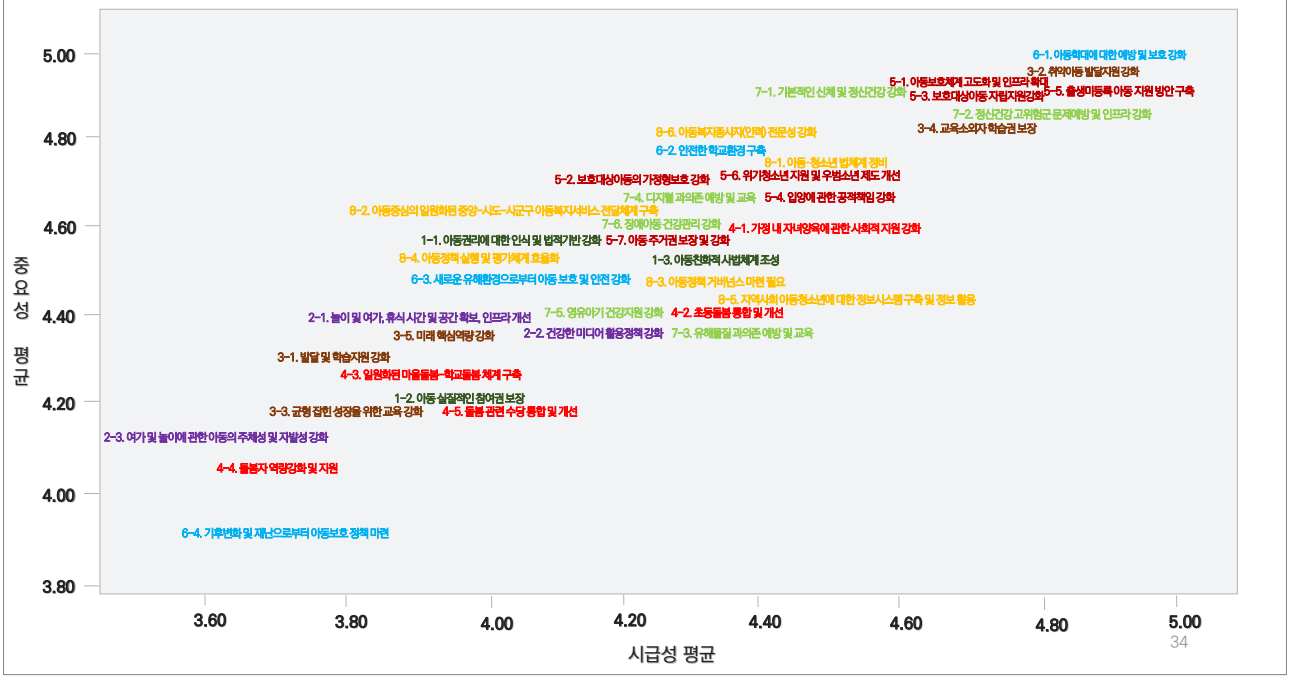


34

## 제3장 아동정책 진단과 전망

### 2. 아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 중요성 높음 | 중요성 낮음 |
|---|---|---|
| 시급성 높음 | 19개<br>3-2. 취약아동 발달지원 강화<br>3-4. 교육소외자 학습권 보장<br>4-1. 가정 내 자녀양육에 관한 사회적 지원 강화<br>5-1.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br>5-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강화<br>5-3.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강화<br>5-4. 입양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br>5-5.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 구축<br>5-6. 위기청소년 지원 및 우범소년 제도 개선<br>6-1.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강화<br>6-2.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br>7-1. 기본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 강화<br>7-2. 정신건강 고위험군 문제예방 및 인프라 강화<br>7-4.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교육<br>7-6. 장애아동 건강관리 강화<br>8-1. 아동·청소년 법체계 정비<br>8-2. 아동 중심의 일원화된 중앙-시도-시군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br>8-6. 아동복지종사자(인력) 전문성 강화 | 5개<br>4-2. 초등돌봄 통합 및 개선<br>6-3.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및 안전 강화<br>7-3. 유해물질 과의존 예방 및 교육<br>8-3. 아동정책 거버넌스 마련 필요<br>8-5.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활용 |
| 시급성 낮음 | 2개<br>1-1.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및 법적기반 강화<br>5-7. 아동 주거권 보장 및 강화 | 14개<br>1-2. 아동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br>1-3. 아동친화적 사법체계 조성<br>2-1. 놀이 및 여가, 휴식 시간 및 공간 확보, 인프라 개선<br>2-2. 건강한 미디어 활용정책 강화<br>2-3. 여가 및 놀이에 관한 아동의 주체성 및 자발성 강화<br>3-1. 발달 및 학습지원 강화<br>3-3.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br>3-5. 미래 핵심역량 강화<br>4-3. 일원화된 마을돌봄-학교돌봄 체계 구축<br>4-4. 돌봄자 역량 강화 및 지원<br>4-5. 돌봄 관련 수당 통합 및 개선<br>6-4. 기후변화 및 재난으로부터 아동보호 정책 마련<br>7-5. 영유아기 건강지원 강화<br>8-4. 아동정책 실행 및 평가체계 효율화 |

35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 아동의 날

# 제4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1. 권리주체
2. 여가·놀이
3. 발달·교육
4. 돌봄
5. 보호
6. 안전
7. 건강
8. 실행기반

36

##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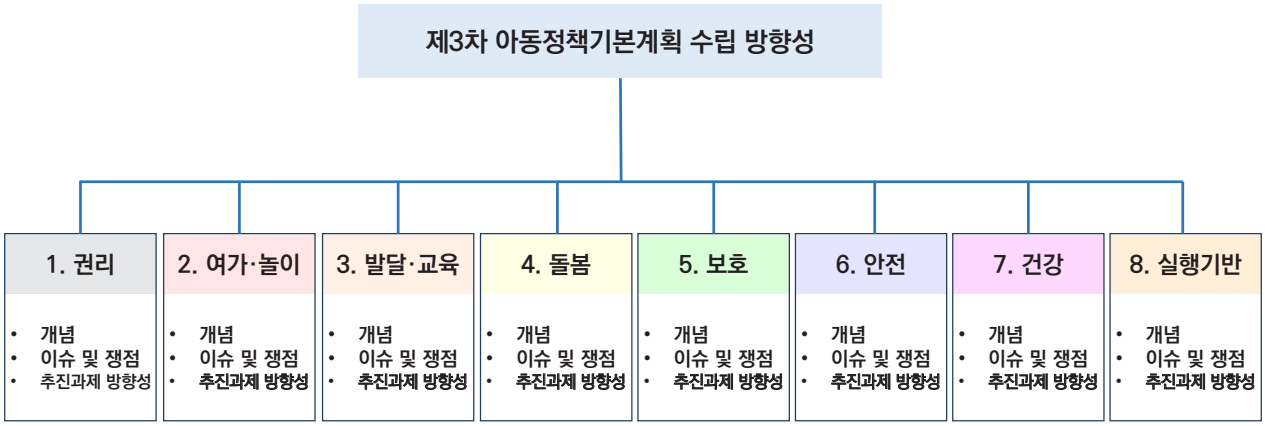


37



### 1. 권리(주체)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권리 |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적 기반 마련 | • 아동권리교육 활성화<br>•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인식 증진<br>•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아동의 인식 증진<br>•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
| | • 아동 실질적 참여권 보장 | • 지자체별 아동의회, 아동총회 등 참여기구의 활성화 및 참여 아동의 다양화<br>• 지자체 아동 참여기구의 정책제언 반영 비율 향상 |
| | • 아동 친화적 사법체계 조성 |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제도 활성화<br>•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 활성화<br>• 범죄 연루된 아동을 위해 사건처리절차에서 아동 지위보장(예: 아동사법전문법원 설치)<br>• 경범죄 아동의 사회복귀 돕기 위한 다이버전 제도 적극 활용<br>•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

38

## 2. 여가·놀이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여가 · 놀이 | • 여가 및 놀이에 관한 아동의 주체성 및 자발성 강화 | • 놀이 관련 아동의 선택권 보장<br>• 교육과정 내 선택적 놀이활동시간 확보 |
| | • 놀이 및 여가, 휴식 시간 확충 | • 가정 내에서 학령기 단계별로 놀이, 휴식 및 활동 등의 시간 확보되도록 부모 및 사회적 인식 개선<br>• 보육·교육 시설에서 놀이 및 여가, 휴식시간 확충 |
| | • 놀이 및 여가, 휴식 공간 및 인프라 확충 | • 지역사회 놀이 및 여가 인프라(놀이 및 여가 시설 확충, 예산 확대 등) 확대<br>• 놀이혁신선도사업의 전국 확산 |
| | • 아동의 특성별 놀이 및 여가 지원 강화 | • 아동 연령대(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별 발달 특성과 놀이 및 활동 욕구에 따른 차별적 지원 강화<br>• 장애 및 특수욕구에 따른 지원 강화 |
| | • 디지털시대 아동의 여가 및 놀이 활성화 | • 놀이 및 여가 매체의 다양화<br>• 연령대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제한 기준 마련 및 교육 활성화 |
| | • 건강한 미디어 활용정책 강화 | •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보호정책 강화<br>•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 보호지침 준수 점검<br>• 온라인 위험상황 신고 및 차단 대응체계 마련<br>•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

39

## 3. 발달·교육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발달 · 교육 | • 코로나19 경험 아동의 발달 및 학습지원 강화 | • 코로나19 경험 아동의 균형된 성장 및 발달 기회의 보장<br>•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발달환경의 변화를 중장기정책에 반영 |
| | • 공공교육의 품질 향상 및 강화 | •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br>•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도모<br>• 공교육 전달자인 교사의 직업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
| | • 교육소외자 학습권 보장 | • 교육소외자(질병이 있는 아동, 비행청소년, 구금시설에 수용된 소년사범, 학업중단아동, 중도입국아동, 난민을 포함한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br>• 대안교육 등 학습권 보장 |
| | •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교육 강화 | • 체육·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br>• 아동 특성별 체육·문화예술교육의 사각지대 완화 |
| | • 취약아동 발달 지원 강화 | • 장애아동 교육·보육·발달지원 강화<br>• 발달 지연에 대한 서비스 지원<br>• 이주배경아동 및 난민 아동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발달지원 |
| | • 미래역량의 다양성 추구 및 지원 강화 | •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달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정책 마련(예: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도 증가, 디지털 교수-학습방식 도입)<br>•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인력으로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진로교육 및 탐색, 직업교육 및 훈련 기회 강화 |

40

## 4. 돌봄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돌봄 | •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지원 강화 | • 아동의 연령, 욕구, 발달 정도를 고려한 양육지원<br>• 나홀로 양육, 고립 양육 위험있는 미혼모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에 대한 추가적 돌봄 지원<br>• 성별 불평등 양육 해소 |
| | • 드림스타트 역할 확대 | • 부모의 양육역량 관련 지원 강화<br>• 경제적 취약성을 넘어 사회적, 정서적 취약성 고려<br>•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와의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 |
| | • 부모교육 현실화 | • 부모교육의 다양화, 세분화<br>• 부모교육 접근성 강화 |
| | • 초등돌봄 통합 및 개선 | •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br>• 중학생 및 고등학생 돌봄 대응책 마련 |
| | • 마을돌봄-학교돌봄 상호협력체계 구축 | • 학교돌봄- 마을돌봄 병행구조, 상호협력 체계 방안<br>•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
| | • 돌봄 노동자 역량 강화 및 지원 | •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br>•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br>•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방향에 대한 영향 검토 |
| | • 돌봄 관련 수당 통합 및 개선 | • 부모급여 제도 도입의 영향 분석<br>• 가정양육수당 효과 분석 |

41

## 5. 보호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보호 | • 아동보호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 • 아동보호체계 인력 협력 강화, 정보체계 통합<br>• 아동보호전담인력 근무조건 개선 및 인력확충<br>• 양육시설 · 그룹홈에 대한 중앙 차원의 지원 기능 강화 |
| |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보호 강화 | • 가정위탁지원 인력 확충<br>• 전문가정위탁 활성화<br>• 가정위탁의 사례관리 전문화 |
| | •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 | •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강화<br>•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 | •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 헤이그협약 비준<br>•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실행기반 마련<br>• 국내입양 활성화 |
| | •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방안 구축 |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br>• 미혼모자시설 인프라 확충<br>•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및 원가정 보호 촉진<br>• 다양한 가정위탁제도 확충 |
| | • 위기청소년 지원 및 우범소년 제도 개선 | • 소년법 개정을 통해 우범소년 조항 폐지<br>• 소년교도소 환경 개선<br>• 소년교도소 증원<br>• 형사책임 연령 관련 국제기준 준수 필요<br>• 벌칙주의 접근이 아닌 복지 및 치료접근 전환 필요 |
| | • 아동 주거권 보장 및 강화 | • 아동 주거 빈곤 실태조사 정기화<br>•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사생활보호 가능한 주거환경 구비<br>• 탈시설(가정형 주거로의 전환)정책 추진<br>• 다자녀 저소득 가구, 조손가정,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

42

## 6. 안전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안전 | •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강화 | •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br>• 예방 관련 조기 개입<br>•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br>• 아동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
| |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 안전한 교육공동체 만들기<br>• 엄벌주의 지양, 교육 자주 및 전문성 강화 |
| | • 안전교육 강화 | •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br>• 아동 안전 관련 당사자 양성·교육 |
| | • 유해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영역 재구조화 및 통합적 개입 근거 마련 | • 유해환경, 유해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br>•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br>• 범부처 간 유기적 연계협력 체계 구축 |
|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합대책 마련 |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실태 조사<br>•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강화 |
| | • 아동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 • 아동 중심 재난관리 원칙을 적용한 재난대응체계 구축<br>• 기후 변화 고려하여 아동보호 접근(climate-informed child protection) 반영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 | • 아동 안전 관련 통계 생산 | • 아동 특화 안전 통계 생산(예: 아동 연령에 따른 세분화된 통계 등)<br>• 자료 기반 안전정책 수립 |

43

## 7. 건강

제4장 아동정책기본계획 방향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건강 | • 기본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 강화 | •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검진 강화<br>• 건강한 식사,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br>• 신체건강: 건강 관련 환경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br>•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련 환경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
| | • 정신건강 고위험군 문제 예방 및 인프라 강화 | • 아동 불안, 우울, 자살, 자해 고위험 아동의 발굴, 조기 치료 및 개입 강화<br>• 영상매체 및 온라인 정신건강 보호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br>• 아동·청소년 정신병원 사회적 입원 방지 대책 마련 |
| | • 유해물질 과의존 예방 및 교육 | • 흡연, 음주, 도박 등 중독예방<br>• 흡연, 음주, 도박 영상매체 및 온라인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br>• 마약, 약물중독, 도박 등 신종 유해물질 이용에 관한 대책 강화 |
| | • 디지털 과의존 예방 및 교육 | •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치료<br>• 숏츠 등 영상매체 과의존 예방 |
| | • 영유아기 건강지원 강화 |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생애초기 지원 강화<br>• 영유아기 취약계층 지원 강화<br>• 질병 예방을 위한 모유 수유 지원 강화 |
| | • 장애아동 건강관리 강화 | • 경계선 지능장애아동, ADHD 등 등록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br>•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 | • 아동 관련 의료자원 확보 | • 의료접근성에 대한 개선<br>• 중증질환아동을 위한 지원<br>• 아동 중심 의료체계 마련 |
| | • 아동 건강형평성 향상 및 근거생성체계 마련 | •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아동의 건강증진 및 의료이용의 격차 해소<br>• 아동건강발달에 대한 국가 주요 아동건강발달지표 선정 및 통계산출체계 마련 |

44

## 8. 실행기반



| 중점 영역 | 추진과제 방향성 | 추진과제 방향성 내용 |
|---|---|---|
| 실행 기반 | • 아동·청소년 법체계 정비 | • 다양한 연령대로 분리된 아동·청소년 법체계를 일원화<br>•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보호 근거 기본법 제정(아동기본법 마련)<br>•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동일한 표준 기준 마련 |
| | • 아동 중심의 일원화된 중앙-시도-시군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공공 및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중앙-시도-시군구까지 구축<br>• 아동정책의 일원화되고 종합적 조정 위해 아동 중심 중앙조직(예: 아동청) 설립<br>• '시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 |
| | • 보호 지속성 담보하는 지역단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최전선 행정 및 집행조직인 읍면동 고려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br>• 지자체 내 단일한 게이트웨이 구축하여 '예방 및 발굴-의뢰-서비스연계 및 제공-사후관리-자립지원'의 연속적 서비스체계 마련<br>• 아동복지팀 총괄 기능 강화<br>• 지자체 아동 관련 부서(보호 및 지원아동 대상 서비스 모두 포함)및 인력 통합하여 아동개별단위 보호체계 구축 |
| | • 아동정책 거버넌스 실질적 구조화 |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br>• 부처별로 분산된 아동보호서비스 또는 지원기구 간 협업 기반 마련(업무협약, 가이드라인, 교육 및 훈련, 회의체 구성 등) |
| | • 아동정책 수립-시행-평가-환류 체계 효율화 | • 아동정책기본계획-아동정책시행계획 간 연결 가능한 평가지표 구성<br>•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시행계획 사이의 환류 체계 강화<br>•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원조직(아동권리보장원) 투자 확대<br>• 아동 참여 기반 정책 추진 위한 절차 마련 및 실제 가동 |
| | • 아동·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 활용 | • 아동 개인 중심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설계<br>• 아동 관련 통계의 체계적 총괄 관리 방안 마련(예: 아동정책조정위의 전문위로서 통계생산관리조정위 신설 등 상시적 조직 설립)<br>• 아동 관련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간 연계 노력 및 품질 관리 |
| | • 아동복지 종사 인력 적정규모 확보 및 전문성 강화 | • 아동복지서비스 분야 종사 인력 적정규모 산출에 대한 정기적, 지속적 연구 및 지원<br>• 적정 아동복지 인력 배치<br>• 아동복지 현장 변화 반영한 아동복지 종사자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제공<br>• 아동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 동기 강화 지원 확대 |
| | • 국가보호 필요 아동 개념 재설정 및 아동 개별 단위로 관리 책임제 방식 도입 | • 보호유형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국가보호필요아동으로 개념화하여 아동 중심의 연속적이고 통일된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마련<br>• 경제적 취약성 뿐만 아니라 발달적 취약성 고려하여 보호아동 범위 설정<br>• 시군구 단위 아동보호팀에게 아동 개별 단위 관리 책임제 방식 도입 |
| | • 아동정책 및 서비스 예산 확대 | • 의료 및 교육서비스에 투자 확대<br>• 취약계층 아동 위한 서비스 투자 확대<br>• 아동 참여기반 정책 추진 절차 마련 및 운영에 투자 확대<br>•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투자 확대 |

45



## 향후제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올바른 이름을 붙인다면, 더 나은 길이 놓일 것이다"*

- ✓ 8개 영역 및 53개 추진과제는 아동정책 수립 시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각 영역은 상호배타적일 필요가 없음
- ✓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추진하려는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의 방향성에 따라 영역 간 조정과 병합이 필요할 수 있음
- ✓ 이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음

4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65 아동의 날

# 감사합니다

47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경과 보고

정정희 차장(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아동정책시행계획('22년) 평가

## 경과 보고

# 시행계획('22년) 평가 개요

##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9개), 중점 추진과제(30개), 세부과제(73개) 제시

| 추진전략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
| 세부 추진전략 |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br>• 생활 속 아동권리 실현 |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br>•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br>•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 체계 구축<br>•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br>• 재난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4.)」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평가방법) 15개 중앙부처 및** 17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지표에 따라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자문단**'이 평가
- **(추진절차)**

| 설명회·사전컨설팅 | 평가자료 검토 및 확인 | 사전평가·본평가 | 이의·소명 | 평가 결과 확정 |
|---|---|---|---|---|
|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자문단)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권리보장원 (평가자문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 23.1.~2. | 23.2.~5. | 23.6.~8. | 23.8~9. | 23.9~10. |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 구분 | 평가지표 | ('21년) 배점 | ('22) 배점 |
|---|---|---|---|
|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1-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5점 | - |
| | 1-2.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의 적절성 | 5점 | 5점 |
| | 1-3. 영역별 사업 구성의 적합성 | 5점 | 5점 |
| 2. 이행의 충실성 | 2-1.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0점 | 10점 |
| | 2-2.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 | 10점 | 10점 |
| 3. 성과달성도 | 3-1. 아동 권리 실현 추진체계 구축 정도 | 5점 | 10점 |
| | 3-2.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 5점 | 10점 |
| | 3-3. 아동친화적인 놀이·여가 환경 조성 정도 | 5점 | 5점 |
| | 3-4.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도 | 5점 | 5점 |
| | 3-5.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도 | 20점 | 20점 |
| | 3-6. 가정위탁 활성화 정도 | 5점 | 5점 |
| | 3-7. 온종일돌봄 이용률 | 5점 | 5점 |
| | 3-8.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정도 | 10점 | 5점 |
| | 3-9. 지자체 자율지표 | 5점 | 5점 |

# 시행계획('22년) 지방차치단체 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 관련 예산 현황

- 예산규모: 17개 지자체 약 10조원 규모
  - 집행액 기준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부산, 인천, 광주, 전북, 제주, 울산, 전남, 대구, 강원, 세종 순
  - 지자체별 예산 투입 규모에 편차 큼
- 평균 예산 집행률은 96.9%

##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 지방자치단체 '22년 시행계획 평가결과 67.59점임
  - 전년 대비 11.6점 상승 → 지자체의 아동정책시행 상황에 긍정적 변화 감지
  -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지표가 91.76점으로 가장 높고,
    '온종일돌봄 이용률' 지표가 23.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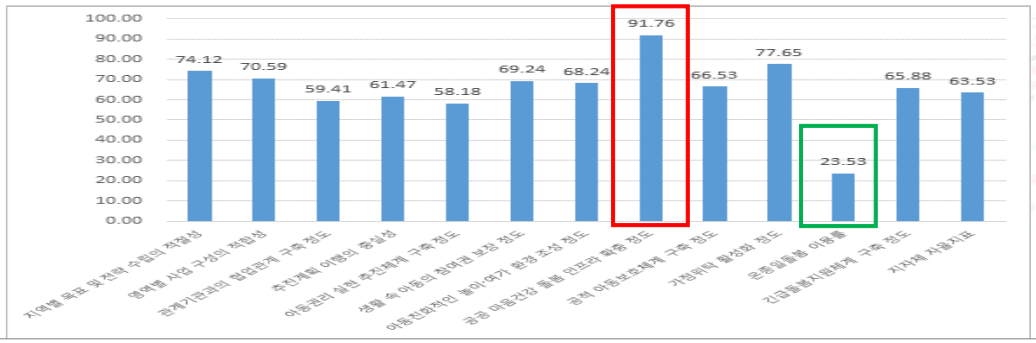


## 지자체별 평가결과(성과달성도별)

기본계획 성과지표

### 아동권리실현 추진체계 구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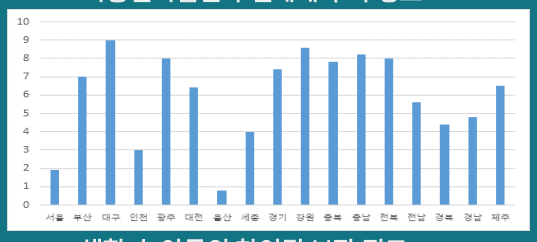


###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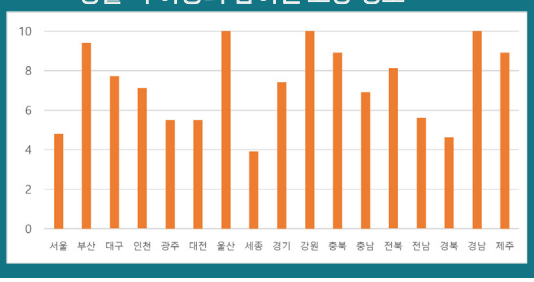


###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지자체별 평가결과(성과달성도별)

###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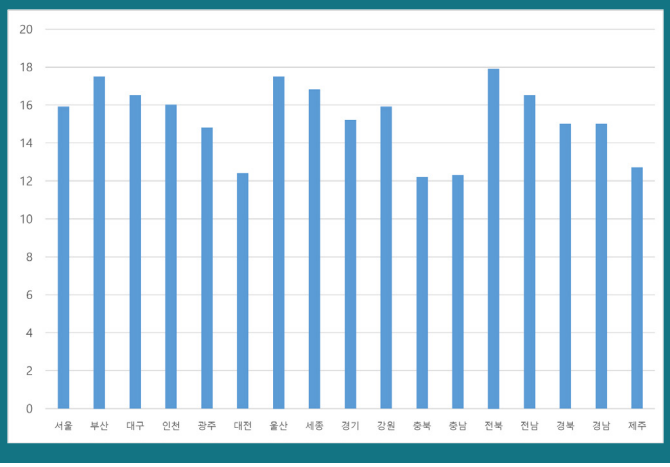


기본계획 성과지표

- 공적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완비 **111%**

**초과달성** ('24년 목표 100%)

## [참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달성도

| | | 수립 전('19) | 달성도('21) | 달성도('22) | 목표치('24) | 달성여부 |
|---|---|---|---|---|---|---|
| 총괄 | 삶의 만족도 | OECD 28개국 최하위(6.57점, '18) | 2023년 통계생산 | 2023년 통계생산 예정 | OECD 최하위 탈피 7.0점 이상 | - |
| |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 | 2024년 이행보고서 제출 | **92.3%('23)** | 90% 이상 (불수용 분야 제외) | 달성 |
| 권리 |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 | 77.1% ('19) | 82.4%('21) | **82.9%('22)** | 80.0% | 달성 |
| |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 | 77.3% ('19) | 82.2%('21) | **80.6('22)** | 80.0% | 달성 |
| 발달 |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 비율 | 76.5% ('19) | 75.6%('21) | 73.4%('22) | 80.0% | 미달성 |
| | 여가시간 만족도 (13~19세) | 43.3% ('19) | 47.9%('21) | - | 47.0% | 달성 |
| | 주관적 건강수준 | 70% ('19) | 64.7%('21) | 63.1%('22) | 73% | 미달성 |
| | 영유아 건강검진율 | 74.5% ('18) | 83.0%('20) | **87.1%('21)** | 82% | 달성 |
| |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1명('16)*OECD 21위 | 0.4명('20) | **0.4명('21)** | 0.6명 *OECD 7위 | 달성 |
| |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폭력 피해율 | 8.5% ('18) | 5.9%('20) | 16.3%('22) | 8.0% | 미달성 |
| | 재학대 판정률 | 10.3% ('18) | 14.7%('21) | 16.3%('22) | 7.7% | 미달성 |
| 보호 |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 (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 - | **110%('21)** **664명(목표) →730명(실적)** | **111%('22)** **765명(목표) →852명(실적)** | 100% | 달성 |
| | 가정위탁 보호율 | 23.9% ('18) | 29.9%('21) | **35%('22)** | 37% | 미달성 |
| | 공공보육 이용률 | 28.4% ('19) | 34.3%('21) | 36%('22) | 40%('21) | 미달성 |
| | 아동결핍지수 *전체 평균 지수는 1.58점 | 4.50점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18) | 2023년 통계생산 예정 | - | 4.00점 | - |

출처 : 민소영 외(2023).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권리보장원.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23 아동정책영향평가

# 경과 보고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개요

**개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표준화된 자체평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자치법규 포함),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

**추진 근거**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3**

**수행 주체**

| | |
|---|---|
| 소관부서 |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아동정책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관련 사업·정책 담당 부서 |
| 사업부서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대상(법령, 계획, 사업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사업부서 |

**필수 평가 대상**

| | |
|---|---|
| 지정주제 | 매년 상이하게 추진되는 전문평가 대상정책과 관련된 주제<br>**①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②진로교육 정책, ③아동 의료보장 정책, ④아동 주거지원 정책** |
| 비지정주제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으로, 위 지정주제와 무관하게 선정 가능한 주제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개요

**평가 지표**

| 영역/항목 | | 세부지표 |
|---|---|---|
| 아동 권리에 대한 법체계 |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법규, 여타 법규 및 조례와의 관계 여부 |
| 아동의 4대 기본권 | |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과의 관계 여부 |
| 일반원칙 | 비차별 원칙 | 아동 배제 우려 검토 여부(접근성, 비용부담 등), 검토후 배제될 우려가 있는 아동 유무 |
| 일반원칙 |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검토 여부,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유무 |
| 일반원칙 | 아동 의견 존중 원칙 | 아동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여부 |
| 일반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검토 여부, 집단 간 이해충돌 여부 |

**평가 절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검토 | 자체평가 반영계획 수립 | 자체평가 이행확인 |
|---|---|---|---|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 23.7.~8. | 23.9.~10. | 23.10~11. | 24. 상반기(예정)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지자체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
| | 지자체 수 | 평가 건수 | 지자체 수 | 평가 건수 |
| 지자체(광역) | 9 | 29 | 14 | 50 |
| 지자체(기초) | 131 | 480 | 166 | 569 |
| 지자체(광역+기초) | 140 | 509 | 180 | 619 |

**180개 지자체 619건(전국 지자체 74.1% 실시, 전년대비 평가 건수 21.6% 증가)**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평가대상별(필수/선택) 자체평가 실시 현황**

| | 총 합계 | | 필수평가대상 | | 선택평가대상 | |
|---|---|---|---|---|---|---|
| | 지자체(광역) |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지자체(기초) |
| 지자체 수 | 14 | 166 | 12 | 145 | 8 | 90 |
| 평가 건수 | 50 | 569 | 31 | 258 | 19 | 311 |
| 합계 | 180개 지자체 619건 | | 157개 지자체 289건 | | 98개 지자체 330건 |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평가대상 유형별(법령/계획/사업) 자체평가 실시 현황**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
| | 평가 건수 | 비율(%) | 평가 건수 | 비율(%) |
| 법령(자치법규 포함) | 65 | 12.8 | 64 | 10.3 |
| 계획 | 21 | 4.1 | 21 | 3.4 |
| 사업 | 423 | 83.1 | 534 | 86.3 |
| 합계 | 509 | 100.0 | 619 | 100.0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지정주제별 자체평가 실시 현황**

| 구분 | 필수 평가대상 중 지정주제 총 131개 지자체 147건 | | | |
|---|---|---|---|---|
| |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 진로교육 | 아동 의료보장 | 아동 주거지원 |
| 지자체 수 | 52 | 61 | 18 | 10 |
| 평가 건수 | 53(36.0%) | 62(42.2%) | 22(15.0%) | 10(6.8%) |
| 주요정책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br>• 드림스타트 심리상담, 정서행동 프로그램<br>•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 • 방과후 프로그램<br>• 진로체험 프로그램<br>• 진로교육/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 | • 구강보건사업<br>• 예방접종 사업<br>• 건강보험료 지원 등 | • 주거비 지원<br>• 전세임대 지원<br>• 양육시설 설치 및 양육환경(주거) 개선 프로그램 등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 자체평가 검토내용 및 항목

| 구분 | 검토내용 | 검토항목 |
|---|---|---|
| 충실성 | • 자체평가서 충실성 여부(정량적 표기)<br>• 근거자료 제출 여부 | ①아동정책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
| 구체성 | • 자체평가서 구체성 여부<br>• 총평의 자세한 작성(정성적 기술) | |
| 부합성 | • 평가항목별 점검내용<br>• 점검내용에 근거한 자체개선안 제시 여부 | ②비차별의 원칙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br>③생존과 발달의 권리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br>④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br>⑤아동 최선의 이익 세부 항목들에 대한 검토 |
| 적절성 | • 자체개선안 체계적 수립 및 총평의 적절성 |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 자체평가 검토결과

| 구분 | 검토결과 | | | 합계 |
|---|---|---|---|---|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안 | |
| 지자체 수 | 4 | 7 | 155 | 157 |
| 건수(%) | 4(1.4%) | 7(2.4%) | 278(96.2%) | 289(100.0%) |

## 지정/비지정주제별 자체평가 검토결과

단위: 건수(%)

| 구분 | 검토결과 | | | 합계 |
|---|---|---|---|---|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안 | |
| 지정주제 | 1(25.0%) | 4(57.1%) | 142(51.1%) | 147(50.9%) |
| 비지정주제 | 3(75.0%) | 3(42.9%) | 136(48.9%) | 142(49.1%) |
| 합계 | 4(100.0%) | 7(100.0%) | 278(100.0%) | 289(100.0%)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 자체평가 검토항목별 검토결과

단위: 건수(%)

| 구분 | 검토결과 | | | 합계 |
|---|---|---|---|---|
|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안 | |
| 아동정책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기초자료 및 근거 등) | 59 | 5 | 225 | 289(100.0%) |
| 비차별의 원칙 | 76 | 24 | 189 | 289(100.0%) |
|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 71 | 29 | 189 | 289(100.0%) |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49 | 36 | 204 | 289(100.0%) |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87 | 30 | 172 | 289(100.0%) |
| 합계 | 342(23.6%) | 124(8.6%) | 979(67.8%) | 1,445(100.0%)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 자체평가 반영계획 현황

**개선의견 제안**
**155개 지자체 278건**

**수용 125개 지자체 221건**
**불수용 19개 지자체 26건**

| 구분 | 수용여부 | 빈도 | 비율 |
|---|---|---|---|
| 아동정책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기초자료 및 근거 등) | **수용** | **164** | **25.0%** |
| | 불수용 | 34 | 17.0% |
| 비차별의 원칙 | 수용 | 119 | 18.1% |
| | **불수용** | **46** | **23.0%** |
|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 수용 | 120 | 18.3% |
| | 불수용 | 42 | 21.0% |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 수용 | 144 | 22.0% |
| | 불수용 | 34 | 17.0% |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수용 | 109 | 16.6% |
| | 불수용 | 44 | 22.0% |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결과

**'21년 자체평가 이행점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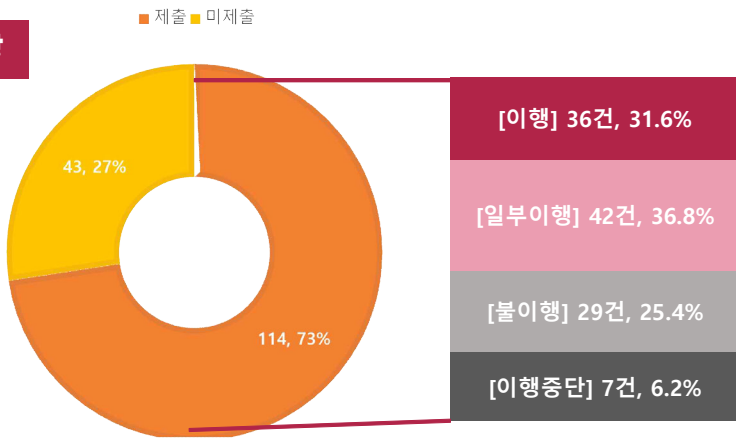




#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성과 및 과제

## 아동정책시행계획

- 지자체 전체사업(공통사업, 자체사업) 총 4,203개 수립 및 이행, 평균 67.59점
  - (계획수립의 적절성 : 평균 7.24점/10점) 2022년에는 **지역간 편차 줄어**, 각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목표, 정책방향,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행의 충실성 : 평균 12.15점 /20점)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이 확인됨.
  - (성과달성도: 평균 48.2점/70점) **성과달성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함**. 특히,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가정위탁 활성화**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정책시행계획 목적과 평가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평가결과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 역량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의 **사례** 적극 **공유** 필요

#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성과 및 과제

## 아동정책영향평가

- 자체평가 실시 지자체 증가(180개 지자체 ,619건 실시)
  - 전국 지자체 74.1% 실시, 전년대비 평가건수 21.6% 상승
- 자체평가 사전교육 강화로 지자체 사업 이해도 및 평가 질 향상
- 자체평가('21년) 이행점검 실시 첫 해, 평가-이행-개선을 통한 환류 도모
  - '개선의견 제안 ' 받은 모든 대상 지자체 이행점검 실시(이행율 72.6%, 아동권리적 관점 정책 이행 확산)

- 아동정책영향평가 수행 인식 저변 확대 및 환류를 통한 점진적 정책 개선 지향
-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평가 의무화로 모든 정책의 아동권리 안전망 작동 필요

#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성과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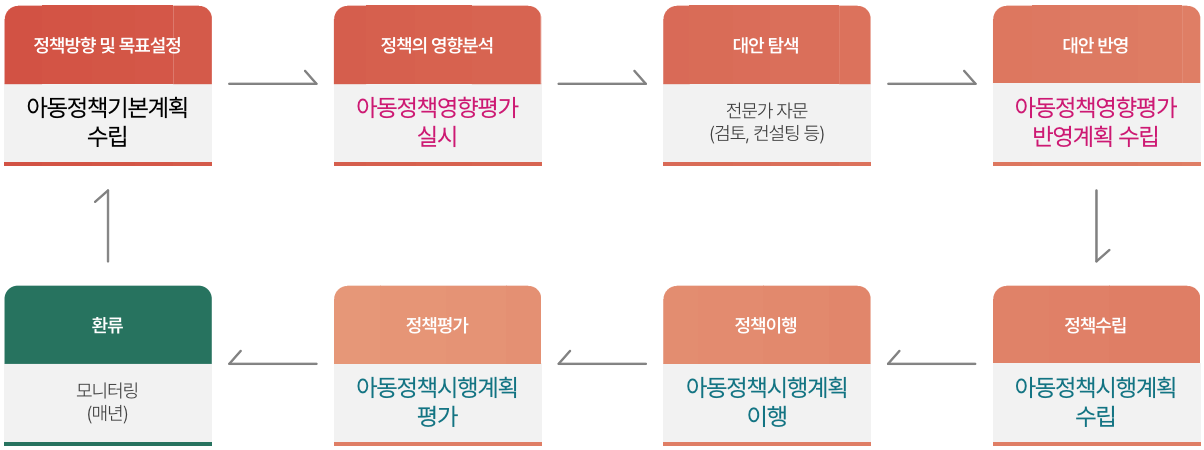


출처 : 김시아, 조소연(2023.)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계통합 방안.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Brief 제3호
출처 : 김시아, 조소연(202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이행현황에 관한 질적 연구 –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7(4)

# 아동정책시행계획('23년) 평가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지자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평가 **매뉴얼 개정본 및 서식 배포(~'23.12.)**

- [전국 지자체]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통합 설명회(~'24.1.)**

-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4년 시행계획 수립 **제출(~'24.3.)**

## 아동정책영향평가 향후 추진계획

- '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본 안내 및 배포(~'24.4.)
- '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전교육**(~'24.8.)
- '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이행점검** 실시(~'24.6.)
- '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실시**(~'24.8.)
- '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반영계획** 제출(~'24.10.)

# 감사합니다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모든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도시, 부산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김미정 주무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목차

1. 부산광역시 일반 현황
2.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정책과제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1) 권리 주체 아동권리 실현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3) 공정한 출발 국가 책임 강화
   4) 코로나19 대응 아동 정책 혁신
      (지자체 특화사업) 아동친화 15분도시 맘껏놀자 사업추진

# 1. 부산광역시 일반현황 (2022.12월말 기준)

■ **인구현황 :** 417,034명(부산 인구의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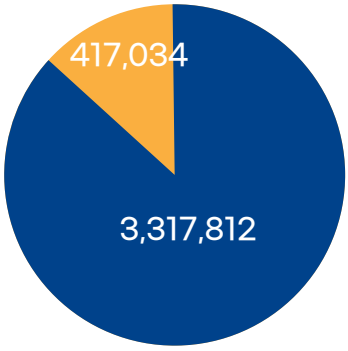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 : 213명**
(귀가조치 73, 보호조치 140)

■ **아동복지시설 현황 : 55개소**
(양육시설 17, 그룹홈 31, 일시보호시설 1, 보호치료 1, 자립지원 1, 아동보호전문기관 4)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현황 : 588개소**
(지역아동센터 208, 다함께돌봄센터 55, 초등돌봄교실 30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
- 그외 학교돌봄터 4개소, 거점형 자람터 2개소, 우리동네 자람터 17개소 등 설치 운영중

# 2.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정책과제

| | | | |
|---|---|---|---|
| 비전 |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 부산 | | |
| 정책 목표 | ■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정책 실현 기반 마련<br>■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공적 보호망 구축<br>■ 모든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br>■ 코로나19 대응 아동복지 위기 대응 및 일상 회복 지원 | | |
| 정책 과제 | 추진전략 | 정책과제 | 사업수 |
| |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 아동권리 실현 정책 시스템 마련<br>• 생활 속 아동권리 보장 | 34개 과제 |
|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br>• 아동 신체와 마음 건강 관리 강화<br>• 폭력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 | 124개 과제 |
| |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 아동 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br>•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 96개 과제 |
| |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br>•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 13개 과제 |

#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 1)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 **아동권리 보장기구 및 아동 참여 확대**
  - 아동권리보장단 모집(21명), 아동참여기구 합동 발대식(50명), 아동권리 토론회(30명) 등
- **아동권리 인식 개선 및 홍보**
  - 청소년 UCC 공모(2월) 등 아동권리 교육(중고등학교 5개교 방문) 및 홍보 확대(홍보부스 및 캠페인 등 39회)
- **지역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지원체계 구축**
  - 부산형 아동복지체계구축 ('22년 3월 아동보호종합센터(시 사업소) 기능 개편)



아동권리보장단 조별권리활동




청소년 UCC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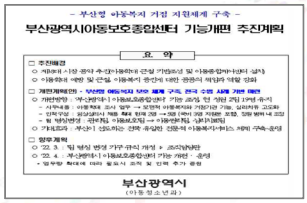


부산형 아동복지체계구축

#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 2)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확대**
  - 구군 아동친화도시 신규 인증 : 수영구, 연제구
    ※ 인증완료(시 1, 구군 7)
- **아동 신체건강 및 마음 건강 돌봄 강화**
  - 찾아가는 심리검사 치료서비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 **아동 생활환경 속 안전관리 강화**
  -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시범 사업추진('22.12월), 우수모델 개발
- **놀이 여가 공간 확충, 다양한 방식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추진**
  -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맘껏놀자 사업추진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 청소년상상티(T)움 1개소 확충



청소년 상상티(T)움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ZERO 만들기 사업



청소년 마약류 약물 오남용 순회교육극

#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 3)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
  - 시 아동보호전담기구 4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34명),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 신규 설치(총5개소)
- **지역사회 공적 아동 돌봄 체계 구축**
  - 다함께돌봄센터(10개) 확충(총56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208개소), 공동생활가정 운영(27개소) 등
- **취약계층 아동 책임 지원**
  - 보호자 부재 등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16,808명) 카드 가맹점 일제 정비실시,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아동 주거권 보장 :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정책개발 연구용역('22. 12. 15. 준공)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17개소(시1, 구군16)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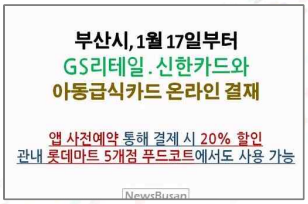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지원

#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 4)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돌봄키트 제공**
  - 초중고생 마음백신 – 돌봄키트 제공으로 심리적 면역력 강화
- **부산형 아이돌봄으로 위기상황 돌봄 공백 방지**
  - 긴급한 입원 등으로 양육공백 가정에 돌봄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시간제 대체교사 지원
- **아동양육상담 아이사랑콜 시행**
  - 부모교육, 양육상담, 육아고충 해소 및 코칭 지원



돌봄키트 제공




부산형 아이돌봄




아이사랑콜 운영

# 3. 2022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주요성과

## (지자체 특화사업) 아동친화 15분도시 맘껏놀자 사업 추진

**추진방향**
- **부산형 콘텐츠 개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12개소 활용**
- **아동주도적 참여 놀이프로그램 운영**

**사업대상**
- **참여가구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연령 아동1명, 보호자1명
- **놀이큐레이터 :** 지역 인근 대학교 재학생 지원자

**사업내용**
- **놀이코디네이터 교육 :** 사업소개, 아동권리교육, 놀이교육 등
- **놀이교실 운영 :** 놀이교실 4회, 직업체험놀이 1회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아동이 존중 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춘천

발제자 : 강원희 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보육아동과)

# 목 차

1. 춘천시 일반현황
1 ) 최근 5년간 인구현황
2) 19세 이하 인구현황
3) 아동인구 현황 및 아동예산 분석
2. 아동정책 우수사례
1) 아동권리 신장
2) 사회적 배려대상자
3) 해외인재 키우기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방향

# 1-1. 춘천시 최근5년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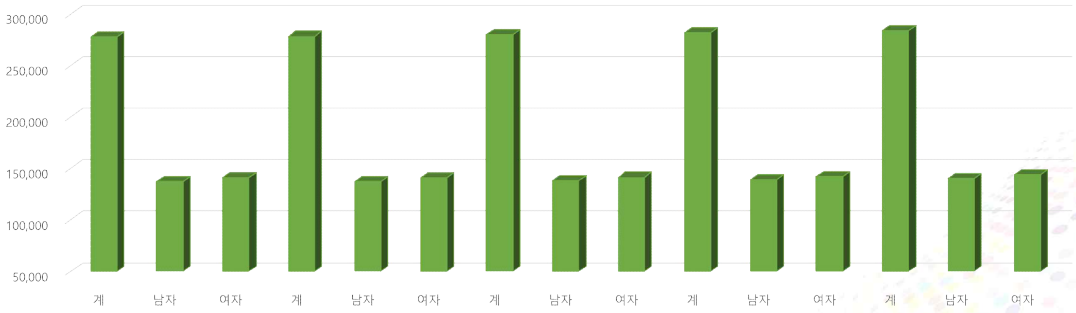


춘천은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으며, 29만 인구를 눈앞에 있음

# 1-2. 춘천시 19세이하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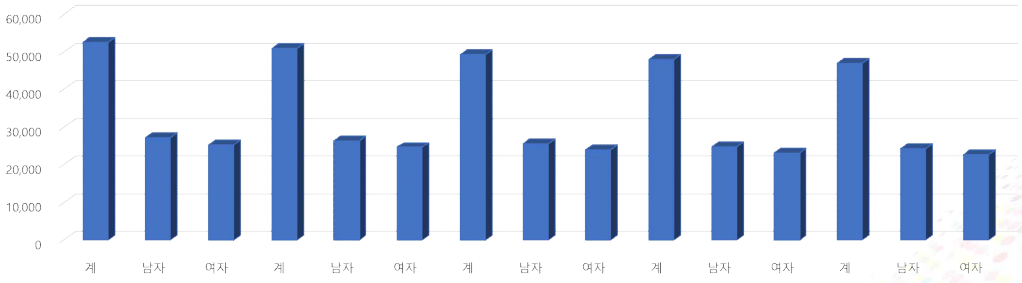


19세 이하 아동의 숫자가 매년 감소 : 출생아 수 감소 및 교육여건 열악 등이 이유로 판단 됨.

# 1-3. 아동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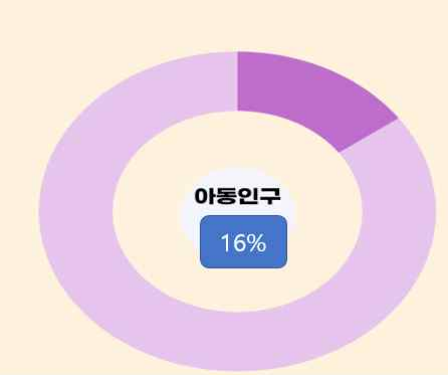


22.12.31.기준

**총인구 : 284,382명**

**19세 이하 아동 : 46,808명**

남성 24,118명 (51%)

여성 22,661명(49%)

춘천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노인의 숫자가 느는 전형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이에 아동이 중심이되는 정책 방향으로 시급하게 시행하여 할 필요가 커졌음

# 1-3. 아동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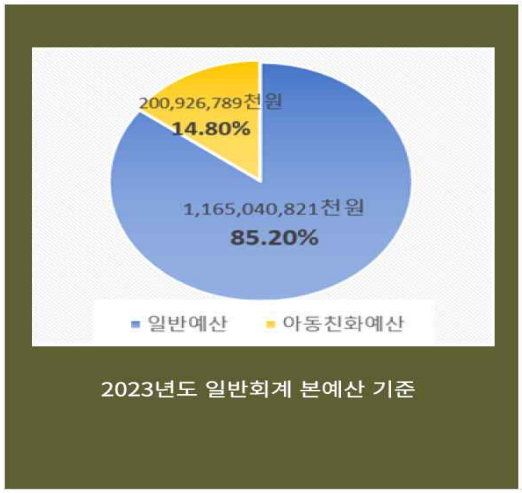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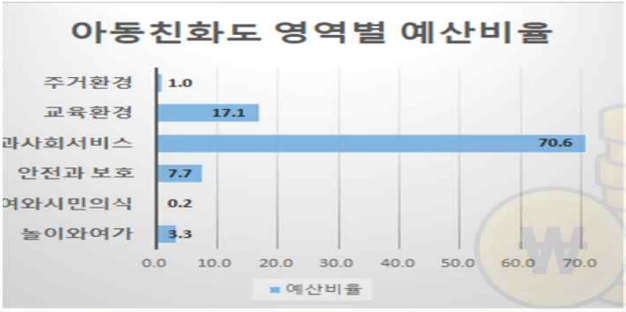


| 구분 | 사업 개수 | 예산액(천원) |
|---|---|---|
| 계 | 205 | 200,926,789 |
| 놀이와 여가 | 21 | 6,697,113 |
| 참여와 시민의식 | 12 | 351,300 |
| 안전과 보호 | 36 | 15,462,040 |
| 보건과 사회서비스 | 85 | 141,910,206 |
| 교육환경 | 45 | 34,424,630 |
| 주거환경 | 6 | 2,081,500 |

# 2-1. 아동권리 신장사례




○ 「아동복지법」 제4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정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민간 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춘천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9월
- 교육방법 : 온라인
- 수료인원 : 2,879명
- 춘천시 전직원, 춘천시의원, 춘천경찰서,
- 춘천소방서, 춘천교육지원청
- 춘천시 아동시설종사자

# 2-2.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교육 사례




- 평생교육법 제5조
- 춘천시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 14조
- 목적
  - 글로벌 인재 육성 및 경제적 교육격차 해소
- 원어민 1:1 화상영어
- 사업예산 4억 : 1,800명

초 중등 대상중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무료 지원

# 2-3. 해외인재를 키우기 위한 사례(2023년신규)



- 기간 : 2023. 6. ~ 11
- 대상 : 관내 중학생 10명
- 내용 : 한국학생들 이티오피아 방문 등
  - 공공외교 프로그램 및 한, 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 주요사업계획

| | | | |
|---|---|---|---|
| 10월 13일 | 16:30 |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참가 준비(3) | · 팀별 프로그램 준비 현황 검토 |
| 10월 20일 | 16:30 |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사전설명회 | · 캠프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준비물 등 확인 |
| 10월 28일 | 전일 | 한·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참가 | · 7일간 ※ 현지 활동 약 5일 |
| 11월 17일 | 16:30 | 공공외교단 활동 최종 정리 | · 활동 내용 및 소감 공유 |
| 11월 24일 | 16:30 | 활동보고회 및 수료식 | · 활동 기록 및 소감 발표<br>· 수료증 전달 |

#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춘천시는 2023년 12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로부터 최종인증 만을 남겨 둔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4.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방향

-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아동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지방도시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음
- 과거에 비해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현상 해결
- 부모와 함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아동 정책 실현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사례

발제자 : 정성환 주무관(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목차

1.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2.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목록
3. 아동정책 영향평가 지속 실시
4.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이행
5. 2023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사업 개요
6. 2023년 아동정책 영향평가 세부 지표

## 1.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도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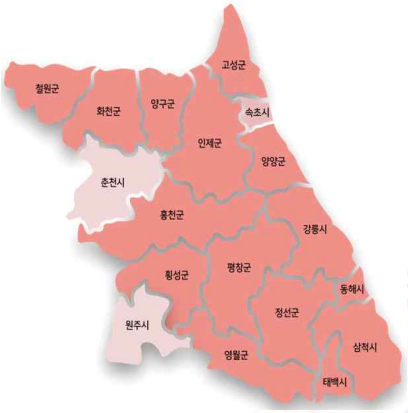


## 2.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목록

| 지자체명 | 평가건수 | 자체평가 대상명 | 지자체명 | 평가건수 | 자체평가 대상명 |
|---|---|---|---|---|---|
| 합계 | 39 | | 횡성군 | 3 | ●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br>● 지역아동센터 운영<br>● 또래상담사업 운영 |
| 강원특별자치도 | 2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br>● 지역아동센터 대학체험 프로그램 | 영월군 | 2 | ● 방과후 마을학교<br>●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
| 춘천시 | 4 | ● 청소년 참여위원회 ● 어린이 모험놀이터<br>● 아동친화도시 조성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 평창군 | 2 |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br>● 진부어린이 실내놀이터 |
| 원주시 | 2 | ●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br>● 아동친화도시 조성 | 정선군 | 2 | ● 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br>● 아동급식 지원 |
| 강릉시 | 2 | ● 강릉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br>●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 철원군 | 1 | ● 다함께돌봄센터 여름방학 돌봄교실 |
| 동해시 | 2 |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br>● 드림스타트 어린이합창단 | 화천군 | 2 | ● 온종일 초등돌봄 운영<br>● 스마트 안심셔틀버스 운행 |
| 태백시 | 2 | ● 태백시 정신건강증진 조례<br>● 태백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 양구군 | 2 | ● 양구군 라온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br>●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
| 속초시 | 2 | ●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br>● 지역아동센터 대학체험 프로그램 | 인제군 | 2 |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br>●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 |
| 삼척시 | 2 | ● 아동급식 지원<br>● 요보호아동 그룹홈 신규설치 | 고성군 | 2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br>●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
| 홍천군 | 1 | ● 읍면 아동 문화탐방 지원 | 양양군 | 2 | ● 양양군 아동급식지원 조례<br>●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심리치료 운영계획 |

# 3. 아동정책 영향평가 지속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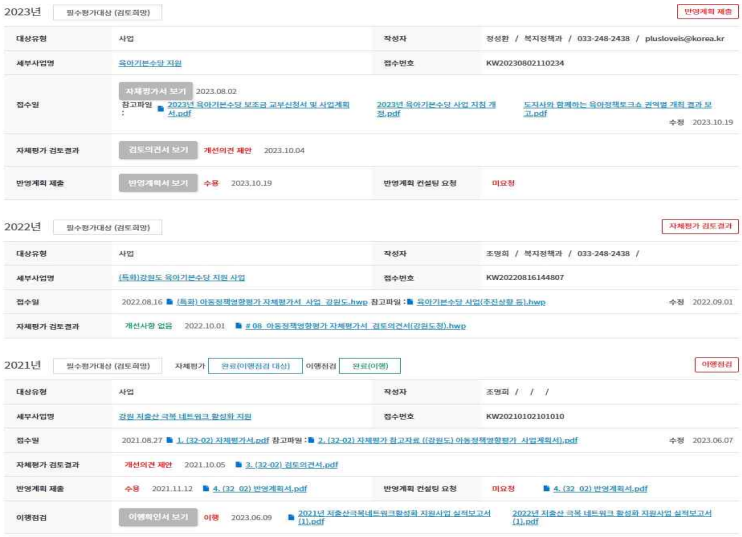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플랫폼

# 4.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이행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찾아가는 인형극 : 10세 이하 아동 대상**

○ 사업기간: 22. 7. ~ 22. 12.

○ 사업대상: 어린이집·유치원생(5~7세) 및 초등학교 1~3학년 재학생

○ 사업결과: 총33회 / 1,718명 관람 (아동 1,505명 + 교사 213명)

**□ 집에서 즐기는 가족사랑 문화축제 : 온가족 대상**

| 구분 | 기간 | 대상 | 인원 | 내 용 |
|---|---|---|---|---|
| 1차 | 22.3. ~ 4. | 5~7세 | 100가정 | 클레이 무드등 만들기 |
| 2차 | 22.5. ~ 7. | 8~10세 | 100가정 | 자율주행자동차 만들기 |
| 3차 | 22.8. ~ 9. | 11~13세 | 100가정 | 케이크 만들기 |
| 4차 | 22.9.~ 12. | 11~16세 | 100가정 |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

**□ 어린이날 기념 사진 공모전 : 도내 청소년 대상**

○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출생과 관련된 사진 공모전 실시

**□ 감성 태교 클래스 : 임신부 대상**

○ 태교 활동을 통해 엄마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구분 | 기간 | 인원 | 내 용 |
|---|---|---|---|
| 1차 | 22.11.19. | 15명 | 플라워 바구니 만들기 |
| 2차 | 22.11.26. | 15명 | 앙금플라워 떡케익 만들기 |
| 3차 | 22.12.03. | 15명 | 애착인형 만들기 |

## 4.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이행


[찾아가는 인형극, '깨구리 가족']


[집에서 즐기는 가족사랑 문화축제]



[어린이날 기념 사진 공모전]



[감성 태교 클래스]

## 5.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육아기본수당)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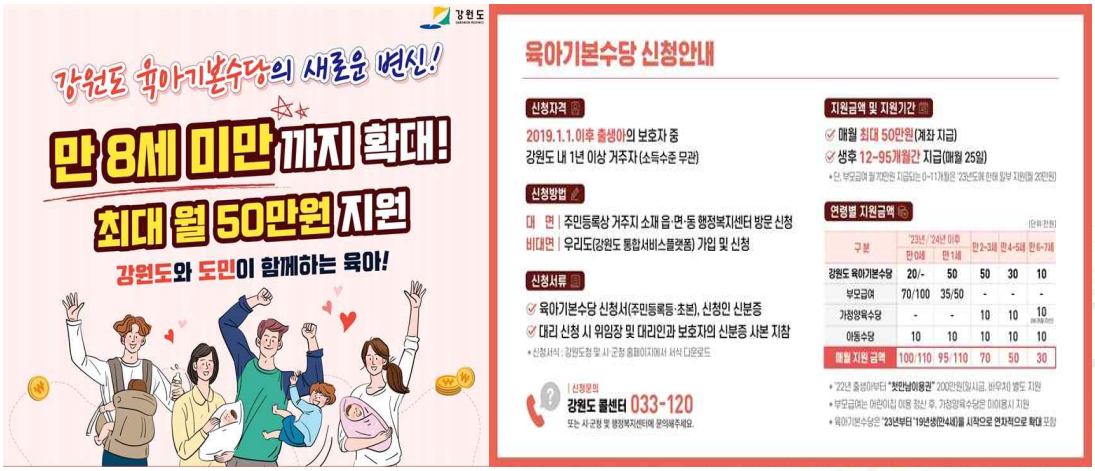

## 5.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육아기본수당) 세부 지표

**비차별 원칙**

- 2019년 출생아부터 8세 미만 아동, 최대 월 50만원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도내 거주하는 보호자와 아동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원칙**

- 아동의 생애 초기부터 필요한 양육비용 지원
- 아동학대시 수급권 상실, 분리조치 후 양육자 변경신청

아동권리협약
4대 일반원칙

**아동 의견 존중 원칙**

- 매년 설문조사 실시, 2년마다 사업성과 평가
- 수혜자 입장을 듣는 도지사와 함께하는 육아정책토크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2019년부터 5천억원 예산(전액 지방비), 11만3천명
-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최장기간 최대금액 지원



감사합니다

제2차 2023 아동정책포럼

# 부산 서구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 사례

발제자 : 장유리 주무관(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목차

1. 자체평가 추진 개요
   1) 자체평가 실시 개요
   2) 자체평가 추진 과정
   3) 대상사업 선정 사유
   4) 자체평가 대상 사업 목록
   5) 자체평가 결과(대표 사례 2건)
2. 필수평가 정책 내용 및 검토결과, 반영계획
3. 자체평가 참여 소감
4. 자체평가 발전 방안

# 1. 자체평가 추진 개요

## 1) 자체평가 실시 개요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11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7조
- 자체평가기간: 2023. 7. 10.(월) ~ 8. 18.(금)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실시 방법: 온라인 플랫폼(아동권리보장원)에 평가 결과 입력
- 평가 대상: 2023년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

# 1. 자체평가 추진 개요

## 2) 자체평가 추진 과정

| 지자체 업무소관부서 | 지자체 사업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 지자체 사업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옴부즈퍼슨, 지자체 사업부서 |
|---|---|---|---|---|
| 자체평가 대상사업 선정 | 자체평가서 제출 | 자체평가서 검토 결과 통보 | 반영계획서 제출 | 자체평가 이행 결과 확인 및 점검 |
| 7월 | 8월 | 9월 | 10월 | 2025년까지 |

## 3) 자체평가 대상사업 선정 사유

- 아동과 관련된 사업, 계획, 조례 중 부서별로 1건 이상씩 추천 받아 선정
- 부서에서 선정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및 아동친화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등 사전에 아동관련 사업 예시 제공

# 1. 자체평가 추진 개요

## 4) 자체평가 대상사업 목록(18개 부서, 24건- 사업 18, 계획 4, 조례 2)

| 정 책 명 | 담당부서 | 정 책 명 | 담당부서 |
|---|---|---|---|
|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기획감사실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가족행복과 |
| 구덕골문화예술제 지원 계획 | 총무과 |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문화관광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필수)** | |
| 기록문화교실 | 민원봉사과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
| 닥밭골 플레이하우스 운영 | 창조도시과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 |
| 구덕청소년수련관 운영 | **신성장사업추진단** | 서구 에코센터 자원순환 홍보관 운영 | 청소행정과 |
| 초등학교 악기 연주활동 지원 | 교육진흥과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 계획 | 환경위생과 |
| **청소년 예술 멘토링 사업(필수)** |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 구민안전과 |
| 생태학습형 학교 텃밭 운영 지원 | 경제녹지과 | 고운들로12(부민초) 오수관로 신설공사 | 건설과 |
| 초·중·고 입학생축하 상품권 지원 | 복지정책과 |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 | 건축과 |
| 취약계층 아동 외식상품권 지원 |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필수)** | 보건행정과 |
|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 종합 계획 | 생활지원과 | 예비 취학아동 입학축하선물 지원 | 초장동 |

# 1. 자체평가 추진 개요

## 5) 자체평가 결과 (대표 사례 2건)

### ◆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 **일자:** 2023.4.4.(화)
- **장소:** 송도오션파크
- **참여:** 관내 아동 241명
- **주요내용**
  - 교통안전, 재난예방 등 11개 안전체험

- **자체평가 결과**
  - 캠핑장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안전띠착용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체험만족도 제고
  - 향후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등에도 사전 홍보하여 단체 참여율 제고에 노력

### ◆ 예비 취학아동 입학축하선물 지원



- **일자:** 2023.2.2.(목)
- **장소:** 초장동 주민센터 도서관
- **참여:** 초등 예비 취학아동 7명
- **지원물품:** 상품권 10만원
- **주관:** 초장동 주민자치위원회

- **자체평가 결과**
  - 초장동 거주 예비 취학 아동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생활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
  - 향후 관내 예비 취학아동 학부모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2. 필수평가 정책 내용 및 검토결과, 반영계획



◆ 청소년 예술 멘토링 사업(비지정)

▷ 기 간 : 23. 1. 2. ~1.20. 여름방학 15일(총60시간)

▷ 대 상 : 멘토(동아대 음악학과, 경성대 미술학과 학생) 19명
멘티(동신초 등 3개교) 117명

▷ 장 소 : 멘티소속학교

▷ 내 용 : 음악 · 미술 등 예술 교육 지도 및 진로상담 등

◆ 검토결과

▷ 학교 내 신청인원이 소수이거나 선발기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

▷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교육 추가 진행 제안

◆ 반영계획

▷ 현재 신청인원 모두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황으로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방면으로 보완 예정

▷ 사업 시행 전 멘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교육 실시 예정

# 2. 필수평가 정책 내용 및 검토결과, 반영계획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정-진로교육)

▷ 대 상 : 지역아동센터 4개소 아동 106명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

▷ 운영시간 : 주5일 운영, 1일 8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아동복지교사(기초학습, 외국어, 미술, 음악) 6명

◆ 검토결과

▷ 우선돌봄 아동으로 인해 일반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개선안 마련 필요

▷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복지교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되지 못하는 점에 대한 대안책 마련 필요

◆ 반영계획

▷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의 경우 지역 내 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함

▷ 인근 동아대학교, 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시 필요한 지원 인력 보강

# 2. 필수평가 정책 내용 및 검토결과, 반영계획



◆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지정-정신건강 위기아동)

▷ 대 상 : 서구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11,486명

▷ 2023년 사업 실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 7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검진 : 1,670건
- 초,중,고등학생 정신건강교육 : 37회, 부모교육 : 2회 등

◆ 검토결과

▷ 사업 진행 시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대상 설문조사 진행

▷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장애아동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안 마련

◆ 반영계획

▷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참여와 요구도 조사는 실시 중이며, 참여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SNS 및 현수막 등 정기적으로 외부 홍보 시행 예정

# 3. 자체평가 참여 소감

| 자체평가 애로사항 | 해결 방안 |
|---|---|
| - 자체 평가 사업 선정 및 평가실시는 타 부서 사업담당자가 직접 작성해야 함에 따라 타 부서 협조가 꼭 선행되야 함<br>-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한 타 사업 부서의 관심과 이해가 적어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움<br>- 평가의 주체가 사업담당자로 되어 객관적·지속적 평가가 어려움 | - 사업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된 「아동친화실무단」회의를 통해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br>- 부서별로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및 **아동친화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예시로 사전에 알려주는 등 사업담당자와 **지속적 소통** 및 **유대관계 형성**<br>-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을 옴부즈퍼슨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지정, 정책 제언을 받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 |

# 4. 자체평가 발전 방안

**자체 평가 사전 교육**

- 자체평가 작성 시 우수사례 공유 및 다양한 작성 예시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자체평가 기간 및 대상 등 평가범위의 명확화 필요

**타 부서 협력 모색**

-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활용
-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및 아동친화예산서 작성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각부서의 사업을 사전에 파악, 해당 사업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협조를 이끌어냄

**지속적인 피드백**

- 옴부즈퍼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시 아동정책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전문가의 모니터링 절차 마련
- 사업부서에서 반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잘 이행해 나가는지 주관부서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속적으로 점검 및 피드백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71 G타워 5,6,7층
T 02-6454-8500 F 02-6283-0697
www.ncrc.or.kr